최종보고서

서울권

강원권

경기권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지침 및 조정 방안

충북권

2010. 4

충남권

경북권

대전권

대구권

전북권

울산권

경남권

부산권

광주권

전남권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지침 및 조정 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4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정 갑 영

본 보고서에 수록된 수립 지침은 광역자치단체가 권역계획 수립시 해당 지침을 참조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며, 조정 방안에서 제시되는 일정 등은 향후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전 승인 없이 전재, 역재, 복제할 수 없음

CONTENTS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5

제2절 과업의 범위 7

제3절 과업의 추진 방법 7

1 기본 방향 7
2 추진 방법 7

제4절 과업의 추진 체계 9

Ⅱ. 계획여건의 시대적 변화

제1절 미래사회 환경변화와 전망 13

1 미래 환경 분석 방법 13
2 글로벌 환경 변화 15
3 대내적 환경 변화 24

제2절 관광개발 환경변화와 전망 30

1 분석의 틀 30
2 세계 관광환경 변화와 전망 31
3 한국 관광환경 변화와 전망 36

제3절 권역계획 도전과제 41

Ⅲ. 기존 및 유사 사례 분석

제1절 분석의 방향 47

제2절 기존 및 유사 수립 지침 사례 분석 49

1 기존 권역계획 수립 지침 분석 49
2 유사 계획 수립 지침 사례 분석 59
3 시사점 70

제3절 기존 및 유사 계획 조정 사례 분석 71

1 기존 권역계획 조정 방안 분석 71
2 유사 계획 조정 사례 분석 78
3 시사점 85

Ⅳ. 권역계획의 위상

제1절 권역계획의 위상 89

제2절 제5차 권역계획의 특징 93

Ⅴ. 제5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

제1절 권역계획의 수립 지침 개요 99

제2절 권역계획의 수립 범위 102

제3절 권역계획의 수립 체계 108

1 수립 절차 108
2 수립 일정 109
3 수립 방법 111

제4절 부문별 세부 작성 요령 115

1 계획의 개요 115
2 관광개발 여건 분석 117
3 관광개발 사업 계획 123
4 관광사업 집행 계획 134

Ⅵ. 제5차 권역계획 조정 방안

제1절 조정의 개요 139

제2절 권역계획 조정 방안 144

1 조정 방향과 전략 144
2 조정 체계와 운영 146
3 조정 방법과 기준 152
4 조정 절차와 일정 157

[부 록]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지침 (2010)

CONTENTS

표 차 례

〈표 1.1〉 제5차 권역계획 내용적 범위 6
〈표 1.2〉 업무 분담 계획 9
〈표 2.1〉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 (2009) 18
〈표 2.2〉 1인당 GDP 전망 (2005~2050) 20
〈표 2.3〉 세계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2010~2020) 31
〈표 2.4〉 국제관광객 현황 및 성장률 (2008~2009) 32
〈표 2.5〉 국제관광객수 성장 전망 (1995~2020) 32
〈표 2.6〉 동북아 관광객수 전망 (1995~2020) 33
〈표 2.7〉 국민 국내관광 총량 (1999~2008) 36
〈표 2.8〉 국민 국내관광 행태 변화 (1999~2008) 37
〈표 2.9〉 방한 외래관광객수 (2005~2008) 38
〈표 2.10〉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의 주요 내용 39
〈표 2.11〉 타산업과 관광산업간 복·융합 유형 40
〈표 3.1〉 제3차 권역계획 수립 주요 지침 내용 50
〈표 3.2〉 제3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 특징 53
〈표 3.3〉 제4차 권역계획 수립 주요 지침 내용 55
〈표 3.4〉 제4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 특징 57
〈표 3.5〉 제4차 권역계획 필수·선택 조정 항목 74
〈표 5.1〉 제5차 권역계획의 주요 내용 112
〈표 6.1〉 제5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안) 세부 계획내용 142
〈표 6.2〉 제5차 권역계획 필수·선택 조정 항목 143
〈표 6.3〉 제5차 권역계획 조정 조직별 업무 분담 148
〈표 6.4〉 제5차 권역계획 조정위원 자격 요건 150
〈표 6.5〉 제5차 권역계획 조정 세부 방법 152
〈표 6.6〉 서면검토 조정 지표 153
〈표 6.7〉 현장실사 조정 지표 154
〈표 6.8〉 단계별 권역계획 수립반 주요 업무 158
〈표 6.9〉 제5차 권역계획 조정 일정 159

그 림 차 례

[그림 1.1] 과업의 추진 방법 8
[그림 1.2] 과업의 수립 체계 9
[그림 2.1] 인구 기대수명 변화 (1950~2050) 16
[그림 2.2] G7, BRICs, N-11 국가들의 GDP (2005) 20
[그림 2.3] 지구평균기온 변화 추세(1850~2010) 21
[그림 2.4]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 추이 (2050) 24
[그림 2.5] 한국의 실질 GDP 전망치 (2050) 26
[그림 2.6] 녹색성장의 개념 28
[그림 2.7] 국토의 3차원 입체 지역발전전략 29
[그림 2.8] 국제관광시장 전망 (1950~2020) 32
[그림 2.9] 국내관광 총량 추정 (2006~2012) 36
[그림 2.10] 외래관광객수 추정 (2007~2020) 38
[그림 3.1]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절차 60
[그림 3.2]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절차 63
[그림 3.3]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절차 68
[그림 3.4] 제3차 권역계획 조정 체계 72
[그림 3.5] 제3차 권역계획 조정 절차 73
[그림 3.6] 제4차 권역계획 조정 체계 76
[그림 3.7] 제4차 권역계획 조정 절차 77
[그림 3.8] 도종합계획 조정 체계 79
[그림 3.9] 도종합계획 조정 절차 80
[그림 3.10] 지역산업진흥계획 조정 절차 82
[그림 3.11] 지역건축기본계획 조정 절차 84
[그림 4.1] 권역계획의 위계 89
[그림 4.2] 권역계획과 유사계획과의 관계 90
[그림 4.3] 권역계획의 지위와 성격 92
[그림 4.4] 제5차 권역계획의 특징 95
[그림 5.1] 제5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의 구성 101
[그림 5.2] 제5차 권역계획 수립 절차 및 일정 110
[그림 5.3] 제5차 권역계획 수립반 구성 111
[그림 5.4] 제5차 권역계획 작성 절차 112
[그림 6.1] 제3차 기본계획, 제5차 권역계획 및 조정사업 추진 체계 146
[그림 6.2] 제5차 권역계획 조정 체계 147
[그림 6.3] 제5차 권역계획 조정위원회 구성 149
[그림 6.4] 제5차 권역계획 조정 운영 절차 151
[그림 6.5] 제5차 권역계획 조정 절차 157

I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과업의 범위
제3절 과업의 추진 방법
제4절 과업의 추진 체계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계획기간 완료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동계획의 체계적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계획수립으로 인한 지역관광경쟁력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동계획의 조정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정방안 제시가 필요함

1 과업의 배경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07~2011)의 계획기간 완료

-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구체화 계획, 권역별 특성화 계획, 관광(단)지 지정 근거 계획으로 2006년 수립되어 5년간의 계획기간이 완료됨
- 각 시·도는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16년)을 토대로 향후 5년간 권역의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함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년)의 계획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2010년도에 동시 수립될 예정임

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수립내용의 일관성 확보 필요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 등 권역의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계획 수립 주체간 상이 등으로 내용상, 절차상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음
- 특히, 2010년은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 계획 수립과정상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한 계획기간임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계획 수립 주체인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수립할 경우,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및 사업 실현성 등이 낮아 계획수립의 실질적 효과가 낮아질 수 있음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간 합리적 조정체계의 제시 필요

- 각 시·도에서 권역별로 수립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상 법정계획으로 확정·공고 이전에 계획 수립 방향, 정책여건 및 현실성 등을 고려한 조정을 이행해야 함

- 권역별로 수립된 관광개발계획을 검토한 후 통시적·통합적·종합적 관점에서 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조정 범위, 기준 및 절차 등 조정체계의 명확화가 요구됨
  - 특히, 계획(안)의 수립완료 이후 계획 조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 수립과 조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체계 수립이 필요함

2 과업의 목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계획적 위상 재정립

- 20년간 4차례에 걸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정책 여건, 관광환경 등 다양한 변화로 인해 계획이 지니는 성격과 역할 등이 변화되어 왔음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법리적·행정적으로 수립되어지는 계획이 아닌 권역내 관광개발계획의 종합적·실천적 계획 등으로 성격, 역할 및 절차와 방법 등 계획위상을 재정립해야 함

합리적·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내용상 세부 요령을 제공

-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합리적·효율적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계획의 수립방향,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계획수립 내용상 세부 요령을 작성하여 제공함
  - 계획수립 방향과 내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내용 작성 요령과 권역계획 수립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함

중립적·객관적 계획조정을 위한 절차상 조정 체계를 제시

-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중립적·객관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기준, 방법, 절차 및 일정 등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종합적 조정 체계를 제시함
  - 관광개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강화와 권역계획간 중복 최소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정 방안을 제시

수립 지침 및 조정방안 제시를 통한 체계적 계획수립을 지원

- 제5차 권역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 수립 요령 등을 제시하여 수립주체간 상이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조정 일정, 체계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함

제2절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공간적 범위인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으로는 계획의 수립기간 동안으로 한정함. 또한, 내용적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1조의 사항을 근거로 하여 권역계획의 위상과 특성 등에 부합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1 공간적 범위

- 서울권, 인천권, 대전권, 울산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강원권, 경기권, 충북권, 충남권, 경북권, 경남권, 전북권, 전남권 등 15개 관광권역임
  -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별 관광권역을 구분하여 제3차 및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 수립 예정인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의 권역구분에 따라 가변적임

※ 제주권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거 별도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2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12 ~ 2016년 (5년)
  - 적용기간 : 2010 ~ 2011년 (권역계획 수립 및 조정 기간)
- 과업기간 : 2009.12 ~ 2010.4

3 내용적 범위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성격 및 역할 설정

-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성격
-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역할
-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구성과 주요 내용
-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

제5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

- 총 칙
  - 지침의 목적 및 의의, 권역계획의 지위와 성격, 법적 근거, 지침의 구성
- 권역계획의 수립 범위
  -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수립권자, 계획수립 목표 연도, 권역계획의 수립 내용, 계획수립의 기본 원칙, 계획작성시 유의 사항 등
- 권역계획의 수립 체계
  - 권역계획의 수립 절차, 권역계획의 수립 일정, 권역계획의 수립 방법 등
- 부분별 세부 작성 요령
  - 계획의 개요, 관광개발 여건 분석, 관광개발 사업 계획, 관광사업 집행 계획 등

제5차 권역계획의 조정 방안

- 조정의 개요
  - 조정 근거, 조정 목적, 조정 범위 등
- 조정 방안
  - 조정 방향 및 전략, 조정 체계 및 운영, 조정 방법 및 기준, 조정 절차 및 일정 등

〈표 1.1〉 제5차 권역계획 내용적 범위

구 분	세부 내용
권역계획의 위상과 특징	– 권역계획의 위상 – 권역계획의 지위와 성격 – 제5차 권역계획의 특징 등
제5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	– 지침의 개요 – 권역계획 수립 범위 – 권역계획 수립 체계 · 권역계획의 수립 절차와 수립 일정, 권역계획의 수립 방법 등 – 부분별 세부 작성 요령 · 관광개발 여건 분석, 관광개발 사업 계획, 관광사업 집행 계획 등
제5차 권역계획 조정 방안	– 조정의 개요 – 조정 방안 · 조정 방향 및 전략, 조정 체계 및 운영, 조정 방법 및 기준, 조정 절차 및 일정 등

제3절 과업의 추진 방법

본 과업의 추진방법은 계획 수립 이전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양한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는 수립 주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규제적 성격이 아닌 지원적 성격, 일방향 조정이 아닌 양방향 조정을 통한 객관성 및 합리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함

1 기본 방향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계획 수립 주체 등과의 협조하에 진행

-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권역계획 수립 주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계획 내용 및 조정 체계를 제시토록 함

지침의 성격이 규제적 성격이 아닌 지원적 성격으로 제시

- 제5차 권역계획의 수립지침은 항목별 지침의 수준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주체가 권역의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제시함

일방향 조정이 아닌 양방향적·합리적 조정 방안을 제시

- 중앙부처에서 각 권역계획에 대한 일방적인 조정이 아닌 계획 수립 주체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양방향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함

2 추진 방법

권역계획의 위상 정립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

- 관광개발 및 여건 변화 등으로 법·제도적, 현실적으로 권역계획의 위상이 변화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제5차 권역계획의 역할 및 기능, 위상 등을 재정립함

기존 및 유사계획의 수립 지침에 대한 내용적 분석

- 계획 수립 지침의 본연적 기능과 관광이라는 핵심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주체의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 내용 등을 분석함

시도 설명회 등을 통한 계획수립 주체의 의견 수렴

- 제5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안)을 토대로 계획 수립 주체인 시·도의 관계자들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침상 수준 및 내용 등을 조정하여 반영함

다양한 계획 조정 사례 분석을 통한 조정 목적 등 정립

- 기존의 권역계획 조정사업을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유사 사례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정 방안 등을 제시함
- 또한, 권역계획 수립 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목적, 조정 절차 및 일정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

현실적인 수립 지침과 조정 방안을 토대로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

- 수립 지침의 제시를 통해 계획 수립 주체들간 계획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조정 방안에 대한 수립주체별 능동적 대응 방향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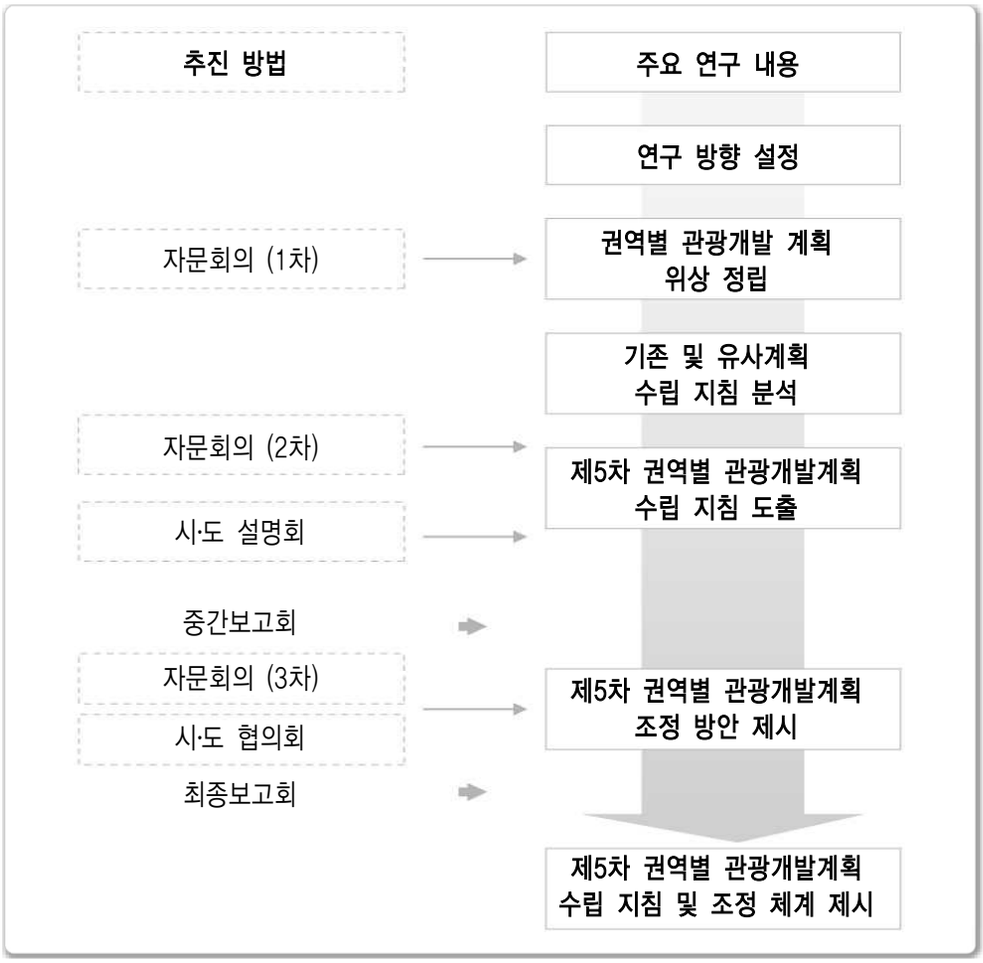

[그림 1.1] 과업의 추진 방법

제4절 과업의 추진 체계

본 과업의 추진 체계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연구를 총괄하고 내부적으로 연구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연구내용 및 과정상의 적절성 등을 확보하며, 외부적으로는 계획, 지역개발, 관광, 환경, 행정 등 다양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추진함

1 추진 체계

수립 지침 및 조정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체계 구축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성격, 수립 세부지침 및 조정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방향 및 세부 작성 요령 등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함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세부 지침, 수립 및 조정 체계 등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시·도 협의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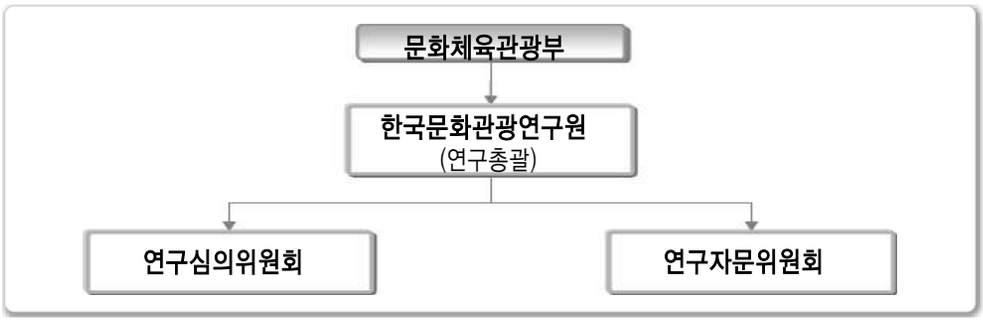

[그림 1.2] 과업의 수립 체계

추진 조직별 업무분장을 통한 효율적 추진 체계 운영

〈표 1.2〉 업무 분담 계획

구 분	주요 업무내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연구 총괄 수행 - 권역계획 성격 및 역할 정립, 계획 수립 지침 및 조정방안 작성
연구심의위원회	- 연구수행절차, 내용의 적절성 등 원내 심의
자문위원회	- 연구방향 및 내용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 제시 - 권역계획의 위상, 세부 요령 및 조정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제시

2 과업 수행 과정

〈1단계〉
권역 계획 위상 정립
미래사회 환경변화와 전망
관광개발 환경변화와 전망
권역계획의 특성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위상 정립
권역계획의 위상
권역계획의 지위
권역계획의 성격
계획수립의 절차와 방법
〈2단계〉
계획 수립 지침 도출
기존 권역계획 수립 지침 분석
유사 계획 수립 지침 사례 분석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지침 도출
계획의 수립 개요
계획의 수립 범위
계획의 수립 절차
〈3단계〉
계획 조정 방안 제시
권역계획의 위상 및 제5차 권역계획 수립지침 분석
유사계획 조정 사례 분석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조정 방안 제시
계획 조정 방향과 전략
계획 조정 체계와 운영
계획 조정 절차와 일정
최종보고서 작성

II 계획여건의 시대적 변화

제1절 미래사회 환경변화와 전망
제2절 관광개발 환경변화와 전망
제3절 권역계획 도전과제

제1절 미래사회 환경변화와 전망

관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정보통신, 건강, 미디어 등 사회와 관련된 제분야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요소간 영향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상황이 발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와 전망은 관광개발시 주요 요인 및 요소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

1 미래 환경 분석 방법

분석의 필요성

- 미래 환경을 예측 또는 전망해야 하는 주요 이유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 속도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현상들간의 영향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임
  - 관광 및 개발환경과 관련하여 미래사회의 트랜드 및 패러다임 쉬프트를 예견하고, 문제 경고, 정책 및 개발논리 설득, 기회와 위협요인 인식, 필요 정보 제공 및 참여확대 등을 비롯하여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미래는 현재 일어나지 않은 상황으로 검증된 과거와 현재의 정보만으로는 불확실성이 큰 미래사회를 예견하는데 한계가 있어 적절한 방법론 및 프로세스를 통해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임

분석의 방법

- 미래 사회 및 제반 환경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등의 각 분야별 현재 상황 분석, 미래 전망, 전략 및 대안 도출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대부분의 예측 방법은 경영, 기획, 사회과학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용하며, 특히, 미래에 대한 생각과 네트워킹, 정책형성 등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 미래 환경을 예측하는 방법론으로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백캐스팅(Backcasting), 패널(Panels), 컨퍼런스(Conference), 시나리오(Scenario), SWOT 분석, 벤치마킹(Benchmarking), 모델링(Modeling) 등의 방법이 활용 가능함

- 구체적으로는 시나리오 기법(Scenario analysis), 델파이 기법(Delphi analysis) 및 트렌드 분석(Trend analysis)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트렌드 분석을 통해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시제가 복합된 변화를 예측함

• 관광은 사회현상의 일부로 다양한 제환경과의 상호연관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관광현상의 시스템적 성격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므로 총체적인 관광시스템의 이해를 위해서는 미래사회 및 환경에 대한 예측이 필요함

• 관광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제변화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광시스템 내부의 각 요인 및 요소간의 변화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외부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 및 요소들의 이해가 필요함

•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 및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회(Social),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ical), 환경(Ecological), 정치(Politics), 가치(Values & Norms)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STEEP(V) 방법이 있음

• 이외에 거시환경적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치적 환경(Political environment),경제적 환경(Economical environment),사회·문화적 환경(Social environment), 기술적 환경(Technological environment)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PEST 분석 방법 등이 있음

•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미래 사회 및 환경을 분석할 경우 개별적인 환경요소 들을 나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산업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거시적 관광 미래 환경 분석

• 거시적 측면에서 관광관련 미래 환경 사회 및 환경을 분석하는데 정해진 분석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광을 둘러싼 내부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을 구분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 내부적 환경은 계획대상 국가, 지역, 도시, 지구 등 공간적 단위를 대상으로 동 대상의 관광자원 및 시설, 정책 및 환경 등을 구분하여 트렌드를 분석하며, 외부적 환경은 거시환경과 시장환경, 투자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어지고 있음

- 이외에 주변 경쟁대상과의 분석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와 근거로 활용함

• 본 분석에서는 다양한 미래 환경 분석방법론중 STEEP(V)와 STEP 분석방법을 관광관련 트렌드별로 분석하여 미래 사회 및 환경 등을 전망하였음

2 글로벌 환경 변화

1) 사회적 변화 (Social)

신소비계층 등장과 소비주체의 다각화 전망

- 문화의 다양성 수용으로 물질적인 삶보다는 정신적인 삶을 위해 독특한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겨냥한 새로운 시장 분야가 등장함
- 다민족 사회의 도래로 문화 다양성 수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트라이슈머(Trysumer), 트랜슈머(Transumer), 그린슈머(Greensumer) 등 새로운 소비층으로 등장함
  - 이동하는 소비자라 불리는 트랜슈머(Transumer)는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여 소유가 주는 구속과 재정상의 부담에서 자유롭고자 소유가 아닌 접속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하며 신세대 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 영향을 미침
  - 트라이슈머(Trysumer)는 'Try'와 'Consumer'의 합성어로 소유가 아닌 경험을 추구하는 소비주체로서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새로운 서비스, 제품, 맛 등을 직접 경험함
  - 친환경(Green)과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인 그린슈머(Greensumer)는 건강과 안정을 추구, 친환경, 유기농 제품 등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의미하며, 웰빙족, 로하스족, 에코맘 등 불리우는 명칭은 다양함
- 이러한 신소비계층은 친환경만을 강조하는 제품보다는 제품 속성에 더하여 새로운 가치 알파를 추구하는 Alpha Green 소비가 점차 두각을 나타낼 전망임

인구통계적 압박의 결과로 인한 인구 고령화 가속화

- 2020년 전후로 절대인구수는 감소할 전망이며, 출산율 저하 및 평균수면연장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전망됨
  - '09 UN 세계 인구 전망에서 '05~'10년, '10~'15년 평균 한국 출산율은 각각 1.22, 1.26으로 인구유지수준 2.08보다 낮은 전망치로 인력 수요가 많은 산업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함
- 향후 2050년에는 현재 선진국가들의 인구중 약 25% 이상이 65세로 예상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중국의 경우 약 6배, 인도의 경우 5배 정도가 80세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될 것임

-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관광, 여행, 패션 등 라이프스타일의 부문에서 새로운 50대 이상의 연령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동 연령대의 약 32%는 여가활동에 주당 약 8만 원을 소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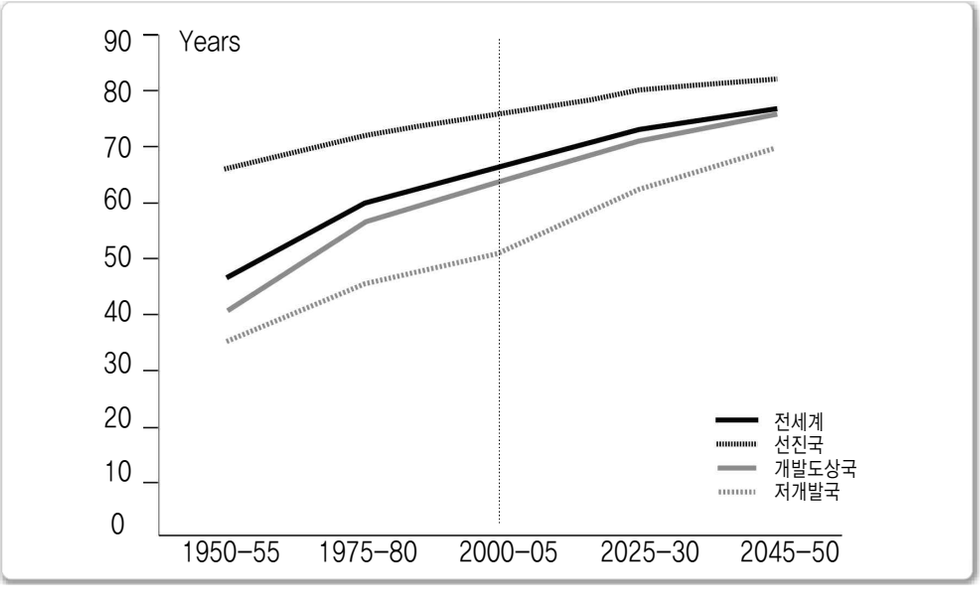

자료: UN Population Division(2002), World Population Ageing 1950-2050

[그림 2.1] 인구 기대수명 변화 (1950~2050)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여성층 등 라이프스타일 계층 부각

- 세계 경제에서 여성들의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어 신구매계층으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매결정권을 가진 가구가 전체가구대비 93%에 이르고 있음
  - 경제력을 가진 여성들의 파워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우머노믹스', '핑크몬스터', '골드미스', '알파걸', '스완족' 등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패션 등 일부 분야에서의 여성파워가 점차 IT, 관광, 유통 등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우머노믹스(Womenomics)란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여성이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신에게 투자하는 소비행태의 증가, 소비시장에서의 파워가 더 강해지고 있음
- 특히, 쇼핑을 주도하는 여성층의 비율이 70%를 넘고 있어 여성의 독립과 소득의 증가로 인해 여성들의 개인적인 취향도 급변화되고 다양한 상품에 여성 소비 패턴이 반영되고 있음
- 관광분야의 경우 건강과 미용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젊은 여성층을 타깃으로 하는 의료관광, 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여성 중장년층 등 여성층의 구매력과 시장내에서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2) 기술적 변화 (Technology)

초고속 네트워크 시대 전개와 소셜 인플루언스 마케팅 관심 증대

- 고속철도 등으로 생활권·여가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초고속 정보망을 통해 시·공간적 제약요소가 해소될 것임
-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가 급성장 하면서 이를 활용한 소셜 인플루언스 마케팅(SIM, Social Influence Marketing)이 중요한 시장 전략 도구로 부상함
  - SNS(Social Network Service,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넷 친목 사이트 제공 서비스)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전망됨
  - 또한, 트위터(twitter)는 짧은 정보를 제한적인 글자수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정보유통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올리거나 받아볼 수 있는 가상 공간임
- 관광, 여행 등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기존의 인쇄물, 책자 등을 통한 수집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방문목적지 선택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기술(ICTs)을 통한 네트워크 지식사회 재형상화

- 정보화, 융합화 및 네트워크화 전송기술 발달로 인해 지리적, 시간적 거리를 넘어 문화를 공유하는 소수 커뮤니티 형성 등 교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음
- 특히, 교류와 소통 본능의 강화로 인한 최신 정보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준의 성장으로 스마트폰(SMART Phone) 등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가 관광 등을 포함한 제반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음
  - 스마트폰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산업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그 비중이 4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기존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출현하고 있음
-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네트워킹이 국가간·지역간·산업간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는 문명통합의 시대에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음

• 스마트폰 및 각종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는 관광분야에서 국가 또는 관광자원 및 시설을 홍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표 2.1〉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 (2009)

(단위: 천 명, %)

구 분	인구수	인터넷 이용자수	인터넷 이용비율	성장률(00~09)
전세계	6,767,805	1,773,994	25.6	380.3
아프리카	991,002	67,372	6.8	1,392.4
아시아	3,808,070	738,257	19.4	545.9
중동	803,850	418,030	52.0	297.8
유럽	202,687	57,425	28.3	1,648.2
북아메리카	340,831	252,908	74.2	134
라틴아메리카	586,662	179,031	30.5	890.8
오세아니아	34,700	20,970	60.4	175.2

자료 : Internet World stats(2009), World Internet Users and Population Stats

위치기반서비스와 증강현실을 통한 신(新)관광정보서비스 제공 확대

• 모바일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로 부상한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의 본격화로 관광정보 검색의 새로운 방향이 부상하고 있음

• 위치기반서비스는 애플, 노키아 등의 거대기업을 중심으로 Map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경우 구글의 구글어스(Google Earth)를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음

•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과 위치기반서비스(LBS)의 결합이 가속화되어 애플사의 아이폰을 중심으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로 관광정보 검색이 증가하고 있음

- 증강현실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한 분야로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을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임
- 이러한 증강현실은 관광분야에서 방문객의 호기심과 신기성을 부각시켜 대상지로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마케팅 분야의 활용이 확대될 것임

• 증강현실과 위치기반서비스가 결합하여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주변의 관광지나 식당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어 관광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3) 경제적 변화 (Economical)

팍스 아시아나(Pax Asiana), 넥스트 아시아(Next Asia) 시대의 도래

- 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 21세기 중반 중국 · 아시아 시대로 역사적 전환이 재편되고 있으며, 중국 · 일본 · 한국을 중심으로 팍스아시아나(Pax Asiana)시대가 도래될 것임
- 아시아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는 패러다임 시프트(shift)를 의미하는 '아시아나이제이션(Asianization, 아시아가 주도하는 세계화)' 현상이 주도하게 될것으로 전망됨
  - '08년 현재 ASEAN+6은 전세계 인구의 49.6%, GDP의 23.3%, 교역량의 25.2%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2030년 전 세계 GDP 비중이 24.0%, 아시아 비중은 53.4%로 전망됨
- 중국 경제는 내부의 성장과 풍부한 노동자원을 기반으로 지속 고성장하여 소득 증가 및 서비스산업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 또한, 인도 경제의 지속성장으로 '20년까지 잠재성장률 8.4%로 경제규모가 '25년경 일본 추월, '40년경에 미국을 추월해 세계2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지식경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피플파워(people power)시대 대두

- 소위 브릭스(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경제안에서 중산층을 가늠하는 3,000US$ 이상의 연간 소득 인구는 2014년에 약 8억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향후 연간 소득 3,000US$ 이상인 인구는 중국에서만 10배 이상 증가하고, 인도는 약 14배 증가할 것이며, 브라질에서도 약 2배의 급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인접된 일본의 경우 15,000US$ 이상인 인구가 2006년 전체인구중 일부분이었으나, 2025년에는 일본의 전체 인구인 2억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특히, 중국과 인도의 경우 증가하고 있는 인구수를 고려할 때 전체 소비자 합산 구매력도 세계 어느 지역 소비자들의 구매력 합계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두 국가의 구매력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는 2003년 세계 GDP의 약 32%를 점유하였으나 2050년 이르러서는 각각 세계 1위와 3위까지 증가할 전망임

〈표 2.2〉 1인당 GDP 전망 (2005~2050)

(단위: US$)

구 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
2005	8,455	10,231	2,977	5,695	38,828	28,648	28,748	18,902
2010	9,905	12,973	3,752	7,857	42,141	29,824	31,663	22,847
2015	11,621	15,709	4,706	10,101	44,997	31,848	34,296	27,111
2020	13,563	18,758	5,858	12,534	47,656	61,926	36,521	31,209
2025	15,894	22,615	7,342	15,326	51,491	38,250	38,051	35,656
2030	18,842	27,424	9,354	18,488	56,216	41,180	39,934	39,977
2040	27,090	37,575	15,518	26,893	68,162	45,944	48,262	48,801
2050	38,407	48,685	24,619	37,304	82,179	55,082	57,670	61,863

자료 : Goldman Sachs(2004), Global Economics Paper No. 118

세계경제내 BRICs, N-11 등 신흥경제세력 등장 및 다극화 진행

- 신흥경제세력인 BRICs 국가를 포함한 한국, 멕시코 등 경제성장율이 높은 국가들이 향후 미래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BRICs 국가들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경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11개 국가(N-11, the next Eleven)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미래 세계경제내 실질 소득수준이 기존의 선진국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함
  - 이들 N-11 국가들은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한국임
- 이러한 신흥경제세력은 높은 인구성장률을 토대로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경우 인구 약 25억 명의 대규모 내수시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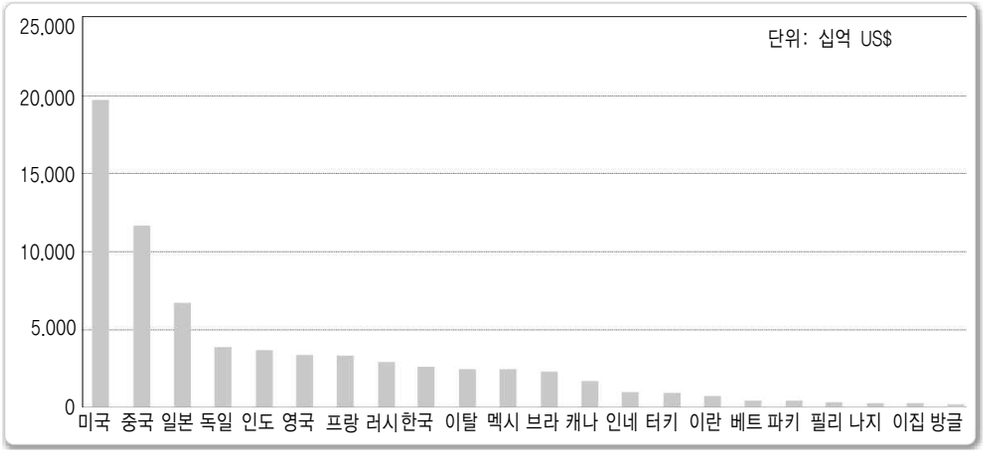

자료: Glodman Sachs(2005), Global Economics Paper No. 134

[그림 2.2] G7, BRICs, N-11 국가들의 GDP

4) 환경적 변화 (Ecological)

글로벌 아젠다(Global Agenda)에 대한 중요성 심화와 수용 요구 증대

- 환경오염, 기후변화, 금융위기, 그린뉴딜, 건강, 웰빙 등 21세기 국제사회의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기후변화, 그린뉴딜, 안전, 건강 등에 대한 핵심 이슈들은 국가 및 지역발전 정책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최우선 키워드로 부상함
  - '95년 탄소배출 축소와 관련된 논의 이후 '97년 교통의정서(Kyoto Protocol) 서명, '05년 발효이후" 09년 개발도상국 탄소배출 감축 등 저탄소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가 강화되고 있음
- 특히, 기온의 평균 온도 변화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상이변 이 발생하고 있으며 핵심 글로벌 아젠다로 부상하여 UN, APEC, G-8 등 다자간 정상회담 및 양자 정상회담에서 최우선 의제로 논의되고 있음
  - 지난 100년('06~'05)간 지구평균온도는 0.74℃씩 상승하였으며 '61년과 '90년 사이에 평균 0.548℃정도의 차이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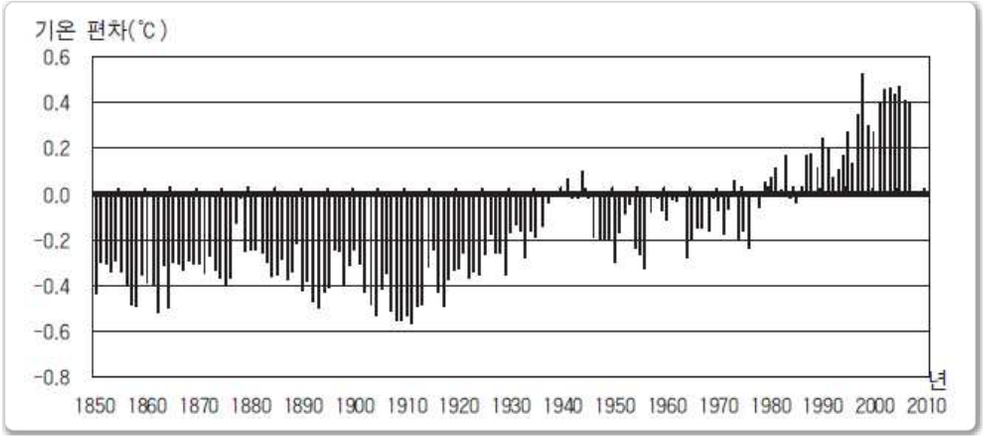

자료 : 기후변화정보센터(2009), 내부자료

[그림 2.3] 지구평균기온 변화 추세 (1850~2010)

차세대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에 대한 개발 확산

-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녹색기술(Greentech)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친환경 연료 및 차량,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3대 분야에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있음
- 차세대 녹색기술은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의 글로벌 핵심 이슈화, 자원고갈에 대한 우려 고조 등이 동인(動因)이 되었음

- 특히, 풍력, 태양광 등 차세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산업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에너지 생산이외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겸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녹색기술은 환경기술, 기후변화 대응기술, 에너지-자원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2020년 세계시장 규모가 3천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미국, 일본, EU 등 환경선진국들은 바이오 연료, 파력(波力), 폐열, 태양열 등을 차세대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녹색기술 개발을 추진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자연친화적인 코드 그린(Code Green), 에코이즘(Ecoism) 부상

- 포스트 모던시대를 지나면서 서로간의 조화로운 질서가 펼쳐지는 생태계를 지향하는 의식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음
- 인류공동자산(Global common, 글로벌 공유재)인 대기, 기후, 해양, 생물 다양성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점차 증대될 것이며, 보전이외에 신가치를 창조하려는 노력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패러다임의 등장은 녹색기술, 녹색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각 국가 또는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광행태에 있어서도 에코이즘적 성격이 부각되는 생태관광, 녹색관광 등의 출현과 시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발전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기술로 새로운 동력을 삼아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양자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관광개발에 있어 이러한 개념은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소비 및 생활에 있어서도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자연친화적 에코이즘은 녹색과 성장의 메타적 접근을 통해 양자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래 도시, 관광, 문화 등의 분야에서 접목되어 전산업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저탄소형 도시개발에 있어 주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컴팩트 시티(Compact City)의 경우도 환경적으로 광범위한 면적을 훼손시키는 개발방식이 아닌 개발과 보전의 방향을 설정한 후 이루어지는 행태임
  - 과거 대규모 개발 지향적인 단선적 사고에서 벗어나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적 사고로의 전환이 개발 이념에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나타남

5) 정치적 변화 (Politics)

지역간 경쟁적인 클러스터의 중요성 지속

- 단순히 과거의 지리적 제약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교류를 통한 관계의 강화 및 경쟁적인 클러스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전세계는 교통·통신 발달로 국가 간 지리적 차이를 좁히고 컴퓨터,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으로 국가간의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거대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함
  - 자유주의적 확산, 자유경쟁을 추구하는 경제적 기조 확대 등 국제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음
- 이러한 지리적 경계의 붕괴는 인접 국가, 지역, 도시간의 교류를 통한 협력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협력 관계가 동종 또는 이종산업간의 경쟁적 클러스터로 조성되고 있음
- 경쟁적 클러스터의 조성으로 타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역 공동체내에서의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됨

국제간 이동 증가로 정부역할의 변화와 국경을 초월한 경쟁 가속

- 기업들간의 국제간 이동이 증가하고 한 국가의 정치적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중시 보다는 매력적인 투자 환경에 따라 점차 그 이동이 증가하고 있음
- 정부의 역할은 보다 매력적인 인프라와 인적자원 그리고 환경을 제공하는데 집중을 하게 되었으며, 20세기 정부는 경제성장의 큰 견인차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중심적인 역할보다는 보조적 역할과 기능으로 변화되고 있음
  - 종래에는 국가대 국가, 도시대 도시, 기업대 기업의 경쟁구도에서 다자간의 경쟁구도로 이동하면서, 국가내, 지역내 또는 인접된 공간내 경쟁이 아닌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
- 국경을 초월한 경쟁의 가속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 시대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인텔리전트 아일랜드(Intelligent Island) 프로젝트', 두바이의 '인터넷 시티(Internet City)', 캐나다의 '스마트 커뮤니티(Smart Community)' 등 새로운 형태가 창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음

3 대내적 환경 변화

1) 사회적 변화 (Social)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 세계에서 최고

- 한국의 고령화는 그 어느 나라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의 감소로 총인구는 '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16년 3,619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수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지게 되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됨
  - 더욱이 '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사회전반적인 여건이 노인층을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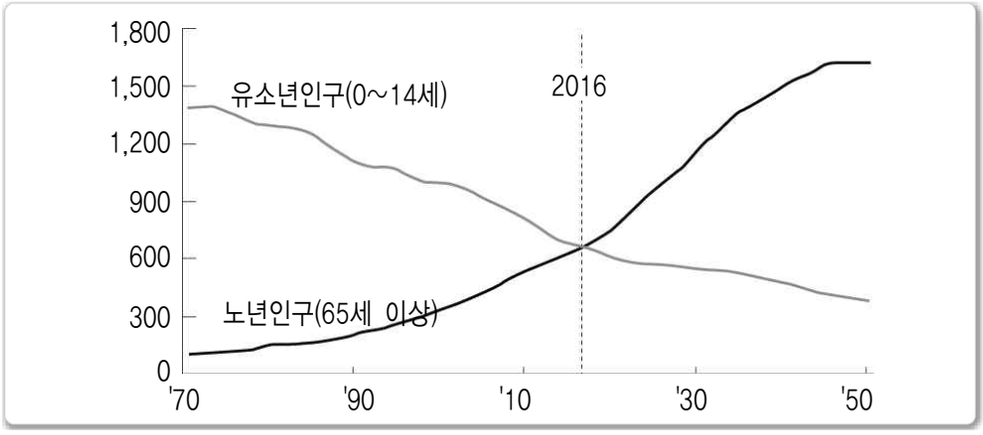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09),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그림 2.4]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 추이(2050)

이주의 시대를 넘어 다문화 사회 도래

- 최근 국제사회는 경제적인 국제 의존 관계의 심화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노동력 이동의 규모와 속도는 교통, 통신, 인프라의 발달로 인하여 비약적으로 팽창됨
- '09년 9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체류중인 외국인 수는 115만 명이며, 이는 '01년 49만 명 대비 약 2배 이상 급증하여 다문화 현상의 급속한 전진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가 도래함

- '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로 인해 국내 인력을 외국 인력이 급속히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외국노동력증가로 이주 근로자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 또한,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국제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자녀수의 증가로 인해 혼혈 세대가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다문화 가정이 보편화되고 있음

2) 기술적 변화 (Technology)

그리노믹스(Greenomics)산업이 새로운 경제질서와 헤게머니로 등장

- 정보기술(IT)과 환경, 에너지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그리노믹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함
- 전 세계는 그린뉴딜을 통해 글로벌 신성장엔진을 확보하고 제3의 산업혁명을 통해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제시하고, '09년 관광산업 녹색성장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중장기 전략들을 제시함
- Green IT는 환경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과 함께 지구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기술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 미래의 유망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09년 1월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2009년 2월에 국무회의를 거쳐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을 확정 모든 정부부처들은 녹색성장정책 추진계획과 함께 그린 IT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융·복합에 따른 최첨단 기술을 통한 산업간 변화 발생

- IT, BT, NT 등 기술 융합현상에 따른 신산업 창출 및 형태 변화 등으로 핵심강국으로 부상하여 경제 · 사회에 혁명적 변화가 발생할 전망임
  - 기술간 융 · 복합화의 진전에 따라 타 영역간 결합을 통해 기존 수요 대체 및 신규 수요 발생 등 경제 · 산업분야의 변화 전망함
- 기술 수명 단축과 투자 대형화에 따라 연구개발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이 성장할 전망임
  - 투자규모의 확대, 다자간 협력 R&D 필요성 증대, 새로운 차원의 불확실성 감소 노력 등에 따라 과학기술산업 분야의 개방형 협업체계의 진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3) 경제적 변화 (Economical)

세계경제속에서 한국경제의 중요성과 영향력 확대

- 한국 실질 GDP는 '05년 말 예상치 8,140억 달러에서 '10년 1조 2,900억 달러, '25년 2조 6,250억 달러, '50년 3조 6,840억 달러로 증가하여 '50년에는 세계 13위의 경제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실질 GDP는 '05~10년까지는 연평균 9.2%, '10~15년 7.2%, '15~20년 5.0%, '20~25년 2.1%, '25~30년 1.5%, '30~35년 1.2%, '35~40년 1.4%, '40~45년 1.2%, 그리고 '45~50년 1.5%의 성장률이 전망됨
- 또한, 한국의 1인당 소득수준은 '25년 51,923달러, '50년 81,462달러로 (2005년 US$기준) G7 국가의 수준에 근접하거나 능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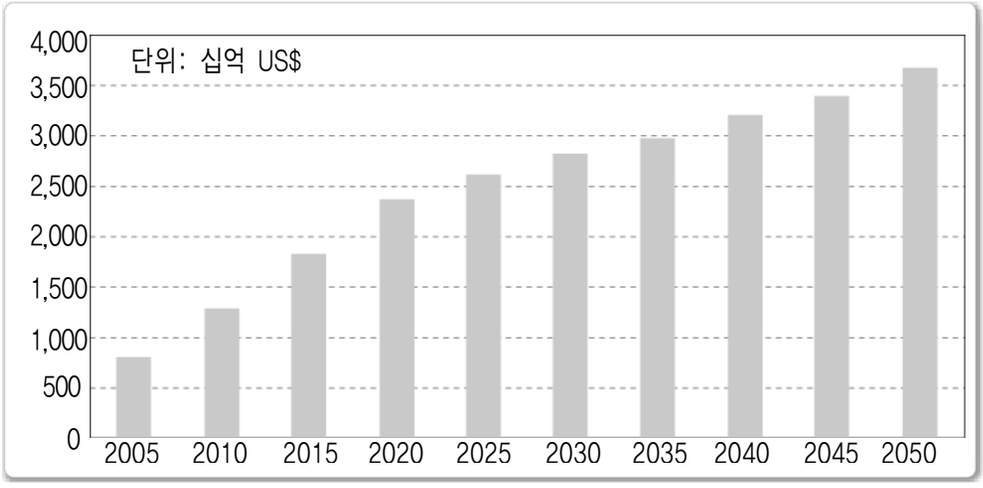

자료 : Goldman Sachs(2005), Global Economics Paper No. 134.

[그림 2.5] 한국의 실질 GDP 전망치 (2005~2050)

국내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고급화 확산

-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시장 규모에 비해 업체와 종사자가 지나치게 많아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함
-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구조를 통신, 금융, 광고 등 지식기반서비스를 부가가치산업 위주로 재편성하고, 콘텐츠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 문화, 레저산업의 고급화 ·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지난 '06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총 3단계에 걸쳐 세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중임

- 문화·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전망이나, 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2.3%, 3.6%에 불과한 실정임
- 문화콘텐츠 산업, 디지털 콘텐츠 산업,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각종 시장 규제를 개선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들을 수립함

4) 환경적 변화 (Ecological)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연 생태계 보호 요구 증대

- 급속한 산업화 · 도시화에 따라 환경오염이 가중되었으며, 이에 따라 삶의 질 추구와 더불어 환경 개선 및 자연 생태 보존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오염 없는 청정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도시내 주변 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확충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주요도시 1인당 녹지면적은 서울 4.9㎡, 런던 9.0㎡, 빈 25.0㎡, 워싱턴 50.0㎡에 배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구들 뿐 아니라,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탄소 및 제품환경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응 능력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음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의존도 감소와 저항감 증가

-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중심(의존도 80%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점차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그간 중화학공업,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주력하여, 발생되는 환경훼손에 대해 반감과 문제점 등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기존 화석연료(석유 43.6%, 석탄 24.3%)를 중심으로 한 의존도는 점차 감소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체 에너지(원자력 15.9%, LNG 13.7%, 신재생에너지 등 2.5%)에 대한 관심과 발전이 급속히 진행될 것임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선진국 중심의 기후변화 규제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녹색 산업 · 기술 수준 역시 취약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경제·사회구조를 둘러싼 환경구조는 점차 친환경적, 자연친화적 등 환경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중요한 사안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5) 정치적 변화 (Politics)

녹색성장을 국가전략 기조로 설정하여 체계적 추진

- 정부는 '09.7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연도별 달성목표, 투자계획, 수행주체 등 실행방안 구체화 등을 제시함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은 장기(~'50) 및 중기(~'13)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 · 체계적 운용을 위한 기본철학 및 목표를 제시하였음
  -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 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등 세부적인 10대 정책방향을 수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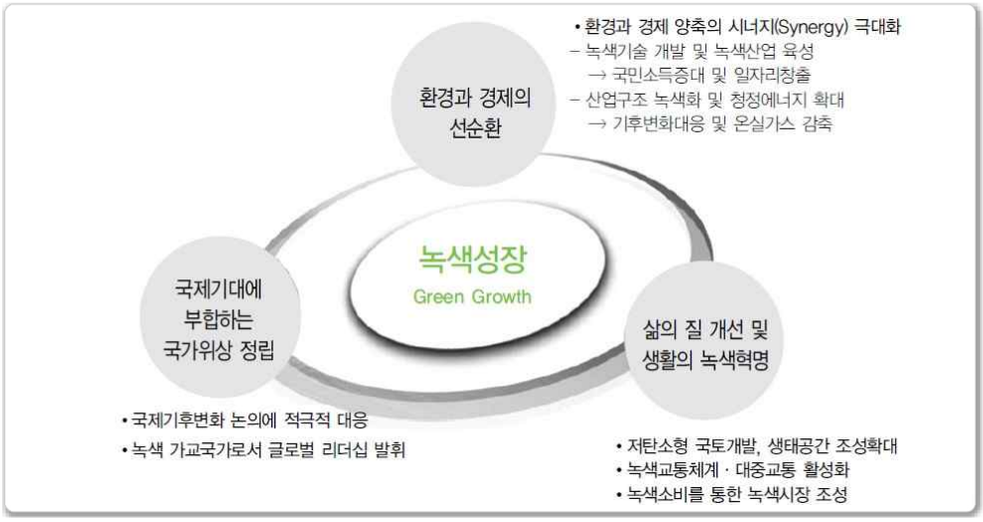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2009~2013)

[그림 2.6] 녹색성장의 개념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간 연계구조 변화 예상

- 도시와 지역이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하고 광역단위의 경쟁력 강화가 글로벌 시각에서 핵심적인 지역발전정책으로 대두됨
- 개별 공간단위로서 지역이 아닌 지역간 연계구조(Interregional Structure of Network)를 통한 다중심 지역 체계, 지역간 연계·협력 체계로 변화함

-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적합한 국토구조 변화를 위해 3차원적(초광역개발권~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으로 신지역발전체계를 수립하고, 규모별 입체적 추진 전략 마련함

[그림 2.7] 국토의 3차원 입체 지역발전전략

저탄소 녹색성장 지향형 新그랜드 녹색 국토공간 구축 추진 가속

- 환경과 경제가 함께하는 자원순환형 녹색국토 가치를 정립하고, 새로운 국책사업으로 환경우선적 개념을 도입하여 점차 국토공간을 녹색화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될 것임
- 특히, 녹색교통수단의 활성화를 통해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철도 및 연안해운의 분담률을 높이고,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 세부 전략을 추진중임
  -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고('09: 1.5% → '13년 5%), 이에 필요한 공공임대자전거 도입, 대중교통 연계시스템 구축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Ubiquitous)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여건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확대될 것임
- 이러한 녹색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추진들은 관광분야에서 새로운 관광교통수단으로 활용되며, 관광공간 조성시 녹색가치, 지역 녹색 거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로 '09~'18년간 총 3,114km 건설은 지역간, 관광자원 및 시설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으로 신관광상품으로 부각될 것임
- 이외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 대표의 자원유형별 10대 생태관광 모델 개발을 개발하고, 친환경적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신성장동력으로 환경과 관광, 생태와 관광을 복·융합하려는 노력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제2절 관광개발 환경변화와 전망

전세계 관광시장은 제반환경 여건 변화와 더불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환경과 관련된 글로벌 이슈는 관광개발을 둘러싼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관광개발과 관련된 환경 변화는 관광시장, 관광행태 등 시장수요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여 계획수립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1 분석의 틀

분석의 필요성

- 관광시장은 국가간, 지역간 이동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급부상하기도 하며, 산업측면에서의 중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관광개발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변화는 단순히 시장적 측면에서의 변화와 요구를 분석할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단위관광의 출현과 더불어 미래에 발생될 현상들을 전망하는데 필요함
- 관광개발은 사회, 경제, 문화, 환경, 정치 등 다양한 제반환경들의 구성요인 또는 요소들과 상호 연관성이 많으며, 각 산업 또는 환경부분간 복·융합으로 관광을 각 산업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음
- 또한, 관광개발과 관련된 경제, 정치, 테러 등 산업위험요소가 상존하므로 지속적인 확대·성장을 위한 방향과 구도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성공적인 관광개발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됨

분석의 방법

- 관광개발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론은 명확한 방법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상을 고려하여 내부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임
- 국제 및 국내 관광시장의 변화 특성, 국제 및 국내 관광객의 행태 변화 등은 새로운 관광자원 및 시설, 상품, 마케팅 등의 대안적 측면을 제시할 수 있음
- 본 분석에서는 국가단위에서 세계 관광환경의 변화와 전망, 한국 관광환경 변화와 전망으로 구분하여 제측면을 분석함

2 세계 관광환경 변화와 전망

1)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관광산업 중요성 대두

정보통신, 환경 등과 더불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부각

- 현재 관광산업은 석유, 자동차산업 등과 함께 세계 3대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10년 관광산업의 GDP는 전세계 GDP 점유율 9.2%에서 '20년에는 9.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WTTC는 '20까지 관광관련 사업이 세계 GDP의 9.6%까지 성장하고 세계 총 고용자의 9.2%가 관광관련 산업에 종사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관광산업이 국가 또는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표 2.3〉 세계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2010~2020년)

(단위: 십억 달러, 백만 명, %)

구 분	2010년			2020년		
		점유율	성장율		점유율	성장율
개인여행소비액	3,111	8.4	1.6	5,793	8.8	4.1
상용여행소비액	819	1.3	-1.8	1,589	1.4	4.3
관광산업GDP	1,986	3.2	0.7	3,650	3.2	4.0
관광관련산업GDP	5,751	9.2	0.5	11,151	9.6	4.4
관광산업 고용인구	81,913	2.8	-0.1	104,740	3.2	2.5
관광관련산업 고용인구	235,758	8.1	-0.3	303,019	9.2	2.5

주) 점유율은 전 산업에 대한 관광산업의 점유율을 의미함
자료 : WTTC(2010), 2010 Travel & Tourism Economic Impact

2010년 10억 명, 2020년 15억 명까지 성장 전망

- 세계관광시장은 '10년 연간 10억 명, '20년에는 연간 15억 명 이상(세계 인구의 약 20%)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0년 1억 9,500만 명, '20년 3억 9,700백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09년 세계관광객수는 880백만 명으로 전년대비 4.3%가 감소하였으나, 세계적 금융위기 등을 고려할 때 큰 감소세는 아니었으며, 이중 아시아·태평양지역은 '08년 184.1백만 명에서 '09년 180.5백만 명으로 1.9%의 감소세만 보였음

〈표 2.4〉 국제관광객 현황 및 성장률 (2008~2009)

(단위: 백만 명, %)

구 분	관광객수		성장률	
	2008	2009	'08/'07	'09/'08
전세계	920	880	2	-4.3
유럽	487.1	459.7	0.3	-5.6
태평양·아시아	184.1	180.5	1.1	-1.9
미주	147.1	139.6	3	-5.1
아프리카	45.7	48	3.8	5.1
중동	55.6	52.5	18.2	-5.6

자료 : UNWTO(2010), World Tourism Barometer, Volume 8 No.1 Janu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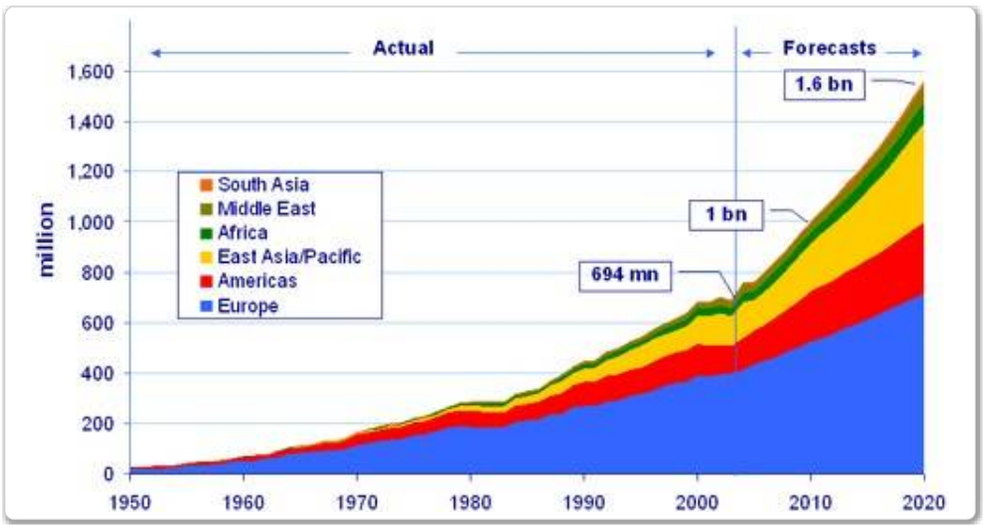

자료 : UNWTO(2001), Tourism 2020 Vision

[그림 2.8] 국제관광시장 전망 (1950~2020)

〈표 2.5〉 국제관광객 수 성장 전망 (1995~2020)

(단위: 백만 명, %)

구 분	기준년도	전망		시장점유율		평균 성장율
	1995	2010	2020	1995	2020	1995~2020
전세계	565	1006	1561	100	100	4.1
유럽	20	47	77	3.6	5	5.5
태평양·아시아	110	190	282	19.3	18.1	3.8
미주	81	195	397	14.4	25.4	6.5
아프리카	336	527	717	59.8	45.9	3.1
중동	14	36	69	2.2	4.4	6.7

자료 : UNWTO(2001), Tourism 2020 Vision

2) 동북아 관광시장의 성장 지속과 중국시장의 급부상

동북아시아 지역이 국제적인 관광목적지로 지속 성장

- 동북아 관광객 수는 '95년 4억 4천만 명에서 '20년 22억 4천만 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6.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홍콩의 4강 구도 형성으로 국가간 교류가 증가가 나타나는 등 가장 높은 성장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향후, 2020년에는 국제관광객 4명중 1명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표 2.6〉 동북아 관광객 수 전망 (1995~2020)

(단위: 천만 명, %)

구 분	관광객수			연평균성장률
	1995	2010	2020	1995~2020
동아시아/태평양	81	195	397	6.5
동북아시아	44	109	224	6.7
중국	20	62	130	7.8
홍콩	10	23	57	7.1
한국	4	7	10	4.1
일본	3	7	10	4.5

자료 : UNWTO(2001), Tourism 2020 Vision

중국 관광시장의 동북아 관광시장 성장 리드

- UNWTO에 의하면 '20년까지 아·태지역의 역내·외 관광 성장률은 각각 6.7%와 5.9%로 예상되어 세계 6대 권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중국은 '20년까지 연평균 8.9%의 성장을 통해 세계 5대 아웃바운드 송출국에 오를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관광산업의 국가GDP 기여율은 '08년 12.2%이나, '18년에는 12.5%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북아 관광시장 국가들중 최다 방문국임과 동시에 잠재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중국 국제 관광객수는 '00년 31.3백만 명에서 급속하게 증가하여 '05년 46.8백만 명, '07년 54.7백만 명이었으며, '08년 53.0백만 명에서 '09년 50.5백만 명으로 전년대비 4.8%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장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은 '10년 상하이 엑스포, 광저우 아시안 게임 등을 통해 '10년에는 더 많은 국제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3) 녹색관광의 중요성 대두와 관광행태 패러다임 변화

국제적 그린 코드 등장으로 인한 녹색관광의 중요성 증대

- 21세기 환경이 국가경쟁력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면서 자연환경 파괴 및 자원 고갈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지구 차원의 환경협력이 강화되고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발표된 이래 '07년 '다보스 선언(Davos Declation)'을 채택하면서 저탄소 녹색관광이 논의됨
- UNWTO는 기후변화에 따른 관광산업 및 관광형태의 영향을 인지하고 항공 및 숙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경감 등 각국 정부의 관광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요청함
  - 미국은 신정부들어서 온실가스 감축 등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EU는 가장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수립하면서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탄소배출량 감축을 요구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국제적, 정책적 중요도가 확대되면서 대량관광에 대한 반작용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증대로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 자연친화적 관광형태가 부상함
  - 한국은 '09.8 국가 차원에서 관광산업 녹색성장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저탄소 녹색관광의 개념을 정립하였음
  - 동 계획에서는 저탄소 녹색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관광상품 인식 제고, 관광자원 및 상품 개발, 탄소배출 완화제도 도입, 관광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실천과 전략과제를 수립함

소득수준향상 등으로 인한 다양한 관광형태의 변형 확산

- UNWTO에서는 21세기 관광환경에 대하여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인해 Free-Plan SIT(Special Interest Tourism) 증가, 정보수집 방법의 다양화로 인해 다양한 관광형태의 변형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한, 라이프스타일 변화,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 IT 정보기술의 발달로 관광정보 검색의 능동화 등으로 인해 기존 대량관광의 폐해에 대한 반작용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관광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환경오염, 현지인 착취구조 등 단순 소비적 관광의 폐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공정여행(fair travel)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등장함

• 소득수준의 전반적 향상으로 관광소비자의 눈높이 상승 및 여가·관광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개별여행, 호화여행, 환경친화적 관광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소비지향적인 관광형태는 3S(Sand, Sun, Sea)로 대표되었던 행태들이 점차 '대안관광'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산 등으로 인해 3E(Entertainment, Education, Excitement)로 변화되고 있음
- 즉, 자연생태를 체험하는 생태관광, 녹색관광을 비롯하여 국제회의와 전시를 개최하는 전시관광, 스포츠관광, 종교관광, 농촌관광, 의료관광 등으로 선호 관광행태가 전환되고 있음

정보기술의 발달과 고령화 사회 도래로 인한 관광소비 변화 가속

• 최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지식, 정보, 예술, 문화 등에 있어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음

- 농업경제, 산업경제, 서비스경제 시대를 거쳐 체험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경험의 가치연결 시스템의 구성요소로서 문화·관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재산권 강화, 유통 및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위한 표준화를 강화하여 콘텐츠에 대한 관리와 유통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세계 인구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10년에는 전체인구대비 약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기존의 관광행태가 세분화되어 실버관광, 건강치유관광 등의 새로운 관광행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비수준이 높은 실버층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이 전세계적에서 경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특히, 건강을 중시하는 고령인구층의 특성이 반영되어 웰빙 및 로하스 등 친환경주의 생활방식과 고유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면서 자연과 문명 공존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및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 관광에서 건강·웰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런한 점들은 다른 분야와 복·융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확대·재생산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웰빙과 연결된 농어촌 관광 패키지 상품화, 슬로시티 및 슬로푸드 운동과 연계한 관광상품화 등 관광과 여행, 건강과 웰빙 등을 모두 체험하기 위한 관광객들의 요구는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3 한국 관광환경 변화와 전망

1) 관광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증대

국민 국내관광수요의 지속적 성장 추세로 '12년 5억 2천만 명 예상

- 국민 국내관광수요는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등의 대내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관광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국민 국내관광 시장수요는 '99년 3,301만 명에서 '08년 3,739만 명으로 연 약 49만 명씩 증가하였으며, 이동총량은 '99년 2억 7천만 명에서 '08년 4억 명까지 증가하였음

〈표 2.7〉 국민 국내관광 총량 (1999~2008)

(단위: 만 명, 억 명, %)

구 분	국내여행 참가자수		국내관광 이동총량	
	참가자수	성장률	관광객수	성장률
1999	3,301	-	2.72	-
2005	3,688	-0.7	3.88	7.7
2008	3,739	2.5	4.08	-16.9

자료 : 한국관광공사(각년도), 국민여행실태조사

- 국민 국내관광총량은 '99년 숙박관광이 당일관광의 총량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1박 이상의 숙박관광의 수요가 증가하였음
  - 숙박관광의 증가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가처분 소득 증가, 고속철도 개통 등 국내외 관광관련 제반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한 증가하였음
- 증가추세인 국민 국내여행은 '12년까지 연평균 4.46%씩 증가하여, '12년에는 527백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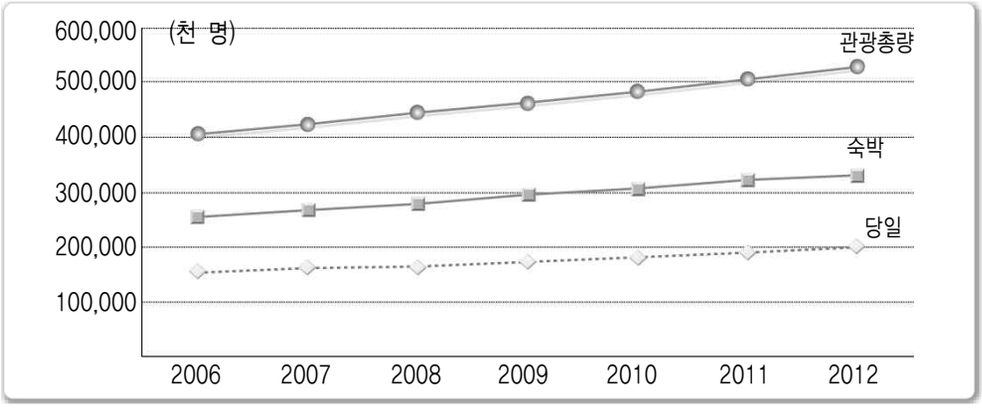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2006 관광수요예측

[그림 2.9] 국내관광 총량 추정 (2006~2012)

국민 국내관광 참여 횟수와 1인당 관광비용 증가

- 국민 국내관광의 행태를 분석하여 보면 '99년 이래로 국민 국내여행 경험률, 국내여행 참여회수, 1인당 여행 비용 등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민여행 경험은 '99년 92%에서 증가하여 '06년 95%를 넘어섰으나, '08년에는 다소 감소한 92.3%로 나타남
  - 국민국내관광 총 참여횟수는 '99년 5.09에서 증가하여 '06년 7.20으로 약 2.11회 증가하였다가 '08년에는 6.07로 다소 감소함
  - 국민 국내관광에서 지출한 소비액은 '99년 244천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6년 407천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08년 388천 원으로 감소함
- 국민 국내관광에 직·간접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및 요소들이 매년 증가와 감소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8〉 국민 국내관광 행태 변화 (1999~2008)

(단위: %, 회, 천 원)

구 분	1999			2004			2006			2008		
	당일	숙박	계	당일	숙박	계	당일	숙박	계	당일	숙박	계
경험율	77.4	63.7	91.8	76.8	81.8	95.8	80.9	80.5	95.3	75.2	77.4	92.3
참여횟수	3.74	1.35	5.09	3.22	2.65	5.87	4.26	2.94	7.20	3.48	2.58	6.07
1인당 비용	116	129	245	104	262	367	125	282	407	119	269	388

자료 : 한국관광공사(각년도), 국민여행실태조사

외래관광객 증가로 '12년 783만 명 예상(정책목표 2020년 2,000만 명)

- '08년 외래관광수는 689만 명을 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약 6.7%의 성장률을 보였음
  - 국적별로는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방문객('08년 기준 73.9%)들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외래관광객의 방한 연평균 성장률은 약 4.0%로, '20년 까지 연간 4.05%의 성장률로 1,07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09.11 정부는 관광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0년 한국이 목표로 하는 관광부국(觀光富國)은 외래관광객 2,000만 명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표 2.9〉 방한 외래관광객수 (2005~2008)

구 분	외래관광객수 (천 명)	증감율 (%)
2005	6,029	3.5
2006	6,155	2.2
2007	6,448	4.9
2008	6,890	6.9

자료 : 한국관광공사(각년도), 해외여행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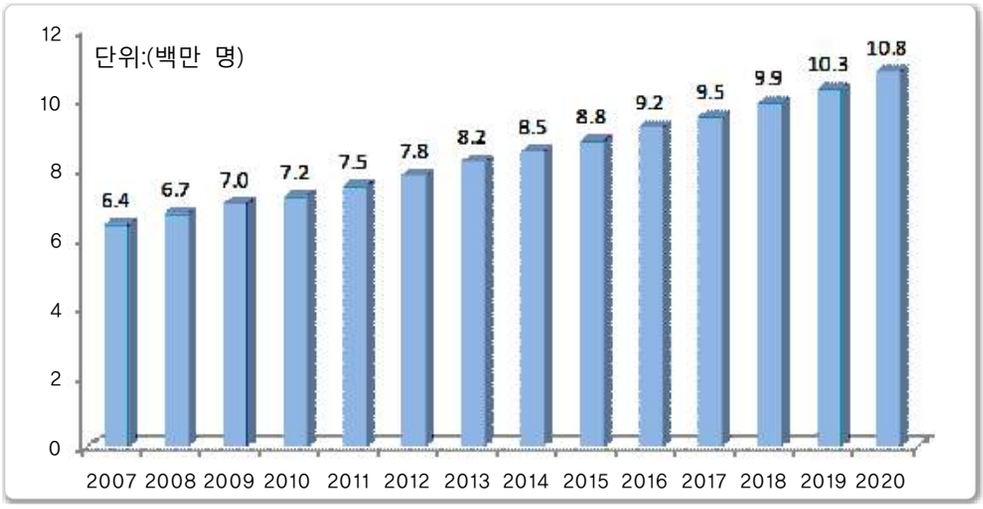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2006 관광수요예측

[그림 2.10] 외래관광객수 추정 (2007~2020)

순수 관광목적의 방문과 지출비용 등의 지속적 증가

- 외래관광객의 주요 방한 목적은 여가/위락/휴가가 '06년 43.6%에서 '09년 47.6%로 증가하였으며, 이외 사업/전문활동은 '06년 42.6%에서 '09년 36.3%로 다소 감소하였음
- 여행 행태에 있어 '06년 60.0%였던 개별여행이 '09년 62.4%로 증가하였으며, 단체여행이 29.3%에서 26.7%로 감소하는 등 개별관광에 대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방한기간 중 주요 활동중에서 '06년 58.9%였던 쇼핑이 '09년 62.5%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외 식도락관광도 38.9%에서 39.8%로 증가하였음
- 한국여행중의 총 지출경비의 경우 '06년 이후 1,193.6원에서 1,273.4원, 1,219.9원으로 증가하였으며, '09년 1,224.4원으로 증가하였음
  - 개별여행의 경우 '06년 1,192.6원에서 '09년 1,123.6원으로 증가세가 높지는 않았으나, 단체여행의 경우 각각 1,195.3원에서 1,446원으로 증가하였음

2) 관광시장 공급의 확대 추진

국가관광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 추진

- 전략적인 마케팅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관광분야인 의료관광, MICE 관광, 크루즈 관광, 생태관광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임
  - 전 세계적으로 보완대체의료 시장(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 CAM)규모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방과 관광의 연계를 통해 의료관광의 핵심 고부가가치 영역을 창출하려는 정책을 수립함
  - 국내 국제회의산업은 10년 간 평균 266%('98~'08)의 가파르게 성장하였으며, 점차 유치 및 개최를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전, 스포츠, IT, 의학 등을 유치강화 산업으로 선정하는 등의 정책을 수립함
  - '00년 크루즈 이용자는 1,200만 명에서 '07년 1,60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00~'07년 연평균 8.1%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복수기항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장기적으로 관광수요 확충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진작 → 인프라 등 관련투자 확대 → 외래관광객 방문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임

〈표 2.10〉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업무내용	
관광의 일상화	1. 휴가 및 공휴일 제도 개선 2. 가족관광 교육 시스템	3. 소외계층 복지관광 4. 숙박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
시장친화	1. 특별융자 등 단기대책 2. 민간 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3. MICE, 쇼핑 등 고부가산업 육성 4. 비자개선 및 한중일 협력 강화
한국형 콘텐츠 강화	1. 명품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 2. 관광재생 프로젝트	3. 테마형 관광국토 디자인 구축 4. 창조관광 실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11),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

관광산업과 연계한 복·융합 상품 개발 본격화

- 여가활동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한 STAR형 여가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됨
  - STAR형 여가란 자기계발(Self-development), 외모변신(Transformation), 나홀로 여행(Alone), 방콕족(Rest-at-Home)의 행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자기 개성이 강하고, 개별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형태임

• 모바일 산업지형을 바꾼 애플사의 앱스토어(App store)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모바일 관광정보 검색이 더욱 편리해지고 관광상품의 전자상거래도 증가할 전망임

- 애플 앱스토어의 여행(Travel) 카테고리에는 300여개의 애플이 있으며 , SK텔레콤의 T스토어에는 30개, KT의 쇼스토어에는 6개가 '10년 1월 현재 등록되어 있음

〈표 2.11〉 타산업과 관광산업간 복·융합 유형

유 형	주요 내용
축제관광	- 전통문화와 독특한 주제를 배경으로 한 지역 축제를 관광상품화
의료관광	- 의료서비스와 휴양, 레저, 문화 활동 등 관광 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형태
웰빙관광	- 휴양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형태로서 관광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트렌드
음식관광	- 지역 특산물과 고유 음식의 공급, 유통 및 소비의 통로로 관광활동을 유발
스포츠관광	- 스포츠이벤트와 관광을 연계시켜 상품화하는 관광형태
영화관광	- 영화.드라마와 관광을 연계시켜 영화제, 세트장, 촬영지 등을 관광상품화 하는 관광형태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관광산업 복·융합 촉진 방안

저탄소 녹색성장이 관광산업 전부문에 적용 확산

• 정부는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의 관광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분야에서도 탄소배출감소, 녹색관광 등 많은 책임이행과 권장사항 요구를 확대하고 있음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제시하였으며, 관광분야는 MICE 및 관광 분야가 선정되었으며, 이외 글로벌 헬스케어, 첨단 그린도시 등 관광 적용 분야도 다수 포함됨

•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관광자원개발 가이드라인('09)을 통해 관광지 개발, 관광단지 개발, 문화관광자원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광역권 관광개발 등 5개 사업군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특히, 생태자연관광은 대규모 시설조성 중심의 관광개발이 아닌 지역이 보유한 특색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사회 중심적 관광지 개발을 추구하고 있음

- 생태관광과 자연관광은 전체 관광시장 성장률보다 3배가 빠른 연간 20% 이상 성장하면서 2012년 점유율이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제3절 권역계획 도전과제

권역계획은 관광과 관련된 미래사회 환경변화와 관광개발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을 통한 계획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면된 과제들을 해결되어야 하며, 과제들의 해결 또는 대응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권역계획은 공공계획으로서의 과학적 합리성, 사회적·절차적 합리성 등이 확보해야함

1 계획여건 변화 동인

구 분			주요 변화 동인
미래사회 환경변화	S	사회 (Social)	▸신소비계층 등장과 소비주체의 다각화 전망 ▸인구통계적 압박의 결과로 인한 인구 고령화 가속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여성층 등 라이프스타일 계층 부각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 세계에서 최고 ▸이주의 시대를 넘어 다문화의 사회 도래
	T	기술 (Technology)	▸초고속 네트워크 시대 전개와 소셜 인플루언스 마케팅 관심 증대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한 네트워크 지식사회 재형상화 ▸위치기반서비스와 증강현실을 통한 신(新)관광정보서비스 제공 확대
			▸그리노믹스(Greenomics) 산업이 새로운 경제질서와 헤게머니로 등장 ▸융·복합에 따른 최첨단 기술을 통한 산업간 변화 발생
	E	경제 (Economical)	▸팍스 아시아나(Pax Asiana), 넥스트 아시아(Next Asia) 시대의 도래 ▸지식경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피플파워(people power) 시대 대두 ▸세계경제내 BRICs, N-11 등 신흥경제세력 등장 및 다극화 진행
			▸세계경제속에서 한국경제의 중요성과 영향력 증대 ▸국내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고급화 확산
	E	환경 (Ecological)	▸글로벌 아젠다(Global Agenda)에 대한 중요성 심화와 수용 요구 증대 ▸차세대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에 대한 개발 확산 ▸자연친화적 코드 그린(Code Green), 에코이즘(Ecoism) 부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연 생태계 보호 요구 증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의존도 감소와 저항감 증가
	P	정치 (Politics)	▸지역간 경쟁적인 클러스터의 중요성 지속 ▸국제간 이동증가로 정부역할의 변화와 국경을 초월한 경쟁 가속
			▸녹색성장을 국가전략 기조로 설정하여 체계적 추진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간 연계구조 변화 예상 ▸저탄소 녹색성장 지향형 新그랜드 녹색 국토공간 구축 추진 가속

인구 고령화, 신라이프스타일 계층 등장, 다문화 사회, 정보화(네트워킹), 녹색성장, 코드 그린 등

구 분		주요 변화 동인
관광개발 환경변화	세계 관광환경 변화와 전망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관광산업 중요성 대두 – 정보통신, 환경 등과 더불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부각 – 2010년 10억 명, 2020년 15억 명까지 성장 전망 ▸동북아 관광시장의 성장 지속과 중국시장의 급부상 – 동북아시아 지역이 국제적인 관광목적지로 지속 부상 – 중국 관광시장의 동북아 관광시장 성장 리드 ▸녹색관광의 중요성 대두와 관광행태 패러다임 변화 – 국제적 그린 코드 등장으로 인한 녹색관광의 중요성 증대 – 소득수준향상 등으로 인한 다양한 관광형태의 변형 확산 – 정보기술의 발달과 고령화 사회 도래로 인한 관광소비 변화 가속
	한국 관광환경 변화와 전망	▸관광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증대 – 국민 국내관광수요의 지속적 성장 추세로 '12년 5억 2천만 명 예상 – 국민 국내관광 참여 횟수와 1인당 관광 비용 증가 – 외래관광객 증가로 '12년 783만 명 예상 (정책목표 2020년 2,000만 명) – 순수 관광목적의 방문과 지출비용 등 지속적인 증가 ▸관광시장 공급의 확대 추진 – 국가관광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 추진 – 관광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상품 개발 본격화 – 저탄소 녹색성장이 관광산업 전부문에 적용 확산

신성장동력 산업, 세계관광시장 성장, 다극화, 녹색관광, 복·융합 등

미래사회 환경 변화와 관광개발환경 변화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여 계획내용에 반영

- 인구고령화 지속
- 신흥시장 성장 부각
- 新대안관광 부각
- 관광산업의 경제기여도 증가
- 환경 및 기후변화 중요성 부각
- 비교 경쟁우위적 요소 발굴
- 신성장산업분야와의 연계성 강화
- 미래사회 주요 변인을 고려
- 창의성 및 창조기반의 적극적 변화 유도
- 유연성과 확장가능성 반영
- IT, 환경 등과의 적극적 연계 전략 마련
- 성장시장의 우선 선점 고려
- 대중국 관광시장을 고려
- 고유 문화, 역사, 자연친화/웰빙 등 특화
- 고부가가치/융·복합 등 반영
- No.1, Only One 관광상품 적극 발굴 고려
- 저탄소 녹색성장형 관광자원 활용
- 역내외 관광자원간 네트워킹 강화
- 실버·여성층, 자연·환경테마 우선 선정
- 콘텐츠, 창의력 기반의 관광콘텐츠 확보
- 권역 핵심콘텐츠 확보로 고품격 기반 마련
- 문화, 예술자원 등과의 적극적 연계·활용

2 계획수립 도전 과제

국토공간구조 변화 영향을 고려한 권역계획 수립

- 권역내의 국한된 분석 시각에서 벗어나 국토 전체 틀의 변화, 지역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변화, 대규모 국책사업의 영향 등을 고려한 비교우위의 통로(전략)를 수립함

세계 경제, 사회, 문화 중심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권역계획 수립

- 팍스 아시아나(Pax Asiana), 넥스트 아시아(Next Asia) 시대의 도래, 인구 고령화와 소비주체의 다각화 등 글로벌 시장 및 인구변화요소를 고려하도록 함

대외 관광개발 환경변화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한 권역계획 수립

- 초국경적 지역간 경쟁, 동북아 경제협력, 월경적 소지역간 협력구조, 글로벌 아젠다(Global Agenda)에 대한 중요성 심화 등을 고려함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을 반영한 권역계획 수립

- 저탄소 녹색성장, 관광산업 녹색성장의 이념을 구현하는 지역공간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함

경쟁력 있는 지역관광발전 창조를 위한 권역계획 수립

- 그리노믹스(Greenomics), 그린뉴딜, 지방분권·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적 발전체제 전환, 지역간 협력 및 상생 등이 반영된 전략을 수립함

환경, 삶의 질 등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 권역계획 수립

- 요소중심의 양적 수요를 넘어 문화적 질적 수요의 고조,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의식 증대, 녹색환경에 대한 국민 요구 등을 투영하도록 수립함

다양한 관광자원개발 여건 기반을 제공하는 권역계획 수립

- 산, 강, 바다, 마을, 문화, 역사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고부가가치화하는 지역관광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수립함

Ⅲ 기존 및 유사 사례 분석

제1절 분석의 방향
제2절 기존 및 유사 수립 지침 사례 분석
제3절 기존 및 유사 계획 조정 사례 분석

제1절 분석의 방향

권역계획 수립 지침은 권역계획의 지위와 성격 등에 적합한 계획내용을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침을 주는 동시에 계획자체가 지니는 프로세스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함. 따라서, 기존 수립 지침과 유사 계획의 지침 및 조정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1 수립 지침 사례

기존 수립 지침

- 권역계획 수립 지침은 제3차 권역계획부터 구체적인 지침의 형태로 계획 수립권자에게 시달되었으며, 계획 지침에 근거하여 이후에 권역계획의 조정 사업까지 추진되었음
- 또한, 권역계획의 수립 시기의 주요 이슈 등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질 수 있도록 법적 내용과 추가 내용 등을 포괄하는 수립지침을 작성하였음
- 기존 권역계획 분석에서는 제3차와 제4차 권역계획 수립지침의 내용과 실제 계획 수립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지침의 문제점과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반영되어야 할 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함
  - 계획내용에서는 목적, 성격, 범위, 절차, 원칙, 이전 권역계획의 내용과의 차이점 등을 검토하고 수립지침을 항목별로 분석·검토함

유사 수립 지침

- 권역계획 수립 지침의 성격과 유사한 타계획 수립 지침 사례 및 지침 수립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중점으로 분석함
- 또한, 유사계획 수립지침 분석은 지위 및 성격이 비슷한 계획의 수립지침 중에서 제5차 권역계획 수립지침에 실질적으로 시사점을 줄 수 있도록 분석·검토함
  - 유사 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지침의 성격, 수립원칙, 작성시 유의사항, 수립 절차, 방법, 수립지침 등 권역계획 수립 지침의 방향, 목적, 세부 작성 요령 등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분석·검토함

2 조정 방안 사례

기존 계획 조정

- 권역계획의 수립권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중앙부처장의 조정을 거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제3차와 제4차 권역계획시안을 대상으로 거시적·광역적 관점에서 계획 내용을 조정하였던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조정과정상의 문제점, 조정 시 발생가능한 제약요소 등을 분석하여 향후 조정시 고려하고자 함
- 조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조정의 범위, 체계, 기준 등이 수준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존 조정사업의 과정단계 및 결과 등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검토·분석함
  - 구체적으로는 기존 조정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정 근거, 범위, 체계, 조정위원회 운영, 조정기준, 절차 등을 검토하고, 조정사업의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장애요인 등을 단계별로 검토·분석함

유사 계획 조정

-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계획 내용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유사하게 광역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국적 차원에서 재조정하는 경우는 당해 계획이 미치는 효과가 권역내에만 한정되지 않는 계획들에 대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권역계획은 계획수립 자체가 당해 권역에 한정되어 효과가 발생되지 않고 인접지역으로부터 전국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 계획 및 계획 자체의 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함
- 유사계획의 선정은 권역계획과 계획범위, 수준 등이 유사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검토·분석하고, 이외 조정에 따른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조정 사례를 대상으로 검토·분석함
  - 구체적으로는 유사 계획 조정 사례에서 조정 절차, 조정 범위, 조정 체계, 조정 기준 및 관련 조정위원회 등의 구성시 고려되는 항목 등을 분석하여 제5차 권역계획 조정을 위한 방안에 반영토록 함
- 특히, 권역계획의 수립 지침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 수립의 목적을 유지하고, 계획내용의 충실성과 수준 등의 제고 등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둠

제2절 기존 및 유사 수립 지침 사례 분석

제5차 권역계획 수립지침 작성시 계획 및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권역계획의 지위와 성격, 역할, 구성과 내용 등 권역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주요 항목별 고려사항, 제5차 권역계획 내용상 추가되어야 할 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함

1 기존 권역계획 수립 지침 분석

1) 제3차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 지침 (2001.8)

수립 지침 특징

- 상·하위계획과의 연계성과 방향성에 대한 명확성 설정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각종 지표, 개발방향을 검토·반영하여,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 관광수급분석 등 제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광(단)지 입지 및 규모, 개발방향을 수립함
- 계획과정과 기법에 체계성과 객관성 고려
  - 각종 분석 및 예측과정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하고, 이전 계획에 대한 객관적 반성 및 현실적 수요 예측치를 제시하여 개발규모를 결정토록 함
- 타 권역과의 차별화로 권역의 발전 잠재력 극대화
  - 권역의 관광개발여건 및 동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근거하여, 권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특화전략과 관광지 개발방향을 제시함
- 권역의 여건 및 역량을 고려한 사업의 실천성 중시
  - 시·도의 사업추진 여건과 가용 재원에 대한 역량을 기초로 실천 가능한 개발사업과 구체적 집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환경보전을 중시하고 환경과 조화된 관광개발 방안 제시
  - 보전적 관광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관광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기준을 기초로 개발 입지 선정과 개발 사업 선정을 결정토록 함

항목별 수립 지침

- 법정 명칭은 시·도 권역별 명칭에 준하여 '○○권 관광개발계획'으로 하고, 중단기적인 종합지침이 될 수 있도록 상위계획과 하위계획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함
  - 시·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지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2차 기본계획(상위계획)에서 제시된 계획내용이 충분히 세분화될 수 있도록 수렴·발전시키도록 함
  - 정부의 관광개발계획과 도차원의 개발계획을 계획내용에 포함하여 전국 관광개발과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 기존 및 신규 관광(단)지 정비 방향과 입지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
- 권역계획의 내용은 시·도의 재량에 속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 기간 내 실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전제로 하여 작성함
  - 계획 사업은 시·도가 추진주체인 사업의 중심으로 하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서 시·도의 실질적 추진 역할을 명시함
  - 계획기간 내 달성 가능한 지역 관광개발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사업을 제시함
  - 계획에 대한 투자계획은 기존 정부확정계획과 관광분야 예산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현실적인 규모를 설정함
- 권역계획의 수립과정은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의 수집과 합리적인 분석 과정을 거쳐 수립될 수 있도록 함

〈표 3.1〉 제3차 권역계획 수립 주요 지침 내용

구 분	주요 지침
가. 계획의 개요	• 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제시, 계획 수립 범위 설정, 계획 수립 과정 및 방법 제시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기본계획의 정책 및 사업을 지역적 차원에서 구체화, 권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광개발 방향 및 특화 사업을 제시하는 배경과 목적을 감안하여 명확히 설정
2) 계획의 범위 및 수립방법	• 시간적(2002~2006년), 공간적(광역 시·도 행정구역), 내용적 범위(관광진흥법 제47조 사항)로 구분 • 효율적인 수립체계를 개략적인 계획 과정도로 작성하고 주요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 설명

(표 계속)

구 분	주요 지침
나.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	• 입지여건, 자연환경, 환경현황, 인문현황, 지역경제, 공간구조 등 – 분석 단위는 시군 단위 – 환경현황조사는 사전환경성 검토 요구 항목 포함
1) 지역현황 분석	• 입지여건, 자연환경, 환경현황, 인문현황, 지역경제, 공간구조 등 – 분석 단위는 시군 단위 – 환경현황조사는 사전환경성 검토 요구 항목 포함
2) 관광현황 분석	•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 여건과 동향 파악 – 분석 단위는 시군 단위 – 관광지구, 관광시설, 관광상품 등 포함 – 문화부 이외 타 부처 개발·관리와 관련된 자연자원, 인문자원 포함
3) 집행체계 분석	• 계획, 제도, 재원, 조직 등 검토 – 국토 및 지역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 – 제2차 권역계획의 집행실적 평가 – 상위 법규, 관광 법규, 개발법규, 개발규제 법규, 세제관련 법규, 토지관련 법규, 개발촉진 및 특정지역 법규 등 – 재원별(국고, 지방비, 기금, 민자 등) 유형, 규모 및 추세 분석 – 관광개발 관련 상설, 비상설 조직 현황 및 역할 검토
다. 관광수급 분석	• 관광개발 유형과 적정 규모 파악을 위한 수요와 공급 비교·분석
1) 관광시장 동향	• 전국, 권역내 국민 국내·외래 관광객 수와 행태 • 관광객수 및 행태에 관한 기존 자료가 제한적일 경우 새로운 조사를 통해 보완
2) 관광수요 예측	• 제2차 기본계획의 수요예측 결과와 비교 분석 • 제2차 기본계획 제시 관광수요 추계치는 시도별 특성에 따라 10% 범위내 조정 가능 – 조사기준 시점 2000년, 계획기간별 연차별 표시 (2002~2006)
3) 관광수급 분석	• 수급 분석의 기본대상은 발전지표 설정을 위해 관광(단)지, 관광시설 등으로 함 – 수급 분석이라 함은 수요와 공급면적을 비교·분석 (관광특구는 수급분석 범위에서 제외, 자연자원은 선별적으로 포함 가능)
라.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 SWOT분석을 통해 기회, 강점을 강화하고 위협, 약점요인은 극복할 수 있는 계획과제 도출
1) 종합분석	• 지역이 갖는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 위협요인 분석
2) 계획과제	• SWOT분석을 통해 계획과제 도출

(표 계속)

구 분	주요 지침
마. 계획의 기본 방향	
1) 계획 비전 및 목표	• 개념적 발전상인 권역계획의 비전 설정 • 권역의 계획비전에 따라 실현하고자 하는 권역계획의 목표 설정 • 개념적인 권역계획의 목표를 계량화한 발전지표 제시 – 관광객 지표, 관광개발 지표, 관광시설 지표 구분 – 2000년과 2006년을 기준 – 정성적 지표 설정 가능
2) 개발전략	•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정책 수단으로 세부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시
3) 공간체계 구상	• 권역을 동질적 지역으로설정, 지역별로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 부여 • 지역–거점(도시) 구분을 기본, 각 지역별로 합리적으로 배분 – 특별시·광역시의 거점은 일정 지구로 설정 가능 • 관광개발 수단의 세부적 추진계획은 전략별 추진계획에서 제시 – 관광개발 수단 · 관광지점(관광시설, 관광명소) · 관광지구(관광거리, 관광시설지구, 관광특구, 관광마을 관광지, 관광단지) · 관광지역(관광도시, 관광권/관광벨트) • 관광개발 수단을 추진특성(개발/진흥), 추진주체(고유영역/협력영역), 추진방식(법정/계획)으로 유형화하여 제시
바. 전략별 추진 계획	
1)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관광자원의 보호 방안, 관광지·관광단지·관광시설 등 체계적 개발에 관한 계획, 자연 및 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계획 수립, 관광안내·정보 구축, 관광개발 평가 및 관리, 관광인력 개발 등 계획
2)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사. 관광(단)지 개발 기본구상	• 위치 도면, 기존 및 신규 관광(단)지 구분 총괄표 – 총괄표는 관광지명, 위치, 면적, 투자비(' 01년 이전, ' 02~ ' 06년, ' 07년 이후로 구분)
1) 기존 관광(단)지 평가 및 정비·보완계획	• 지정 면적 조정, 사업추진계획 변경 등의 방향 제시 • 기존 계획내용을 정비·보완하고 현실적인 추진 방향 제시
2) 신규 관광(단)지 입지 선정 및 개발방향	• 대상지 선정기준 설정, 선정기준 부합한 적정 입지 제시 – 현황 및 여건분석, 수요예측, 개발방향, 개략 투자비 등 제시 – 관광지등의 지정 신청시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작성 – 사전환경성 검토를 고려하여 환경 현황 조사, 환경 영향 및 저감방안 등을 검토·제시

(표 계속)

구 분	주요 지침
아. 계획의 집행방향	• 사업에 대한 소요 투자비 재원, 검토·발굴, 단계별 추진 일정 제시 • 조직 구성방안 검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수립
1) 투자 및 재원 조달	• 전략별 추진계획, 관광(단)지 개발기본구상 등의 소요 투자비 추정 • 가용재원 규모 파악후, 연차별·주체별 투자계획 수립 • 민자유치 촉진 방안 강구
2) 관련 조직 개선	• 전략별 추진계획, 관광(단)지 개발계획의 추진주체, 관계부처 명시 • 공공부문 인력 확보 및 전문화, 조직 구성 등 계획 수립 • 민관협력을 위한 신규 조직 구성, 기존 조직 강화, 민간 협력 촉진 방안 등 계획 수립
3) 관련 법·제도 개선	• 지역 조례를 통한 운영제도 기반 확립 방안 제시 • 필요시 정부의 법·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제시
자. 개발파급효과 분석	• 경제적,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예측
1) 경제적 파급 효과	• 생산, 소득, 고용, 조세 등 영향으로 구분하여 계량적으로 예측 – 분석에 요구되는 승수는 제2차 기본계획 활용, 지역별 자체 승수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
2)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제2차 권역계획 수립 내용과의 비교 분석

• 제2차 권역계획의 내용들을 법정 계획내용 및 계획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일부 명칭변경, 신설, 내용 추가 등을 조정하여 제시함

〈표 3.2〉 제3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 특징

제2차 권역계획	비 고	제3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
• 개발여건분석	명칭변경	•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
	신 설	• 집행체계 분석 – 관련계획 및 법규 – 재원, 조직 등
• 관광시장 전망	이 동	• 관광수급 분석
	신 설	•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 권역개발 기본구상 • 부문별 기본계획 • 사업추진계획	명칭변경	• 계획의 기본방향 • 전략별 추진계획 • 계획의 집행방향
	내용추가	• 전략별 추진계획 –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포함

2) 제4차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 지침 (2004.12)

수립 지침 특징

- 기존 계획 평가체계 강화
  - 제3차 권역계획의 평가를 바탕으로 제4차 권역계획의 수립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관광(단)지별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우선순위, 개발방향을 도출함
- 집행 실현성 제고
  - 관련 법규·제도·행정적 제한사항 검토하여 추진 불가능한 사업은 배제하고, 가용예산 분석에 기초한 현실적 투자계획을 수립함
- 관광개발 수단 다각화
  - 관광지, 관광단지 등 이외 문화·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등 각종 지역 관광개발사업을 제시함
- 관광개발 사업간의 연계성 강화
  -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및 타 부서 관광개발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사업간 연계효과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 지역관광혁신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지역 중심 관광개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역 관광개발 주체의 역량 제고 및 네트워크 방안을 제시
- 계획 사전 검토체계 확립
  - 문화체육관광부 조정 이전 단계에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최종시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체계를 확립함

내용별 수립지침

- 기존계획 평가체계 강화
  - 제3차 권역계획 사업실적을 관광(단)지 조성 및 예산투입 실적, 관광객 수 추이, 지역경제 기여효과(조세수입, 고용 등) 등 평가 후 개선방안 도출함
  - 기존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하여 원안추진, 계획 보완, 지정 취수 등 사업추진 여부를 유형화하고, 계속추진 사업은 우선순위를 설정함
- 계획집행 실현성 제고
  - 기존/신규사업 대상지역과 관련된 법·제도·행정사항 중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함

- 관광개발사업의 추진에 투자할 수 있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예산을 분석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진행의 실현성을 제고함

• 관광개발 수단 다각화

- 관광(단)지 이외 역사·문화·생태·생활 등을 소재로 한 소규모 문화·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함
- 권역내 지정된 관광특구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함

• 지역관광혁신체계 구축방안 제시

- 지역중심 관광개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역 관광개발 주체의 역량제고 및 네트워크 방안을 제시함

〈표 3.3〉 제4차 권역계획 수립 주요 지침 내용

구 분	주요 지침
1. 환경분석	
가. 계획의 개요	• 제3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과 동일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제3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과 동일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2007~2011년), 공간적(광역 시·도 행정구역), 내용적 범위(관광진흥법 제47조 사항)로 구분
3) 계획의 수립 체계 및 방법	• 수립체계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효율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립 – 계획 수립 주체, 계획 수립 과정, 공동 연구 주체 등
나.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	• 제3차 권역계획 수립지침과 동일
1) 지역현황 분석	• 입지특성, 인문·사회적 여건, 경제적 특성, 토지이용과 도시계획 및 공간구조적 특성 등 – 위치와 범위, 자연현황, 생태현황, 인문현황, 지역경제, 공간구조
2) 관광현황 분석	•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 분석 및 전망 – 관광개발 현황, 관광자원 현황, 관광시설 현황205, 관광상품 현황, 관광객 현황
3) 관련 정책 분석	• 제3차 권역계획 ' 3)집행체계 분석 ' 내용과 동일
4) 제3차 권역별 관광 개발 계획 평가	• 계획수립 평가, 계획내용 평가, 사업추진 실적 평가 – 계획수립 : 계획수립 주체, 기간, 방법, 체계 등 – 계획내용 : 여건분석, 수요예측, 관광개발 방향, 투자계획 등 – 사업추진 실적 : 관광(단)지 조성 현황, 공공 및 민간부문 투자 실적, 관광객 현황, 지역경제 효과(조세수입, 고용 등)

(표 계속)

구 분	주요 지침
다. 관광수급 분석	• 제3차 권역계획 수립지침과 동일
라.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 제3차 권역계획 수립지침과 동일
2. 계획수립	
가. 개발목표 및 전략	
나. 관광개발 기본구상	• 최적의 공간체계 설정 기준을 수립하여 공간체계를 구상 • 공간체계 구상결과 도출된 각 공간별 관광개발 기본방향 제시
1) 관광개발 체계 및 공간체계 구상	• 관광자원의 유사성 및 차별성, 관광자원의 연계 가능성, 접근성, 생활권 등 공간체계 구상을 위한 분석기준 설정 • 대안별 공간체계 구상 비교·평가후 최적의 구상을 도출
2) 관광소권별 개발구상	• 타 관광소권과 차별화된 기능을 부여하고, 관광개발 기본방향 제시
다. 관광(단)지 개발계획	• 제3차 권역계획 수립지침과 동일
1) 기존 관광(단)지 평가 및 정비·보완계획	• 각 사업별 원안 추진, 계획 보완, 추진 취소 등 유형화 • 계속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우선순위를 설정 – 원안추진 : 자원성, 사업추진 상황, 개발 잠재력 등 우수 – 계획보완 : 재개발(remodeling)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방안 강구 – 추진취소 : 조성계획 승인후 일정기간 경과(2~3년)하였거나 사업추진실적이 미진한 경우
2) 신규 관광(단)지 입지선정 및 개발방향	• 제3차 권역계획 수립지침과 동일
라. 전략별 관광 개발계획	
1)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 문화·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사업 발굴 • 여러 부처 추진 문화·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 현황 분석후 각 사업별 통합적 사업추진 방안, 신규 사업추진 계획 등 검토
2) 관광특구에 관한 사항	• 관광특구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성화 방안 검토
3)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 제3차 권역계획 수립지침과 동일
4)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 이용계획 수립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개발방안 수립 • 향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관리방안
3. 사업집행	
가. 집행단계 설정	• 관광(단)지 개발사업, 관광진흥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 제시 – 신규 관광(단)지 개발계획은 계획 수립, 행정절차, 토지수용, 사업추진 등 일정을 수립하여 집행단계를 설정함

(표 계속)

구 분	주요 지침
나. 투자 및 재원 확보 계획	• 제3차 권역계획 수립지침과 동일
다. 지원체계 정비	• 지역관광혁신체계 빛 전담 추진 조직 방안 검토 • 사업추진에 요구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수립
1) 관련 조직 개선	• 제3차 권역계획 수립지침과 동일 • 관광관련 대학교 및 연구기관, 관광사업자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역 관광교사 등 지역관광혁신체계 구축
2) 법·제도 개선	• 제3차 권역계획 수립지침과 동일
라. 개발파급효과 분석	• 제3차 권역계획 수립지침과 동일

제3차 권역계획 수립 내용과의 비교 분석

- 관광여건 및 동향분석의 집행체계 분석은 관련정책 분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전 수립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평가를 신설함
- 개발목표 및 전략은 관광개발기본구상부문으로 이동하고, 관광개발체계 및 공간체계, 관광소권별 관광개발구상을 신설함
- 전략별 관광개발계획의 경우 관광특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명칭을 변경함
- 사업 집행부문의 실천성 및 실현성 제고를 위해 집행단계, 투자 및 재원확보, 지원체계 정비 등으로 구분함

〈표 3.4〉 제4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 특징

제3차 권역계획 수립지침	비 고	제4차 권역계획 수립지침
•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 – 집행체계분석	명칭변경	– 관련정책 분석
	신설	– 제3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평가
• 개발목표 및 전략	이 동	• 관광개발기본구상
	신설	– 관광개발체계 및 공간체계 구상 – 관광 소권별 관광개발구상
• 관광수급 분석	신설	– 관광공급 산정
• 전략별 관광개발계획 –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사항	명칭변경	–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 관광특구에 관한 사항
• 계획의 집행방향 – 투자 및 재원 조달 – 관련 조직 개선 – 관련 법·제도 개선	이동	• 집행단계 설정 • 투자 및 재원확보 계획 • 지원체계 정비

3) 제3차 및 제4차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 방법

제3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 (2001.8)

- 권역계획의 시안 작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객관성, 전문성, 연계성, 실천성 등을 갖도록 함
  - 관련 계획 수립 경험이 풍부하며 우수한 인력을 갖춘 전문 연구기관 및 용역기관에서 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정 기관을 선정함
  - 공청회, 지역주민 의견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청취하고 이를 계획에 적극 반영함
  - 관광, 지역개발, 환경 등 전문 분야별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 계획에 반영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유관 부서와 시·군 공무원의 긴밀한 협의체제를 유지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시 시·도 산하에 (가칭)'권역계획기획단'을 비상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인접 시·도간의 유기적인 연계 개발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상위계획인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주체인 문화관광부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기관과 협의 체제를 유지하여야 함도록 함

제4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 (2004.12)

- 계획 사전검토체계 확립
  -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각 권역계획 최종시안의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문화관광부가 조정 이전에 세부적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함
- 개방적 연구수립체계 확립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계획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
- 적정 연구수행체계 확보
  - 사전환경성 검토,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 연구진행 일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연구 예산과 기간을 확보하여 연구 결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

2 유사 계획 수립 지침 사례 분석

1)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지침 (2008.11)

계획 성격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정부의 지역발전전략 및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지역발전특별법'에 의해 지역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임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지역산업 육성, 지역 인력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SOC 정비 확충,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임
- 정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계정상의 포괄보조금의 5년간의 계획으로 통해 지역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임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수립하는 범정부적 지역발전계획으로 지역 간 협력 촉진 사업과 정부 우선 지원 사업에 대한 지역주도의 협력계획임

수립 원칙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수립원칙에 있어 중점 추진과제의 선정에 대한 기준으로 대신하고 있으며 합목적성, 연계·효과성, 협력성, 실행가능성을 제시토록 함
- 계획 수립의 추진방향과 광역경제권 설정취지에 부합한 합목적성을 가지며 광역경제권 특성화 발전 및 신성장동력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제시토록 함
- 광역경제권 단위의 지역간 연계를 통해 규모의 상승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광역경제권내 네트워킹을 촉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제시토록 함
- 광역경제권내 지역 간 협력적 추진 및 이용·관리가 필요한 사업이고 계획기간 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이 가능하여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제시토록 함

작성시 유의 사항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타 국가계획에 의해 이미 수립된 지역계획과의 일관성·접합성을 유지하면서 광역경제권의 특성을 고려함
-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융합·발전 및 광역경제권별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 서술에 있어서는 계획의 논리와 합리성, 계획 내용의 양적 적정성, 통계자료의 신뢰성, 계획기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세부 추진전략이나 각종 현황도 등을 필요시 첨부하도록 함

수립 절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각 광역경제권 추진팀에 지침을 시달함
- 광역경제권별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함
- 지역발전위원회는 광역경제권별로 작성된 계획(안)을 취합, 협의 조정하여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종합시안을 작성하며,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토록 하는 절차를 이행함

수립절차	주체	내용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송부	지역발전위원회 지식경제부	• 계획 수립지침 작성
⇓ ➡		• 시·도(광역경제권 추진팀)에 지침 시달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 작성·제출	광역경제권발전 위원회	• 자율적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작성 • 관계부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 필요시 자체적으로 주민의견 수렴
⇓ ➡		•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
광역경제권별 취합·조정 (광역계획 수립)	지역발전위원회	• 전체계획을 취합하여 중앙부터와 협의·조정 후 최종 계획(안) 작성
⇓		
최종안 확정	지역발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정부	• 최종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

[그림 3.1]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절차

지침 주요 내용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지침은 '지역발전 특별법'에 의하여 지역발전 전략 및 지역 정책의 비전과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시함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계획 수립의 개요, 절차와 방법, 중점 추진과제, 세부지침의 4장으로 구성됨
  - 1장(계획 수립의 개요)에서는 계획 수립의 배경과 필요성, 계획의 성격과 역할, 계획의 구성을 기술하고, 2장(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에서는 계획의 범위, 계획 수립의 추진체계, 계획 수립의 추진일정을 기술함
  - 3장(계획의 중점 추진과제)에서는 계획의 기본 방향, 중점 추진과제의 선정기준, 광역경제권의 중점 추진과제를 기술하고, 4장(계획 수립의 세부지침)에서는 수립지침의 개요, 세부 계획 작성 요령을 기술함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세부지침은 계획 목차별로 작성되며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서두에 제시하여 각 시·도에서 작성하는 계획의 일관성을 높임
  - 연계의 중요성과 협의과정의 시간경과별로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정량적 지표를 사용하도록 하여 계획의 구체성을 높임

〈 참고 〉 지역발전계획의 체계

– 지역발전계획은 부문별 발전계획,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시·도 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으로 구성되며, 부문별 발전계획과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종합하여 지역발전5개년계획을 수립

구 분	계획수립 주체	주 요 내 용	비고
부문별 발전계획	국가 (중앙부처)	– 부문별 지역발전 목표 – 주요 부문별 계획	법정 계획
	중앙부처 주도, 시·도 협의	– 초광역개발 구상 (4대 초광역벨트 개발구상)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관련 시·도 공동)	–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과 목표 – 광역경제권의 현황과 여건 – 광역경제권의 발전역량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지역개발계정 추진사업) – 추진방안 및 평가체계	법정 계획
⇑			
시 · 도 발전계획	시·도	– 시·도별 발전 비전과 목표 – 시·도별 발전 방안	자율 계획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시·군 (시 · 군 공동)	– 기초생활권별 발전 비전과 목표 – 기초생활권별 발전 방안	자율 계획

2)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매뉴얼 (2009.10)

계획 성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시·군 기초생활권의 지역발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시·군별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을 보완, 대체하고 법상으로 지역발전계획체계의 한 축을 형성하도록 함
- 기초생활권계획은 소득증대를 위한 생활 전반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광특회계 지원사업 및 이와 관련이 있는 연계사업까지 망라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님
- 기초생활권계획은 광특회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기초생활권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서 시·군 단위에서는 당해 지역의 5년간 지역발전의 실행계획의 성격을 지님

수립 원칙

- 기초생활권계획은 자율계획으로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특성화 발전을 지향함
- 기초생활권계획에서는 삶의 경제적 기반인 소득과 고용은 물론, 삶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등 생활환경 전반에 대하여 체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여건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여 전체의 구상이 창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시행의 과정과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함
- 지역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 독창적이고 유연성있는 계획을 수립하되, 가장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 계획함
- 대부분의 기초생활권은 자립적 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립역량과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접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발전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작성시 유의 사항

- 기초생활권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시 유의사항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세부지침의 항목 중 작성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 때 별도로 언급하여 계획수립의 효율성을 높임

〈 **참고**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공간구상 (예시)

- 기초생활권의 발전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에 설정된 추진전략에 따라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역점사업들을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

• 계획권역내 소생활권의 발전방향과 개별 사업들의 위치를 표시
 - 1/40,000 지형도에 행정동·읍·면 경계 구분된 지도 사용
 - 구체적인 사업지 위치의 명기가 어려운 경우 도면에 사업명을 명기
• 소생활권별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단독사업과 협력사업을 구분하여 범례로 표시
 - 개별 시·군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단독사업과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분류

수립 절차

- 지역발전위원회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하고 설명회를 개최함
- 시장 및 군수는 기초생활권발전5개년계획 및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시·군 지역발전협의회의 심의를 받음

수립절차	주체	내용
계획수립 매뉴얼 작성·송부	지역발전위	•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		• 자치단체 지침 시달, 설명회 개최
기초생활권계획(안) 작성	시장·군수	• 기초생활권발전5개년계획 및 시행계획(안) 수립
⇓		• 시·군 지역발전협의회 심의(임의)
시도별 종합 조정 (시·도계획안 작성)	시·도지사	• 기초생활권계획(안)의 종합 조정 • 시도 자체사업과 기초생활권 사업을 종합하여 시·도계획 (안) 작성
⇓		• 시·도 지역발전협의회 심의(임의)
광역경제권별 취합·조정 (광역계획 수립)	광역발전 위원회	• 시도계획(안)의 심의·조정 • 시도 사업과 광역경제권 사업을 종합하여 계획 (안) 작성
⇓		• 관련 부처 검토
최종계획안 작성	지역발전위	• 부문별 계획(초광역개발 사업 포함)과 광역계획을 종합하여 지역발전5개년계획 작성
⇓		• 지역발전위 본회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승인	정부	• 지역발전5개년계획 확정

[그림 3.2]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절차

- 시·도지사는 기초생활권계획(안)을 종합 조정하고 시도 자체사업과 기초생활권 사업을 종합하여 시·도 계획(안)을 작성 후 시·도 지역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함
- 광역발전위원회는 시도계획(안)의 심의 및 조정을 하고 시도 사업과 광역경제권 사업을 종합하여 계획(안)을 작성한 후 관련 부처의 검토와 협의를 이행하도록 함
- 지역발전위원회는 부문별 계획(초광역개발 사업 포함)과 광역계획을 종합하여 지역발전5개년계획을 작성 후 지역발전위 본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정부는 지역발전5개년계획 최종계획안을 확정함

수립 방법

- 기초생활권별로 계획수립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 T/F로서 '기초생활권계획수립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계획기조팀-부문계획팀-집행계획팀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중점과제를 종합하여 계획안을 작성함
- 기초생활권계획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수립체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기초생활권 개발유형 선택
  - 기초생활권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 포괄보조사업별 중점 추진과제 선정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계획
  - 투자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
- 개발유형 선택,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중점 추진과제 구상, 투자계획 수립 등 계획과정의 전 단계에서 주민, 기업, 시민단체 등 지역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토록 함

지침 주요 내용

- 기초생활권계획에서는 수립지침의 목적은 제시되지 않으며 수립지침의 법적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초생활권계획은 기초생활권계획의 개요, 기초생활권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기초생활권계획의 수립방향, 기초생활권계획수립의 세부지침 등 4장으로 구성함

- 제1장(기초생활권계획의 개요)에서는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계획의 목적, 계획의 법적 근거와 성격, 계획의 구성을 기술함
- 제2장(기초생활권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서는 계획의 수립체계 및 절차, 계획의 수립방법을 기술함
- 제3장(기초생활권계획의 수립방향)에서는 계획의 기본방향, 계획수립의 주요전략, 중점 추진과제를 기술함
- 제4장(기초생활권계획수립의 세부지침)에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기초생활권 여건분석, 기본구상, 부문별 사업계획, 집행계획을 기술함

• 기초생활권계획수립의 세부지침은 전체적으로 예시위주로 작성되어 계획수립 작성자가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어 계획수립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시함

• 항목별 간단한 작성방법을 제시하고 예시를 도표 및 그림 등으로 자세히 들었으며 계획수립시 또는 작성시 고려사항을 별도로 첨부함

〈참고〉 부문별 사업계획의 틀과 원칙

– 기초생활권 계획의 부문별 사업 계획은 7개 정책 부문, 24개 사업을 기초로 구상하되, 타회계(부처, 교부세) 등의 사업을 추가
– 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 중에서 2010년 이후 공모사업 대상지로 결정된 사업의 유무를 파악
– 그러한 사업이 있다면 계획상에 우선 반영할 수 있고, 이전부터 추진 중이며 향후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도 반영할 수 있음
– 신활력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 7개 정책 부문별 소관 부처 및 중앙행정기관 부문별 계획 및 재정 배분상의 씰링, 매칭펀드 비율, 부정적 사업목록 등 부처별 가이드라인을 감안하되, 타회계 사업 추가
  · 기초 생활기반 확충 부문 (국토부, 농식품부, 행안부 / 환경부)
  · 문화관광체육 부문(문화부, 문화재청)
  · 농림수산 부문(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 산업 부문(지경부, 중기청)
  · 보건복지·교육 부문(복지부, 교육부)
  · 환경 부문(환경부)
  · 수자원교통 부문(국토해양부)
  · 기타(교육부문 등)
– 부문별 발전 목표를 최대한 계량화된 형태로 제시
– 1개 기초생활권 단독형, 2개 이상 기초생활권 협력형 사업으로 기획 가능함

3) 유비쿼터스 도시 계획 수립 지침 (2009.6)

계획 성격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시·군이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인 유비쿼터스 도시상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임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군의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적 특성과 여건분석,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시설 및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 구축과 운영방안 등의 마련에 중점으로 함
- 유비쿼터스 도시 계획은 유비쿼터스 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을 통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수립 원칙

-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행정 · 재정 등 도시관리 현황 및 정보통신 관련 현황 등을 종합적·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SWOT 등의 종합분석으로 현실을 기반해 미래 지향적이어야 함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관련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음
-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서비스 등 계획의 전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관계행정기관,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함
- 계획내용의 상세정도는 단계별로 차등화 할 수 있으며 부문별 추진방안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계획에 반영함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실행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관계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함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작성시 유의 사항

- 기본구상 및 부문별 계획의 누락이 없어야 하고 관련계획의 연계·조화, 현황자료의 신빙성 확보를 위한 자료출처 명시와 최신자료의 장·단기 구별 사용, 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함
- 부문별 계획에서 계획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 부문별 계획 간의 환류(feedback)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이고 전체 계획과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함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정비 및 조정은 법 제11조에 의하고 기존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재수립시에는 기존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함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서 작성시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혼란이 없도록 계획내용과 용어를 관련법에 근거한 정의를 기반으로 계획서와 자료집으로 구분하여야 함

수립 절차

- 시장·군수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입안함.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와 협의함
- 입안 조정이 필요할 때는 도지사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정하며, 조정대상구역이 같은 도의 협의는 도지사가 하고 조정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도 협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함
- 필요시 시장·군수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 해당분야 전문가, 각계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 개최하고 입안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을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토록 함
- 시장·군수는 공청회 개최결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포함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의 승인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승인 신청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승인하고 시장·군수에게 송부함

• 시장·군수는 승인받은 즉시 일반인에게 공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최종 유비쿼터스도시계획서를 제출함

수립절차	주체	내용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입안	시장·군수	• 관할구역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입안
⇩		•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와 협의 • 홍보를 통하여 주민 참여
입안 조정 (필요시)	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 조정 대상구역이 같은 도의 협의 • 조정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도의 협의
⇩		
의견 청취 (필요시)	시장·군수	• 필요시 유빔쿼터스도시계획(안) 공청회 개최
⇩		• 해당분야 전문가, 각계주민대표 및 관계기관 참석
관계행정기관 협의	시장·군수	• 입안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 협의
⇩		•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승인신청	시장·군수	• 공청회개최결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포함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 승인신청
⇩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	• 승인신청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의 협의
⇩		• 필요시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침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승인·송부	국토해양부장관	•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승인
⇩		• 시장·군수에게 승인 송부
유비쿼터스도시계획 공고·제출	시장·군수	• 승인받은 즉시 일반인에게 공고 • 최종 유비쿼터스도시계획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그림 3.3] 유비쿼터스 도시 계획 수립 절차

지침 주요 내용

•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지침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법적근거는 법 제8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유비쿼터스 도시 계획 수립 지침은 총칙,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범위,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부문별 수립기준,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절차, 부칙으로 6장으로 구성됨

- 제1장(총칙)에서는 지침의 목적 및 의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지위와 성격, 법적근거, 지침의 구성을 기술함
- 제2장(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범위)에서는 계획수립 대상, 목표연도, 계획구역의 설정을 기술함
- 제3장(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내요,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계획 작성시 유의사항을 기술함
- 제4장(부문별 수립기준)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기본구상, 계획의 부문별 수립기준, 계획의 집행관리를 기술함
- 제5장(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절차)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입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승인신청,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승인을 기술함
- 제6장(부칙)에서는 시행일자 등 부가사항 기술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세부지침은 계획의 목차에 따른 항목별 지침이 아닌 주요 사항에 대한 개략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기본 구상, 부문별 수립기준, 집행관리로 구성됨

- 각 세부항목별 지침에 대해서는 기본방향, 수립 기준 등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의 내용을 제시하였음
- 또한, 계획의 부문별 수립기준에서는 각각의 기본방향이외에 고려사항, 주요 분석 내용 등을 제시하였음

3 시사점

관광개발 환경 변화에 따른 방향 및 과제 등의 제시 부재

- 기존 3차 및 4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계획 수립을 위한 항목별 세부 작성 요령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어, 각 권역별 관광개발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 및 과제 등의 제시가 다소 부족함

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으로서의 체계성 다소 부족

- 제3차 및 제4차 권역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지침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수립과 관련된 방향성 등을 제시하고 있어 타 유사 계획 지침과 비교하여 체계성이 다소 부족하였음

계획 내용 중 예시 등을 통한 지침 활용 제고 미흡

- 항목별 계획 수립 지침 및 요령 제시에 있어 예시 등을 통한 계획 수립 방법 등의 전달보다는 다소 큰 방향성 등만을 제시하고 있어, 지침으로서의 성격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일정 기간을 통해 수립되는 연속성을 고려한 지침 내용 수립

- 유사 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일정 기간후 수립되는 계획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지침으로서의 완성도와 향후 여건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작성됨

계획 성격, 수립 원칙,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

- 유사 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당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목적, 계획 자체가 가진 성격, 수립시 변하지 않는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계획수립 기간이 상이하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음

별도의 계획 수립체를 구성하여 계획 수립의 체계성을 강조

- 계획 수립기간중 별도의 계획 수립 전담반, TF 등을 통해 상위계획 또는 지침상에서의 주요 과제들에 대해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광역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 할 수 있는 체계를 강조함

제3절 기존 및 유사 계획 조정 사례 분석

기존 제3차 및 제4차 권역계획 조정 방안 및 조정 사업 결과, 유사 시·도 계획의 조정 또는 심의 등의 사례를 통해 조정 방향, 조정 절차, 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시도의 권역계획 시안 작성후 중앙정부의 조정에 대한 방향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1 기존 권역계획 조정 방안 분석

1) 제3차 권역계획 조정 방안 (2001)

제3차 권역계획 조정 개요

- 조정을 위한 심사 대상을 계획의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총 8개 부문으로 구분하며 부문별 심사를 실시함
  - 권역계획의 내용은 계획의 개요, 관광여건 및 동향분석, 관광수급분석,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계획의 기본방향, 전략별 개발계획, 관광(단)지별 개발 기본구상, 계획의 집행방향 등 총 8개 부문으로 구분함
- 제3차 권역계획의 조정을 위한 심사는 각 시·도가 제출한 권역계획을 중심으로 서류 심사를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필요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음
  - 제3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의 내용을 근거로 각 권역계획을 심사하였으며, 제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향 및 내용도 주요 기준 내용으로 고려하여 심사 하였음
- 제3차 권역계획의 조정은 심사시 각 계획체계와 계획내용 체계를 구분하여 심사하며, 계획체계는 계획지표 등을 도출하는 과정의 타당성을 의미하고, 계획내용은 도출된 결과자체의 타당성을 의미함
  - 계획체계 조정은 권역계획간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 목차, 기간, 관광여건 및 동향분석, 관광수급 분석, 관광개발 기본구상, 전략별 관광개발계획, 관광(단)지별 개발방향, 계획의 효율적 추진 등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조정함
  - 계획내용 조정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며 주요 내용별로 포괄적인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함

제3차 권역계획 조정 체계

- 조정 주체인 문화관광부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권역계획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지사가 작성한 권역계획 시안에 대하여 협의 및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제3차 권역계획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권역계획조정위원회 관련 세부사항은 문화관광부가 정하여 구성·운영함
- 시·도는 해당 지역의 제3차 권역계획 시안 및 최종안을 제출하며, 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를 문화관광부에 회신함
  - 시·도는 문화관광부의 조치결과를 반영하여 계획 최종안을 작성하고, 문화관광부에 제출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함
  - 시·도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며 최종 계획서를 작성한 후 문화관광부에 제출하여 확정함
- 권역계획 조정위원회는 권역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지침 및 방향성을 정립하고 계획 체계·계획 내용 심사, 기타 권역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정부, 시·도간 협의·조정함
  - 조정위원회는 관광 전문가 6인으로 구성하며 5~6주간에 걸친 위원별 개별 심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심의 내용에 대한 종합검토 실시, 위원별 심의 결과 피드백(Feedback), 조정 및 통합 등을 진행함
  - 조정위원회는 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서면 심의하여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부와 시·도 계획을 조정함
  -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각 권역계획을 서면 심의하여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부가 시·도와 계획을 조정하여 계획을 최종 수립함
  - 조정위원회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관련 분야의 전문가 6인으로 구성하며, 조정 범위, 조정 기준 등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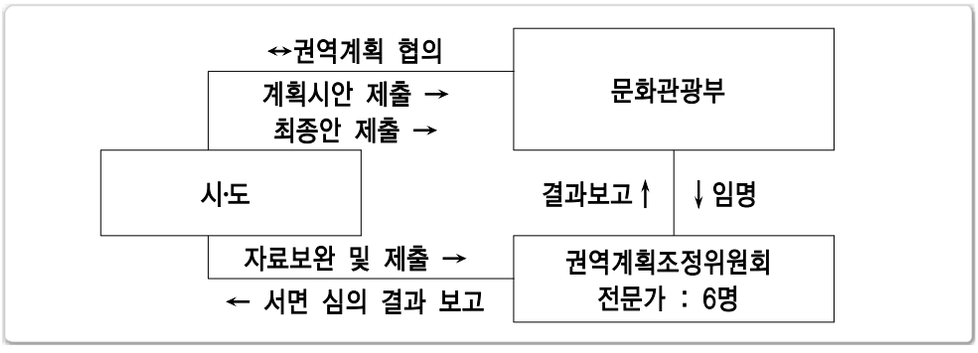

[그림 3.4] 제3차 권역계획 조정 체계

제3차 권역계획 조정 절차

• 제3차 권역계획 조정은 권역계획 시안접수, 계획체계 및 내용심사, 권역계획 조정회의 개최, 권역계획협의회 개최, 최종안 작성의 5단계로 구분함

- 권역계획 시안 접수(1단계)는 문화관광부가 각 시·도에서 작성한 권역계획 시안을 접수하여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계획체계 및 내용심사(2단계)는 조정위원회가 먼저 권역계획 시안의 계획체계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권역계획의 내용을 심사함
- 권역계획조정위원회 회의 개최(3단계)에서는 권역계획 시안의 계획체계 심사 결과와 계획 내용 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시·도에 통보함
- 권역계획협의회(4단계)는 시·도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용/부분수용/수용불가 등으로 구분하여 조치결과를 문화관광부에 회신하며 문화관광부는 시·도의 조치결과 중 부분수용/수용불가 사항에 대하여 시·도와 문화관광부간 협의를 함
- 권역계획협의회는 권역계획 조정위원회 위원, 시·도 관계자, 계획수립 기관이 참여할 수 있음
- 최종안 작성(5단계)는 문화관광부가 시·도와 권역계획협의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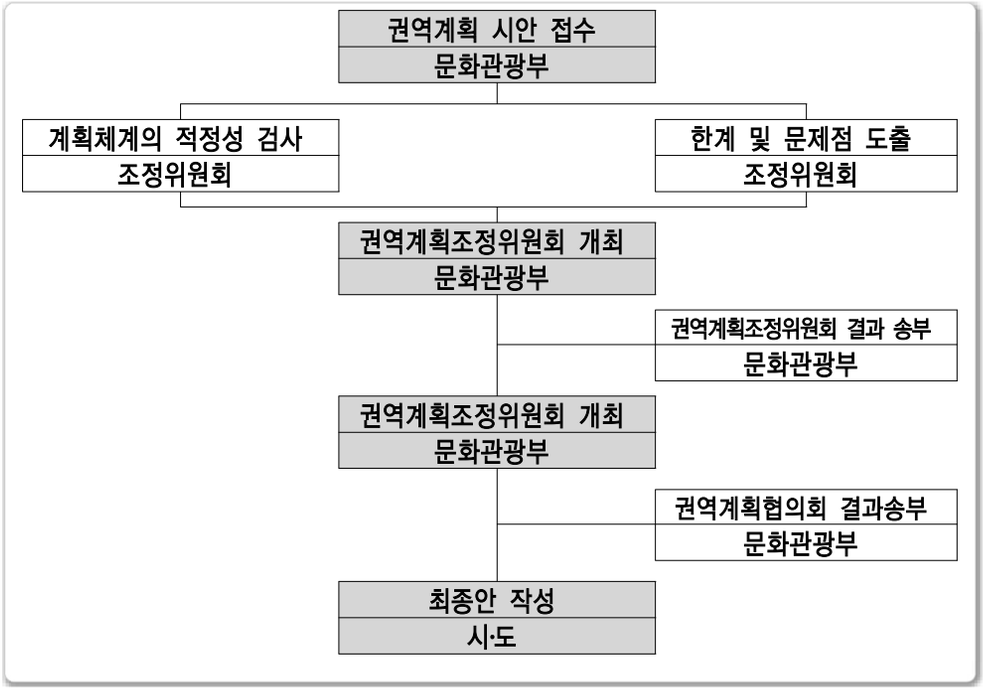

[그림 3.5] 제3차 권역계획 조정 절차

2) 제4차 권역계획 조정 방안 (2007)

조정 개요

-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권역구분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권역계획은 상위계획인 제2차 기본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역별 관광개발 방향과 연계성을 강화함
- 행정구역상 시·도를 공간적 범위를 기준으로 설정된 권역구분에 의해 수립함에 따라 인접 시·도간 유사한 사업을 중복하여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중복을 최소화함
- 권역계획이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타권역계획과의 차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해당 권역역의 관광 여건과 자원성, 시장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유도함
- 제4차 권역계획의 내용 중 필수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여야 할 사항과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사항을 구분함
  - 권역계획 조정 근거가 되는 관광진흥법상 조정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획의 목적 및 성격, 계획 조정의 목적, 법적계획 포함사항 등을 고려하여 모든 내용을 조정 범위에 포함함

〈표 3.5〉 제4차 권역계획 필수·선택 조정 항목

구 분		서류 평가		현장 평가
		필수 조정	선택 조정	
환경분석	계획의 개요	–	◎	–
	관광여건 및 동향분석	–	◎	–
	관광수급 분석	◎	–	–
	종합 분석 및 계획과제	–	◎	–
계획수립	개발목표 및 전략	◎	–	–
	관광개발 기본구상	–	◎	–
	관광(단)지 개발계획	◎	–	◎
	전략별 관광개발기본계획	◎	–	◎
사업집행	집행단계 설정	◎	–	–
	투자 및 재원확보계획	◎	–	–
	지원체계 정비	–	◎	–
	개발효과분석	–	◎	–

- 제4차 권역계획 수립이 완료된 권역을 우선적으로 조정하며,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 서류평가는 각 권역계획의 전반적 내용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총 5개의 항목을 구분하여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정성적인 방법으로 종합적인 평가 의견서를 작성함
  - 현장평가는 서류 평가 결과 관광지 및 관광단지, 하드웨어적 전략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장평가 등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함
  - 현장평가는 총 4개의 평가기준별로 제시된 착안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 사업을 평가한 후 각 배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실시함

제4차 권역계획 조정 체계

- 문화관광부는 제4차 권역계획의 조정 주체로서 조정 기준 및 절차 마련하고 시·도와 권역계획을 협의하고 조정함
  - 효율적인 제4차 권역계획 조정을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함
- 각 시·도는 해당 지역의 제4차 권역계획 시안 및 수정 계획안을 제출하며, 문화관광부, 조정지원단 등의 관련자료 요청 등에 대해 협조하며 권역계획 설명회 등을 통해 시·도의 의견을 제시함
- 조정위원회는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제4차 권역계획 시안 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정과 관련한 각종 회의 및 현장평가 등에 참여하여 각 권역계획에 대한 조정의견서를 작성함
- 제4차 권역계획 조정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권역계획과 관련한 관광개발, 지역개발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함
  - 권역은 각 권역의 입지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설정하며 총 15인의 조정위원을 임명함
  - 제4차 권역계획 조정위원회를 각종 평가 및 회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종합조정위원장 1인, 대권별로 대권별 조정위원장 4명을 임명함
- 조정지원단은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조정위원회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제4차 권역계획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함
  -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계획 평가를 위하여 시·도가 제출한 시안 정리, 자료 확보 등 조정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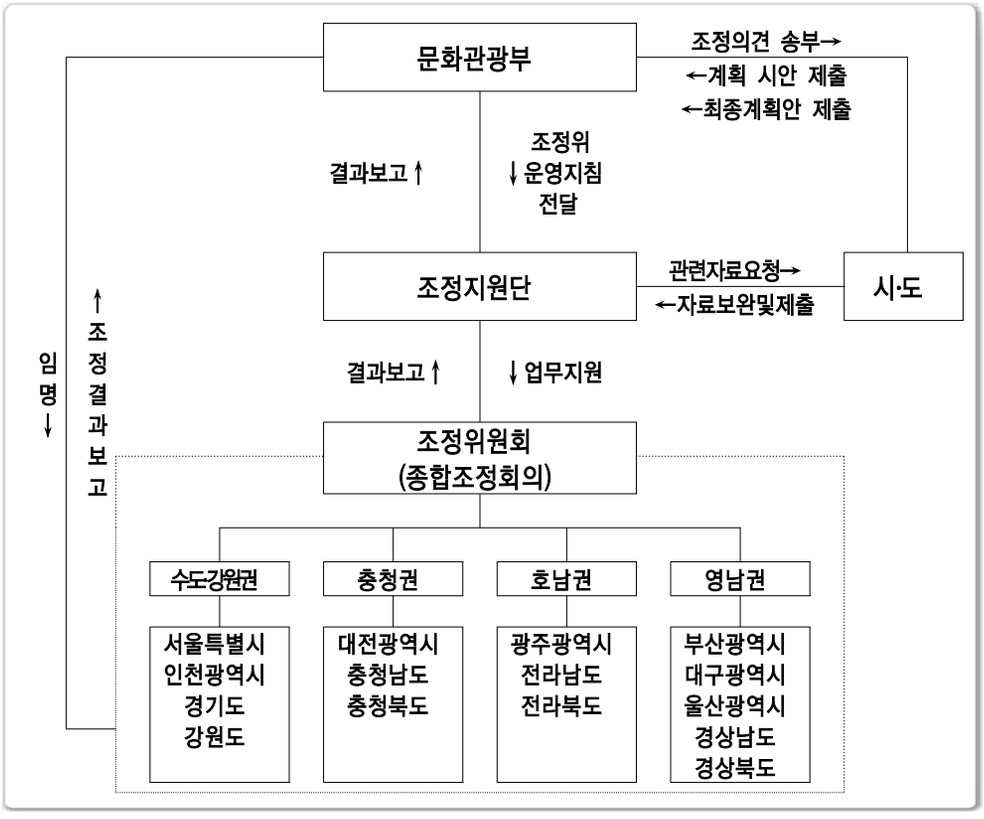

[그림 3.6] 제4차 권역계획 조정 체계

조정 절차

-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조정결과 도출 및 계획수립주체와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한 조정 절차를 준비단계, 평가단계, 수정보완단계로 구분하여 조정을 실시함
  - 준비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제4차 권역계획 조정을 위하여 시·도 계획시안 접수 및 정리, 권역계획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조정위원회 운영 지침 마련, 조정위원 임명 등이 진행됨
  - 시·도에서는 각 권역계획 시안을 제출하며 조정지원단의 요청시 추가적인 보완자료를 제출하며, 시안 제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최종의견을 반영한 계획안을 제출하여 조정 과정에서 시안 변경 발생을 최소화함
- 평가단계에서는 각 대권별 착수 회의시 서류 및 현장평가에 대한 내용과 일정에 합의한 후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시·도는 착수회의와 현장평가시 설명회에서 해당 권역계획의 주요 내용 및 평가시 착안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종합조정회의 결과를 토대로 문화관광부의 최종 조정안을 작성한 후 시·도에 통보하고 최종 계획안을 다시 접수하여 조정을 완료함

	조정 절차	주요 내용	시·도 역할
준비단계	권역별 계획시안 접수	•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시안 접수	계획 시안 제출
	⇩		
	조정지원단 선정	• 조정 기준 및 절차, 위원회 운영지침 마련	
	⇩		
	조정위원회 구성	• 대권역별 조정위원 임명	
	⇩		
	조정준비자료 작성	• 조정 세부계획 및 지침 수립, 조정 준비 자료 정리	요청 보완자료 제출
	⇩		
평가단계	착수 회의 개최	• 대권역별 조정 일정 등 협의 • 시·도 계획 설명회 개최	권역별관광개발 계획 설명(PT)
	⇩		
	서류평가 실시	• 조정위원별 서류 평가 실시	요청 보완자료 제출
	⇩		
	1차 회의 개최	• 대권역별 서류 평가 결과 협의 • 현장 평가 대상 사업 선정	
	⇩		
	현장평가 실시	• 대권역별 현장평가 실시 및 의견서 초안 작성	현장평가 대상 사업 설명
	⇩		
	시·도 의견 수렴	• 의견서 초안에 대한 시·도 의견 수렴	시·도 의견서 제출
	⇩		
	대권역 종합회의 개최	• 대권역별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에 대한 최종 의견서 작성	
	⇩		
수정보완단계	종합조정회의 개최	• 제4차 권역별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최종 조정의견서 작성	
	⇩		
	최종 조정의견서 제출	• 조정위원회 → 조정지원단 → 문화관광부	
	⇩		
	시·도 의견 수렴	• 문화관광부 조정의견에 대한 시·도 의견 수렴 및 수정	계획 수정·보완
	⇩		
	수정계획 접수	• 수정된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접수	수정계획 제출
	⇩		
	종합조정회의 개최	• 수정된 권역별관광개발계획 확인	
	⇩		
	조정 완료	•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조정 완료	

[그림 3.7] 제4차 권역계획 조정 절차

2 유사 계획 조정 사례 분석

1) 도종합계획 조정 (2006)

조정 개요

- 도지사는 국토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 미래의 경제적·사회저 변동에 대응하여야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기본법 제20조에 따라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분별 계획이 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도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3조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정시 법적내용 포함 여부를 조정함
  -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 도종합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의 일관성, 세부 사업의 실현가능성, 갈등 발생 해소 방안, 재원 확보방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골격을 수렴하며 하위계획에 대한 개발방향의 지침의 역할을 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개발방향과 투자방향 제시, 유도 하는 계획이 되도록 조정함
  - 국토종합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의 계획을 포함하도록 조정함

조정 체계

- 도종합계획 조정은 조정 주체인 건설교통부가 직접 담당하며 건설교통부의 조정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도의 경우 도지사 의견 수렴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정을 실시함
  - 건설교통부는 도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도 및 계획 수립기관과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하여 각 도종합계획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계획시안에 대한 조정을 최소화 하고 있음
- 도종합계획수립연구단 협의회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건설교통부 담당자, 계획수립 대상 도의 관계자, 도종합계획 수립 기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주요 단계마다 워크숍을 개최하여 계획의 방향 및 내용이 수립지침에 부합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함
-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운영 되며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함
-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기본법 제15조에 의하여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국토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사항,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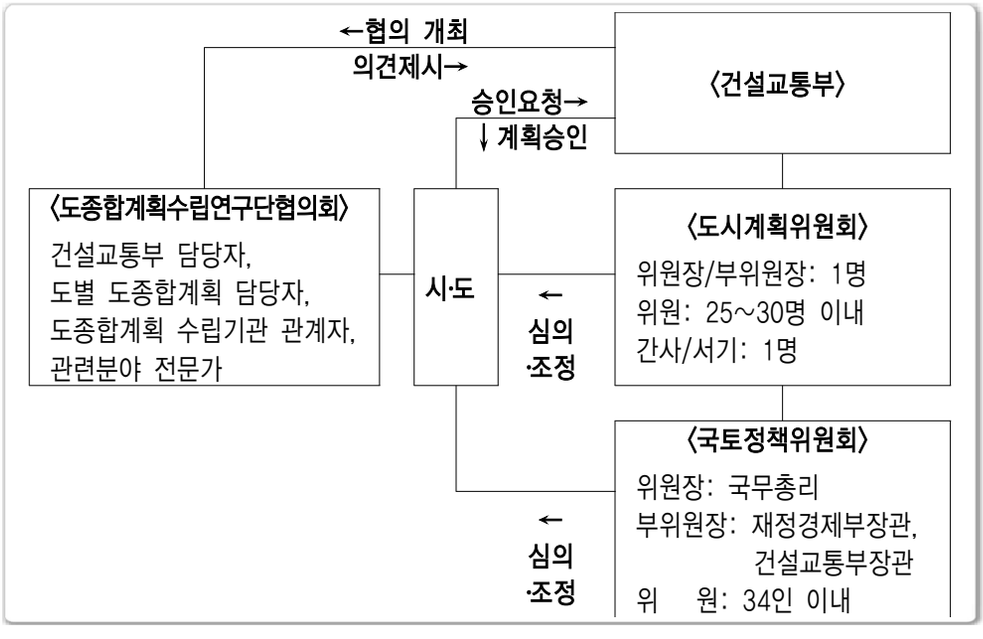

[그림 3.8] 도종합계획 조정 체계

조정 절차

- 건설교통부는 수립 지침을 제시하여 각 시·도의 도종합계획 수립시 원활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도종합계획 수립 연구단 협의회는 도종합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요 단계마다 워크숍을 개최하여 계획의 방향 및 내용이 도종합계획 수립 지침에 부합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참여함
- 도지사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종합계획 내용에 대한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건설교통부는 도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국무총리의 승인을 거쳐 학정하고, 확정한 계획을 도지사가 공고함
- 건설교통부는 국토정책국을 중심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의 정합성 검토, 계획간의 마찰·알력에 대한 합의·조정·유도, 각종 사업의 투자계획에 대한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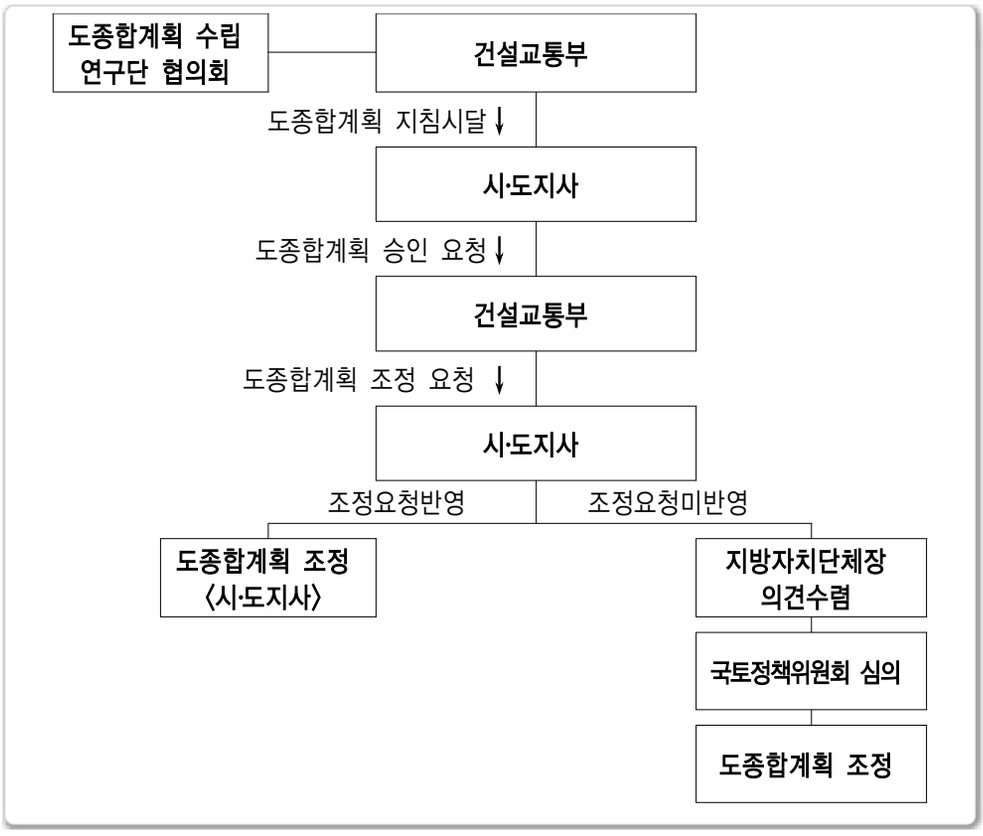

[그림 3.9] 도종합개발계획 조정 절차

2) 지역산업진흥계획 (2009)

조정 개요

-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지역진흥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산업의 발전비전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임
-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지역 맞춤형 사업을 자율 기획·추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전문적 컨설팅·조정을 통한 예산 지원, 성과중심 평가 강화 등 지역과 중앙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함
  -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지역 스스로 핵심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 성과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전략산업을 계획하여 지역의 가용자원을 집중 투입 함으로써 산업 육성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다 확대함
  - 정부는 지역별 전체사업의 종합평가 및 조정·컨설팅 기능, 예산 지원 및 성과 중심 평가에 집중함
- 모든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개별사업계획과 총괄사업계획으로 구분하여 조정을 실시함
- 총괄사업은 기존 개별사업별 사업계획의 독자 수리 시 반영되기 어려웠던 내용을 총괄추진계획, 개별사업 연계추진계획, 자체평가·환류계획, 사업환경 활성화계획 등 세분화하여 반영함
- 기존 개별사업의 사업계획에 해당하는 개별사업계획은 사업여건 분석, 사업의 필요성, 지원대상기업의 역량분석, 중점·특화자원분야,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 개별 사업의 주요 추진사항을 수립함

조정 체계

- 지식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의 내용이 계획 수립 지침에 상충되는 경우,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경제부에서 시달한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침을 근거로 지역 스스로 창의적 전략에 기초한 지역 맞춤형 계획을 중심으로 수립함
- 실무적으로 지역거점기관인 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진흥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여건, 역량, 수요 등에 기초한 지역 산업 발전전략을 자율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개별사업의 투입재원 규모를 결정함

• 지역산업진흥정책자문단은 지역정책전문가, 산업전문가, 기술전문가, 전담기관 담당자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여 지역별 전체 사업의 종합평가 및 컨설팅·조정을 실시함

- 지역산업진흥정책협의회는 지식경제부, 광역지자체의 지역산업 담당 고위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식경제부와 지자체 간의 계획의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함

조정 절차

•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추진 절차는 크게 기획·조정단계(1~4단계)와 평가·환류단계(5~8단계)로 구분함

• 기획·조정단계에서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은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지역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기획하며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쳐 지역산업진흥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계획에 대한 검토·컨설팅·조정을 실시함

• 환류단계에서는 지역 자체 모니터링 및 개별 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며, 지역산업진흥성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성과 평가를 실시, 차년도 예산지원 조정·인센티브 차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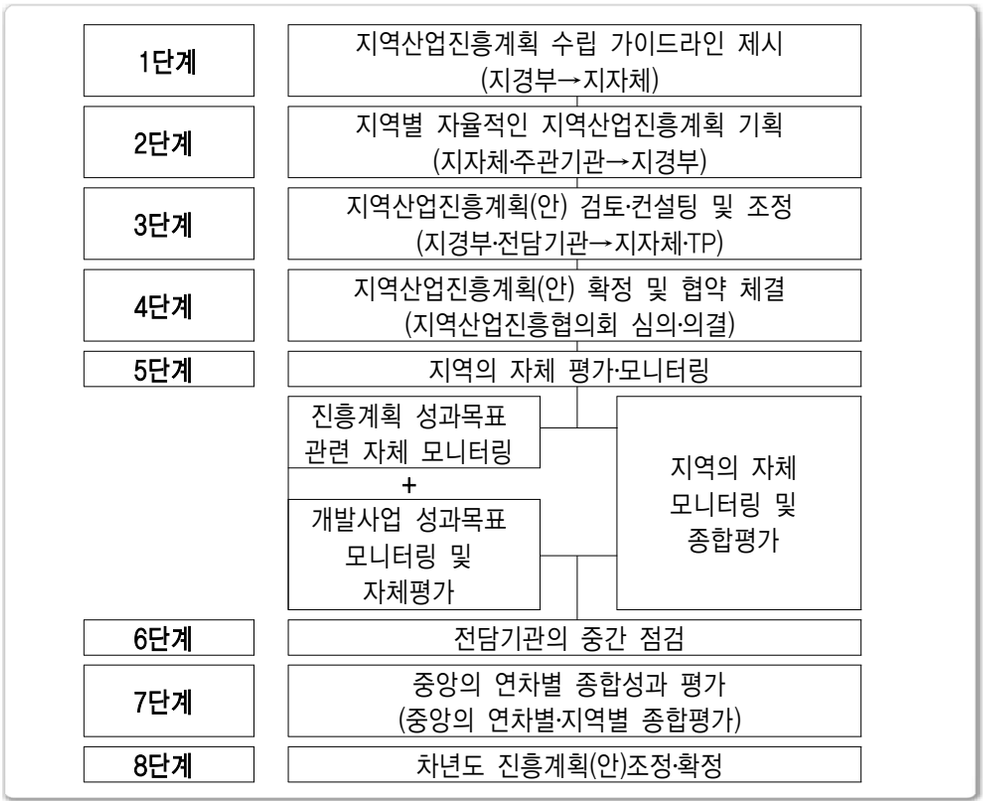

[그림 3.10] 지역산업진흥계획 조정 절차

2) 지역건축기본계획(2009)

조정 개요

•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수립함

-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광역건축기본계획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지만 기초건축기본계획은 해당 시·군·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함

• 국가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게 될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10년 상반기 중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예정임

•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를 위한 생활공간의 조성, 사회요구의 조정 및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 환경의 조성,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문화공간의 조성 등 건축의 기본이념으로 설정함

- 건축의 생활 공간적 공공성 구현,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등 건축의 공공성 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구체적인 실현 수단으로써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정함
-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과 건축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건축의 국재경쟁력 향상, 건축 문화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정함

조정 체계

• 국가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게 될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은 추진 주체에 따라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으로 구분되며 지역계획은 광역건축기본계획과 기초건축기본계획으로 나누어짐

- 광역건축기본계획은 광역시·도의 시장·시도지사가 수립하며기초건축기본계획은 기초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함
- 광역건축기본계획은 시·도 건축정책위원회가 심의·조정하며, 기초건축기본계획은 시·군·구 건축정책위원회가 심의·조정을 담당함

-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함
-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시·도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군·구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함
  - 시·도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지침을 근거로 광역건축기본계획의 내용을 조정함
  -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지침을 근거로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내용을 조정함

조정 절차

- 시·도는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 수립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도 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군·구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의 계획 수립 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건축기본계획 수립시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함
- 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건축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심의·조정함
- 지역건축위원회는 해당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해당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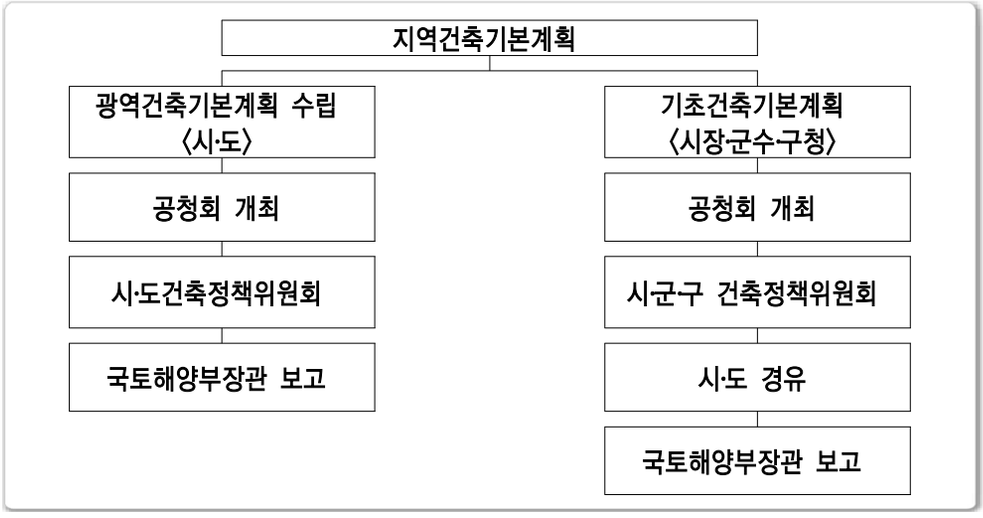

[그림 3.11] 지역건축기본계획 조정 절차

3 시사점

계획수립후 일괄 조정시 발생되는 계획수립주체와 조정주체와의 문제 발생

- 기존 제3차 및 제4차 권역계획 조정사업시 계획수립주체와 조정주체가 상이하여 계획수립주체의 경우 완료된 계획시안에 대해 수요예측, 수급분석, 개발방향 등에 대한 조정으로 이해관계의 충돌 등이 발생함
  - 특히, 조정사업후 조정의견을 계획시안에 반영하여 수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 및 시간 등이 소요되는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함

계획수립기간중 계획지원적 성격의 양방향 의견 수렴 다소 부족

- 계획수립기간중에 조정주체 또는 조정과 관련된 계획수립 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지 못한채, 계획 수립 완료후 조정을 중점으로 다루어 계획수립 주체와 조정 주체간 상호 의견 조정이 다소 부족함
  - 계획수립기간중에 조정주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단기간내에 많은 권역계획 내용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정자의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적·내용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계획수립 기간 및 완료 후 단계별 조정을 통한 원활한 조정 체계 필요

- 계획 수립 완료후 일괄조정에서 계획수립 기간중에 조정주체가 참여하여 계획 수립 과정상의 부문 조정과 광역적 관점에서 총괄 조정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수립하여 원활한 조정 방법의 제시가 필요함
  - 일괄 조정에 따른 문제점 등을 완화하기 위해 계획수립기간부터 계획수립 완료시까지 조정주체가 계획주체와 협의하여 계획수립, 조정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조정주체의 실질적 권한 강화 필요

- 관광진흥법상 권역계획의 조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조정후의 권한 등이 부재하여 조정에 따른 의견을 각 권역에서 수용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함
  - 유사 조정 사례에서는 조정 또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실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정 또는 심의에 따른 권한을 동시에 제시하여 조정의 정책적 수단을 강화시키고 있음

Ⅳ 권역계획의 위상

제1절 권역계획의 위상과 성격
제2절 제5차 권역계획의 특징

제1절 권역계획의 위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상 법정계획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수립 주체가 되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임. 그러나, 초기 권역계획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위상과 역할이 정책적, 환경적, 사회적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1 권역계획의 위상

관광개발계획의 위계상 중기 계획

- 관광진흥법상 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권역계획은 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상 권역의 관광개발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관광개발계획 위계상 중기 계획임

권역내 관광개발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간 계획

-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권역의 관광개발방향 등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구체적인 전략 및 사업계획 등을 제시하여 향후 권역내에서 추진되는 5년 내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간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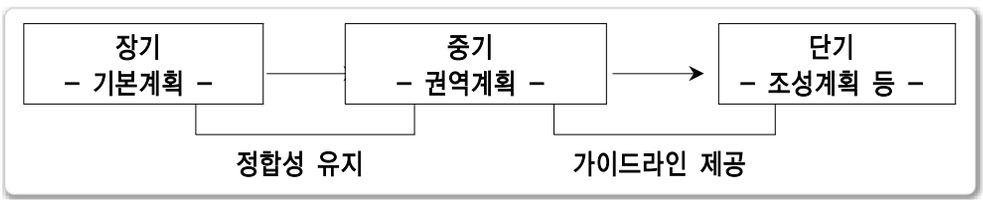

[그림 4.1] 권역계획의 위계

국토 계획 관광부문의 권역내 실현 계획

- 국토계획법 등에 의한 중장기 전국개발계획은 부문으로 문화·관광이 포함되어 수립되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관광개발기본계획이외에 권역 또는 지역단위의 개발계획에 대한 상위 계획임
  - 권역 또는 지역내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문화관광자원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콘텐츠융합형 개발 등에 대한 방향과 개발구상적 내용을 제시함

- 이외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유원지, 체육시설·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키장, 골프장,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관광자원 및 시설 개발에 관한 관광자원화 사업들의 향후 5년간의 개발을 제시하는 계획임
- 특히, 권역내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으로서 실현가능성과 실천성을 제고시키는 계획임

• 국토개발에 대한 기본방향을 수렴하여 실행수단을 강화시키는 시·도 단위 종합계획의 관광부문 구체화 계획으로 기본방향을 유지하고, 5년 단위의 중기적 성격을 고려하여 보완함
- 타 유사 관광개발 등과 관련된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타 법에 의한 실현수단들을 권역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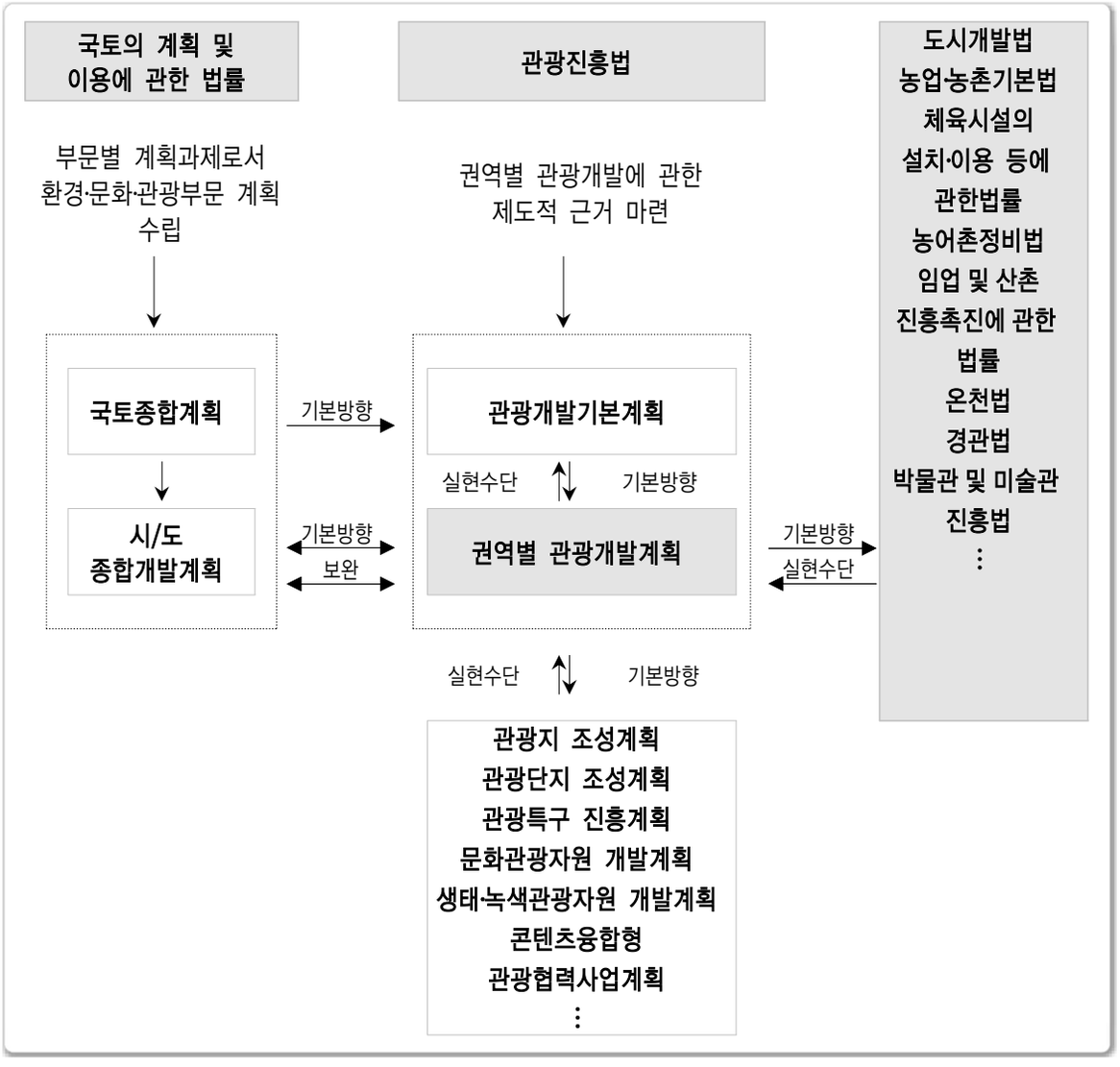

[그림 4.2] 권역계획과 유사계획과의 관계

2 권역계획의 지위와 성격

1) 권역계획의 지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법정 계획

- 권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권역(시·도)이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권역내 관광개발방향 등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임
- 기본계획을 권역차원에서 구체화 계획으로 기본계획의 개발방향을 수렴하면서, 권역내 여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수립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

관광권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종합 계획

- 권역계획은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 국가 장기 관광개발에 관한 기본방향 등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권역내 관광개발방향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을 수립하는 계획임
- 권역계획은 관광(단)지, 관광특구 및 생태·문화·녹색 관광자원 등 개발 등 관광개발사업과 관광상품 및 코스, 관광축제 및 이벤트, 관광홍보 및 마케팅 관광진흥사업을 포괄하여 지역관광발전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지역발전의 도모를 위한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전략적 종합계획임

권역내 5년 단위의 중기적 실행 계획

- 권역계획은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도시, 농산어촌 등 관광자원개발 및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관광(단)지 조성계획, 관광특구 활성화계획,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계획 등과 유사 다른 법률에 의한 관광개발계획 수립의 전략계획으로서 지위를 갖음
- 권역의 관광여건과 관광잠재력을 최대한 반영하여 권역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서 관광권역 단위에서는 당해 지역의 5년간 관광개발에 대한 중기적 실행 계획임

권역내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계획

- 권역내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 진흥사업,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유사 타 부처 관광개발사업 등 통합적 측면에서 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평가계획임

2) 권역계획의 성격

권역내 관광개발과 관련된 실천적 구체화 계획

- 기본계획이 선언적이고 국토관광개발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권역계획은 보다 실천적이며 구체화된 계획임
  - 권역계획은 권역내 관광개발 대상을 표현하는 수법으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획일적·형식적 계획 수립을 지양함

권역내 관광개발사업의 자가 모니터링 계획

- 권역내 다차원적으로 추진되는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자가 모니터링(Self monitoring)으로 중복사업, 비현실적 사업 등에 대한 규제와 다양한 관광개발단위를 설정하는 계획임
  - 권역계획의 주요 실행수단은 계획 실현을 위한 규제 수단(중복사업, 비현실 사업 등), 관광 개발을 위한 유도 수단(관광(단)지 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임

관광개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총괄하는 중기적 종합계획

- 권역내 하드웨어적 관광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휴먼웨어적 관광진흥사업을 총괄하는 중기적 종합계획임
  - 권역계획은 하드웨어적 관광개발사업을 발굴 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한 관광진흥사업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포괄함

[그림 4.3] 권역계획의 지위와 성격

제2절 제5차 권역계획의 특징

제5차 권역계획의 특징은 기존 권역계획의 수립과 차별적으로 권역의 종합계획으로서의 특징 등을 반영하여 권역 계획 내용상 계획 수립 체계상의 특징을 제시함. 권역 계획 내용상은 권역계획의 위상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며, 수립 체계는 기존 조정 방안 등의 개선점 등을 보완하여 제시함

1 계획 내용

계획 및 사업성과의 평가 체계 강화

- 제4차 권역계획 사업 기간 중 투입을 기준으로 한 평가(output-oriented)는 지양하고,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outcome-oriented)하여 수립방향을 설정함
  -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 문화·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각종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 우선순위 등을 제시하도록 함

사업 조정을 통한 실현가능성 제고

- 기존 사업은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의 유형별 분석에 따른 조정과 사업추진 및 성과에 따른 분석을 근거로 자가 모니터링(self-monitoring)후 자발적 수립함
-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별 세부계획이외에 개략적인 사전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 추진여부를 결정함

지역관광 종합계획적 성격 강조

- 관광진흥법상 권역계획내용중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확대·적용하여 관광개발사업과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연계·협력형 사업 발굴 및 활성화 권장

- 권역간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권역계획내 분야별로 지역간(시·도간, 시·군간) 연계·협력형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초광역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의 국토공간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권역내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이외에 권역간 사업 발굴을 추진함

2 계획 수립 체계

계획수립과 조정 동시 추진 체계

• 기존 선계획 수립 후조정 절차를 지양하고,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을 운영하여 계획수립 지원과 조정 의견을 반영함

- 시·도의 제5차 권역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계획시안 수립 지원과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권역계획 수립반 (가칭)"을 운영하여 계획수립 기간중 계획내용에 대한 수립과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함

계획수립 지원 체계 확보

•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별도의 수립 체계를 확보하여 계획 내용의 일방적인 조정이외에 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 자문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지원 체계를 확보함

- 계획 시안 수립이후 계획내용 등에 대한 항목별 조정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방식과 차별적으로 계획의 수립기간중 전문가 등을 통한 계획 수립 방식,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동시에 수행하는 체계를 확보함

적정 연구수행 체계 확보

• 연구의 합리적 예산 및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주체가 충분한 관광여건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권역의 관점에서 중장기적 관광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조정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이외 부문조정과 총괄조정 등 단계별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정기간에 조정의견과 계획수립 주체의 의견을 상호 검토할 수 있는 수단(권역계획 연구협의회)을 확보하여 운영토록 함

	제4차 권역계획	제5차 권역계획
계획내용	**기존 계획의 평가체계 강화**	**계획 및 사업성과 평가 중심**
	– 제3차 권역계획 평가 – 기존 관광(단)지 사업 평가	– 기존 계획 및 사업 평가체계 강화 · 제4차 권역계획 평가 · 기존 관광(단)지, 관광특구, 문화·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 평가 · 유사 타 부처 사업 평가
	계획 집행 실현성 제고	**사업 조정을 통한 실현가능성 제고**
	– 관광(단)지 추진 불가능 사업 배제 – 지자체 가용예산 분석	– 기존 사업 평가를 통한 조정 · 권역내 유사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강화 · 신규 사업의 사전타당성 분석
	관광개발 수단 다각화	**지역관광 종합계획 성격 강조**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 중기적 관광종합계획 성격 · 관광개발사업(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광자원개발 등) · 관광진흥사업
	지역관광혁신체계 구축 방안 제시	**연계·협력형 사업 추진 강조**
	– 지역 관광개발주체 역량 강화 – 지역 관광개발 네트워크 방안	– 연계·협력형 사업 발굴 제시 강조 · 권역(시·도)간 연계·협력형 사업 · 시·군간 연계·협력형 사업 – 연계·협력형 사업추진 체계 방안
계획 수립체계	**계획 사전검토체계 확립**	**계획수립 및 조정 동시 체계**
	– 문화부 조정전 최종시안 전문기관 검토	– 문화부 조정전 최종시안 조정 검토 · 계획수립 기간중 단계 조정 · 계획수립 완료후 총괄 조정
	개방적 연구수립체계 확립	**계획수립지원 체계 확보**
	– 다양한 전문가 참여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계획수립지원을 위한 수립체계 확보 · 전문가 참여(조정 및 지원 기능) · 계획 수립주체간 계획내용 협의
	적정 연구수행체계 확보	**좌 동**
	– 합리적 연구예산 및 기간 확보	좌 동

[그림 4.4] 제5차 권역계획의 특징

V 제5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

제1절 권역계획의 수립 지침 개요
제2절 권역계획의 수립 범위
제3절 권역계획의 수립 체계
제4절 부문별 세부 작성 요령

제1절 권역계획의 수립 지침 개요

권역계획의 수립 지침 목적과 의의, 수립 범위, 지침의 구성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권역계획 수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달성 및 권역계획으로서의 위상 반영 등 지침의 개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함

1 지침의 목적과 의의

체계적인 권역계획 수립 지원

-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 및 제51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권역계획 수립시 해당 지침을 참조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 계획 수립에 대한 제한적이고 규제적 지침의 성격이 아닌 계획 수립주체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립되는 계획으로서 체계적이고 원활한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적 성격이 강함

권역계획상 계획내용의 항목별 제시

- 권역계획은 권역내 관광여건과 동향분석, 관광수요와 공급분석,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관광(단)지 조성·정비·보완 및 실적평가, 관광지 연계, 관광사업 추진, 환경보전, 기타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 등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둠

권역계획 수립의 목적 확립

- 권역계획은 권역의 관광개발 기본방향과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관광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 증대,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관광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발전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권역계획 자체가 행정적으로 수립되는 계획(Paper Plan)이 아닌, 5년간 권역내의 실제 관광개발에 대한 구체성을 체계적, 과학적 및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기 위함임

2 계획수립 법적 근거

관광진흥법 제49조 (관광개발기본계획)

- 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광진흥법 제51조 (권역별 관광계획)

- 법 제51조 (권역계획) ① 권역계획(권역계획)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함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③ 시·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함

  ④ 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갈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영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3 지침의 구성

총5장 제16절로 구성

• 본 지침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제1절~4절, 제2장 제1절~5절, 제3장 제1절~3절, 제4장 제1절~4절, 제5장으로 구성됨

• 제1장에서는 본 지침의 목적 및 의의, 지위와 성격, 법적 근거, 구성내용 등을 제시함

• 제2장에서는 권역계획의 수립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고, 계획 수립 목표연도와 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계획 작성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계획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

• 제3장에서는 권역계획 수립시 효율적인 수립 체계와 수립 절차, 권역계획 수립 일정과 작성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제4장에서는 권역계획의 기본방향과 부문별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을 제기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함

• 제5장에서는 본 지침의 시행일, 수립기간, 계획 수립 예산, 권역계획 수립반 협의 등의 내용을 제시함

[그림 5.1] 제5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의 구성

제2절 권역계획의 수립 범위

권역계획내용상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지역 및 수립권자, 목표연도, 수립 내용, 기본원칙 및 유의사항 등을 제시함.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각각 제시하여 계획 수립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일부 수립 방향이 필요한 경우 첨가하여 제시함

1 계획 수립 대상지역과 수립권자

제2차 기본계획의 권역구분을 근간으로 15개 광역시·도

- 권역계획의 수립대상지역은 법 제49조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관광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권역간 관광자원에 대한 공동 또는 협력사업의 있는 경우 인접 권역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음

〈 관광권역의 설정 〉

- 제2차 기본계획(2002~2011)에서의 관광권역은 16개 광역시·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 제5차 권역계획의 관광권역은 제3차 기본계획 수립전으로 구체적인 관광권역의 설정이 수립되기 전까지 이전 계획을 근간으로 15개 광역시·도별(제주도 제외) 권역계획을 수립함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확정

- 권역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관계되는 시·도지사와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함
- 권역계획의 수립주체는 법 제49조에 의거 관광권역을 관할하는 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임
- 관광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2 계획 수립 목표 연도와 수립 내용

권역계획 사업기간 5년

• 권역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함

〈 제5차 권역계획의 목표연도 〉

■ 제2차 기본계획(2002~2011)에서의 관광권역은 16개 광역시·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 제5차 권역계획의 관광권역은 제3차 기본계획 수립전으로 구체적인 관광권역의 설정이 수립되기 전까지 이전 계획을 근간으로 15개 광역시·도별(제주도 제외) 권역계획을 수립함

• 5개년 계획 기간내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당해 기간에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도 포함함

〈 권역계획내 5년 이상 또는 일부 기간 포함 사업 〉

■ 권역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의 경우 또는 계획 기간내 일부 기간만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는 제5차 권역계획의 계획 기간내 사업내용 등을 별도로 제시함

관광개발 여건, 관광개발 사업, 관광진흥 사업, 집행 계획 등 4개 부문

• 권역계획의 수립 내용은 법 제49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광개발 여건 분석, 관광개발 사업 계획, 관광진흥 사업 계획, 관광사업 집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1) 관광개발 여건 분석

①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

② 관광수급 분석

③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2) 관광개발 사업 계획

① 관광개발 목표 및 전략

② 관광개발 공간체계 구상

③ 전략별 관광개발계획

④ 관광(단)지 개발계획

(3) 관광진흥 사업 계획

① 관광상품 및 코스 계획

② 관광축제 및 이벤트 계획

③ 관광홍보 및 마케팅 계획

④ 관광안내 정보 체계 구축 계획

(4) 관광사업 집행 계획

① 사업 추진 체계

②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③ 개발효과 분석

- 권역계획내 사업범위는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광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업외에 도시 또는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정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함

3 계획수립의 기본 원칙

계획내용의 종합성 제고로 총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권역의 대내외 관광개발환경 변화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함
- 계획내용은 관광개발 여건 분석을 토대로 권역에 적합한 강점·약점·기회·위협요인 등 종합분석을 통해 관광개발 목표 및 전략을 현실에 기반을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수립함
- 개발사업 계획은 권역내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문화·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 타 부처 관광개발사업 등 권역내 관광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함
- 진흥사업 계획은 관광개발 사업 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진흥사업, 권역의 관광진흥을 위한 전략사업 등을 고려하여 수립함
- 사업집행 계획은 중앙정부간, 지방정부간, 민관 등 개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하여 주체와 기관을 열거하고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함

계획의 자율적 수립을 통한 독창성과 다양성, 유연성을 제고해야 함

- '사전자율 사후책임'의 원칙하에 정해진 하나의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독창성이 확보되고, 계획내용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
- 권역계획은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해야 함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해야 함

- 권역계획은 계획의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권역내 관광개발 사업계획 및 관광(단)지 지정 등과의 연계,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 조직 및 절차, 예산확보 및 재원조달, 주민참여계획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 권역계획내 개별 사업들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과 연동하여 실제 집행될 수 있는 실현성을 고려함

계획내용의 단계별 추진을 제시해야 함

- 계획내용의 수준과 상세정도는 단계별로 차등화 할 수 있으며, 계획기간내 사업추진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계획에 반영함

기존 계획 및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행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기존 계획의 평가를 위해 계획 수립 절차(방법)의 적정성, 계획내용의 적합성 및 적절성, 추진실적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기존 사업의 평가를 위해 사업별(관광(단)지, 관광특구, 문화·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 등)로 분류하여 추진 실적(예산 확보, 집행 실적 등), 관광객수 추이, 지역경제 효과 등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원안 추진, 계획 보완(확대, 축소, 통합 등), 추진 취소 등 사업추진여부를 유형화함
- 사업별 평가를 통해 유형화된 사업추진여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함
- 신규 사업은 유사 중복성, 실현가능성 등 사업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객관적 평가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이해관계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

- 권역계획의 개발방향과 전략, 관광개발 사업 계획, 관광진흥 사업 계획, 관광사업 집행 계획 등 계획의 전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계획 수립 절차상 공청회, 정책토론회, 설문조사(관광객, 지역주민),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4 계획작성시 유의 사항

권역계획의 작성은 다음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2-3-1에 따른 관광개발 여건 분석, 관광개발 사업 계획, 관광진흥 사업 계획, 관광사업 집행 계획의 누락이 없을 것
- 기본계획의 권역의 관광개발에 대한 기본방향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미 수립된 국가·지역계획과 일관성·정합성을 유지할 것
-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것
  - 자료출처의 명시, 통계자료는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며, 추세분석에 있어서는 적절한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
- 적절한 계획기법을 적용하고, 추진전략이나 근거 및 계획내용을 설명하는 각종 현황도, 기본계획도를 필요시는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계획의 논리와 합리성이 확보되고, 계획내용이 양적으로 적정할 것

관광개발 여건 분석

- 권역내의 자원 및 현황분석 이외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변화되는 미래 환경을 전망하여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분석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 분석내용은 타 권역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권역 관광개발방향 및 목표 등을 설정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일반적 분석이외에 지역 관광경쟁력 분석 등 구체적 분석요소를 포함시키도록 함
- 관광수급분석은 권역내의 관광개발의 적정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수요예측에 따른 공급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 계획에서 제시되도록 함

- 종합분석은 다양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분석도구를 사용하며, 계획과제는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의 내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계획의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함

관광개발 사업 계획

- 권역계획의 목표와 전략은 관광사업계획과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하고, 사업계획은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환류(feedback)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 계획이 되도록 함
- 해당 권역의 관광공간 구조를 설정하고 소권역 설정시 기준 및 고려요소를 객관적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공간간 차별화 및 연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총체적 관광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관광진흥 사업 계획

- 관광개발 사업 계획이 향후 5년 동안 추진시 필요한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제시되어야 함
- 관광진흥 사업의 범위는 권역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하도록 설정하며, 권역의 특성에 따라 특정분야를 세분화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음

관광사업 집행 계획

- 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실행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관광개발사업, 관광진흥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라 분류후 가용재원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도록 함
- 관광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권역내 추진 사업들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계획기간중 추진가능한 현실성 높은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함

성과물의 작성

- 권역계획 작성시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에 혼란이 없도록 계획내용과 용어는 관련법에 근거한 정의를 기반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명료하여야 함
- 권역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어야 하므로 계획내용이 포함된 계획서와 자료집을 구분하고, 자료집에는 의견수렴 절차와 반영정도 등을 제시하여야 함

제3절 권역계획의 수립 체계

권역계획의 수립 절차는 15개 시도에서 개별 계획 주체에 의해 수립되는 특수성과 향후 권역계획 조정 등의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수립 절차, 수립 일정, 수립 방법 등을 제시함. 이러한 수립 절차의 사전 제시는 계획 수립주체의 원활한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데 유용함

1 수립 절차

법적 절차에 따라 작성, 조정후 확정·공고

- 권역계획은 법 제51조(권역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작성, 조정한 후 확정·공고하여야 함
- 권역계획의 법적 수립 절차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권역계획시안을 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공고하여야 함
- 확정된 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장과의 협의를 갈음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영 제43조에 따라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함
  - 1-3-1에 따른 권역계획의 1. 관광 여건과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3-1에 따른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4의 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변경 사항

    가. 관광자원의 보호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권역계획상의 관광지, 관광단지 면적의 축소

    다. 권역계획상의 관광지, 관광단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확대

라. 지형여건 등에 따른 관광, 관광단지 등의 구역 조정(그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이나 명칭 변경

• 권역계획의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립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지침을 시달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권역별 계획을 취합하며, 조정 방법 및 절차는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권역계획(안)의 계획체계 및 내용 등을 심사하여 시·도와 협의·조정하고, 시·도지사는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작성함
  - 시·도지사는 협의·조정결과가 반영된 최종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권역계획을 확정하고 공고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권역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지원단 또는 원활한 계획 조정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수립 일정

수립기간, 조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고려한 일정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권역계획 수립기간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및 조정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도록 함

• 권역계획 수립기간은 권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연도를 계획기간 2년 전으로 설정하며 계획 수립 및 조정,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함

〈 제5차 권역계획의 수립연도 〉

■ 제2차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로 제3차 권역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4차 권역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임
■ 권역계획 수립지침은 제4차의 경우 2005년에 시달되었으며, 제5차의 경우 2010년에 시달하여 2011년 내에 계획(안)을 확정함

• 권역계획을 수립하는 시·도는 권역계획의 지위와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 규모를 계획 수립연도 이전에 확정·반영하여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도는 권역계획 수립연도 이전에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및 계획 체계 등의 구성을 완료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에서 수립한 권역계획을 취합하여 계획수립연도 익년도까지 협의·조정하고, 시·도는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기간 이전에 확정·공고하도록 함

구 분	추진 일정	계획 일정	추진 사항
권역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추진	2009. 3월 ~5월	–	**〈문화부〉** – 계획수립 예산반영 및 행정추진 지침 송부 **〈시·도〉** – 예산 반영 추진
계획수립 지침의 작성·송부	2010. 2~3	•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수립 지침 및 조정 방안 연구	**〈문화부〉** – 계획수립 지침 송부 **〈시·도〉** –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비
계획(안) 수립	2010. 3/4 ~ 2011. 2 (12개월)	• 권역계획(안) 작성완료 (약 11~12개월)	**〈시·도〉** – 계획(안) 수립
계획(안) 부문 조정	2010. 8 ~ 2011. 2 (7개월)	• 권역계획(안) 부문조정 (약 7개월)	**〈문화부〉** – 계획(안) 조정 (부문)
계획(안) 총괄 조정	2011. 2 ~ 2011. 4 (2개월)	• 권역계획(안) 총괄조정 (약 2개월) • 권역계획(안) 조정완료	**〈문화부〉** – 계획(안) 조정 (총괄) **〈시·도〉** – 협의·조정의견 반영 (수정·보완)
관계부처 협의	2011. 6 ~ 8 (3개월)	• 관계행정기관 협의 (환경부 등)	**〈관계행정기관〉** – 계획(안) 의견 제시 **〈시·도〉** – 의견 반영
최종안 확정·공고	2011. 9 ~ 10 (2개월)	• 최종안 확정·공고	**〈시·도〉** – 최종안 공고
권역계획 발효	2012. 1	• 제5차 권역계획 발효	

[그림 5.2] 제5차 권역계획 수립 절차 및 일정

3 수립 방법

권역계획 수립반 구성 및 운영

- 권역별로 계획수립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 T/F로서 「권역계획수립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T/F는 시·도 및 시·군 관계자를 중심으로 계획수립수행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 「권역계획수립반」은 권역계획 최종안 공고전까지 운영하며, 구성된 인원은 권역계획(안) 수립, 권역계획(안) 협의·조정, 관계행정기관 협의, 최종안 확정·공고의 수립 절차상 일련의 과정에 모두 참여하여 계획수립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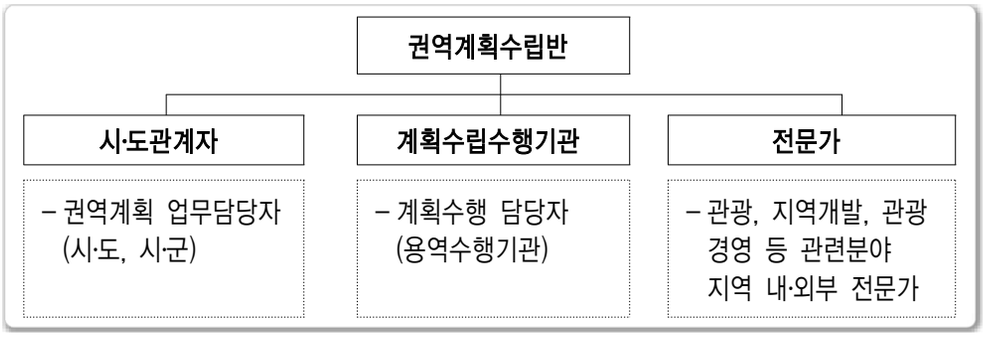

[그림 5.3] 제5차 권역계획 수립반 구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 관광개발 목표 및 전략, 관광개발 기본 구상, 관광개발 사업 계획, 관광진흥 사업 계획, 관광사업 집행 계획 등 계획과정의 전 단계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지역구성원과 지역 내·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함
- 권역계획 수립기간중 공청회, 간담회, 자문회의, 정책토론회, 설문조사(관광객, 지역주민, 투자자 등) 등을 개최하여야 함
- 권역계획은 지역여건 및 특성,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발굴하며, 권역간 협력사업 선정 및 사업별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재원별 투자계획을 시·도가 계획수립 주체가 되어 수립하도록 함
- 권역계획의 수립은 법정 계획내용을 일반적 계획내용에 따라 제시하여 원활한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함

〈표 5.1〉 제5차 권역계획 주요 내용

법정 계획 내용	제5차 권역계획 내용
–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 – 관광수급 분석 –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관광개발 목표 및 전략 – 관광개발 사업 계획중 관광개발 공간체계 구상 /전략별 관광개발계획 – 관광진흥 사업 계획
–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관광개발 사업 계획 중 관광(단)지 개발계획
–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사업추진체계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개발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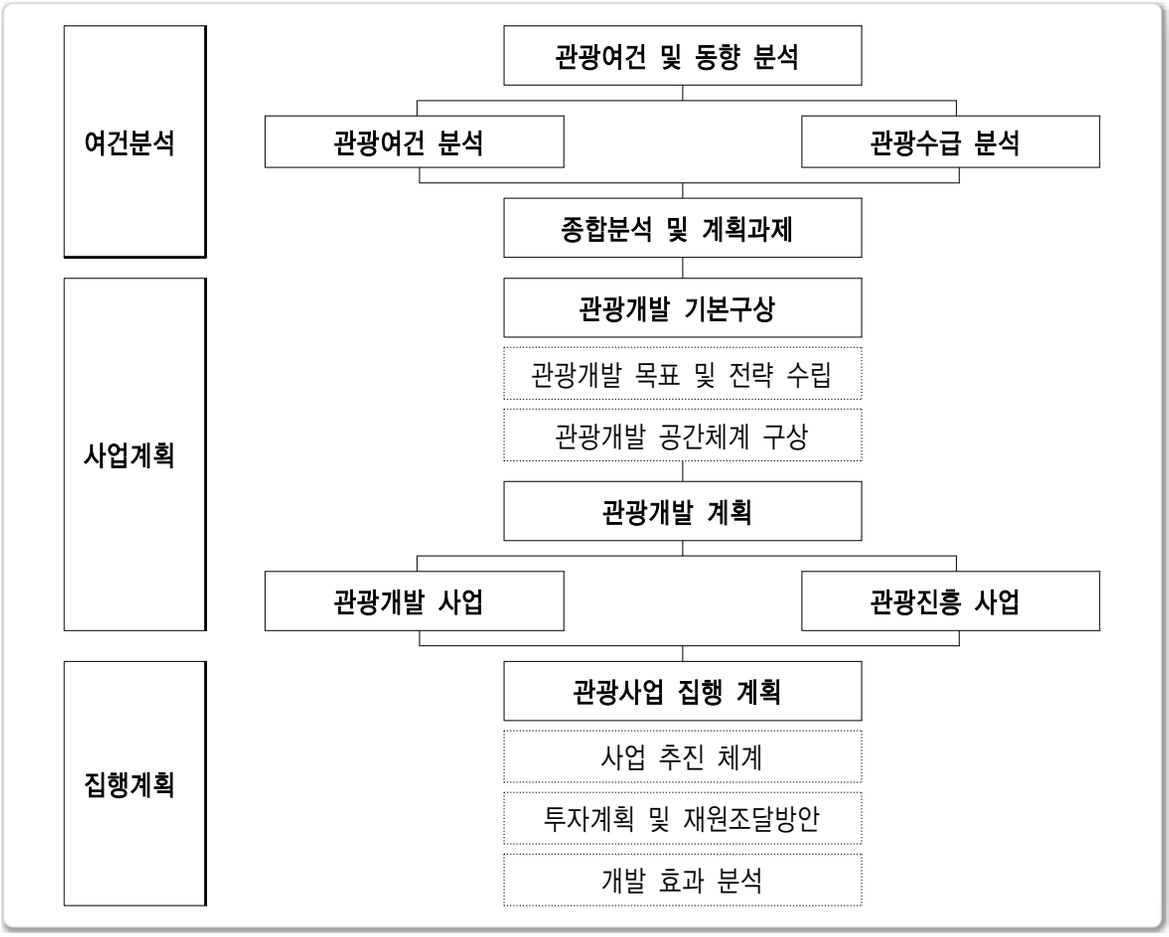

[그림 5.4] 제5차 권역계획 작성 절차

〈 제5차 권역계획의 목차(안) 〉

제1절 계획의 개요

1. 계획 수립의 개요

1) 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1) 배경과 목적
   (2) 수립 범위
2) 계획 수립의 추진체계와 절차
   (1) 계획 수립 추진체계
   (2) 추진절차 및 경과

제2절 관광개발 여건 분석

2.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

1) 관광개발 환경 분석
   (1) 일반환경 변화 및 전망
   (2) 관광환경 변화 및 전망
2) 지역개발 여건 분석
   (1) 지역현황 분석
   (2) 관광현황 분석
   (3) 집행현황 분석
3) 제4차 권역계획 평가
   (1) 계획수립 평가
   (2) 계획내용 평가
   (3) 추진실적 평가
   (4) 종합평가 및 개선방향
4) 관광수급 분석
   (1) 관광수요 예측
   (2) 관광수급 분석
5)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1) 종합분석
   (2) 계획과제 및 잠재력 분석

제3절 관광개발 사업 계획

3. 관광개발 기본구상

1) 개발비전 및 목표
2) 추진 전략
3) 관광개발 공간체계
   (1) 공간체계 구상
   (2) 공간별 개발 방향

4. 관광개발 사업 계획

1) 기존 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1)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

(2) 관광특구 평가
(3) 유사 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
2) 전략별 관광개발 계획**
(1)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분야
(2) 관광지 연계·협력 분야
(3) 환경보전 분야
3) 관광(단)지 개발 계획*
(1) 기존 관광(단)지 평가 및 정비·보완계획
가. 기존 관광(단)지 추진실적 평가
나. 기존 관광(단)지 정비·보완 계획
(2) 신규 관광(단)지 개발계획
가. 신규 관광(단)지 선정
나. 신규 관광(단)지 개발계획
4)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1) 기존 관광개발사업별 검토 결과 및 저감방안
(2) 신규 관광개발사업별 검토 결과 및 저감방안

5. 관광진흥 사업 계획**
1) 관광상품 및 코스 계획 분야
2) 관광축제 및 이벤트 계획 분야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계획 분야
4) 관광안내정보체계 구축 계획 분야

제4절 관광사업 집행 계획
6. 관광사업 집행 계획
1)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 추진 방식
(2) 사업 추진 일정
(3) 지원 체계 정비
2)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1) 투자계획
(2) 재원조달 방안
3) 개발효과 분석
(1) 경제적 파급효과
(2)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

주1) *표시된 항목은 권역내 해당되는 자원 또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하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주2) **표시된 항목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권역의 특성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주체가 자율적으로 항목을 추가/수정/삭제 등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주3) 표시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제시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포함시키되, 계획수립주체가 필요시 자율적으로 항목을 추가/수정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제4절 부문별 세부 작성 요령

권역계획의 부문별 세부 작성 요령은 계획의 개요, 관광개발 여건 분석, 관광개발 사업 계획과 진흥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 집행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 절차(process)별 세부 작성 요령을 제시하고, 필요시 예시를 제시함

1 계획의 개요

1) 계획 수립의 개요

○ 계획 수립의 개요는 권역별로 계획 수립에 대한 대강을 제시하는 도입부분으로서 계획 수립의 기초적인 작업에 해당한다.
○ 계획 수립의 개요는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계획의 범위, 계획의 수립체계와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배경과 목적

- 수립배경은 계획수립의 상황적 맥락과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되, 기본계획의 권역차원에서의 구체화, 권역특성에 부합하는 관광개발방향 및 전략 수립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 수립배경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향후 5년간 권역관광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제시

수립 범위

- 계획 수립의 범위는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기술

〈 예시 : 계획 수립의 범위 〉

■ 시간적 범위 : 2012년 ~ 2016년 (5년)
■ 공간적 범위 : 00시/도 (2010년 현재 해당 광역시·도의 행정구역)
■ 내용적 범위 : 관광진흥법 제49조의 사항을 포함하여 동지침 2-3-1에 따라 보완·조정하여 작성

(2) 계획 수립의 추진체계와 절차

계획 수립 추진 체계

- 계획 수립 추진체계는 권역계획 수립에 참여한 주체와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는 것으로 동지침 3-3-1에 따라 권역계획수립반을 포함한 계획 수립의 추진체계와 역할분담을 모식도를 통해 제시

〈 예시 : 계획 수립의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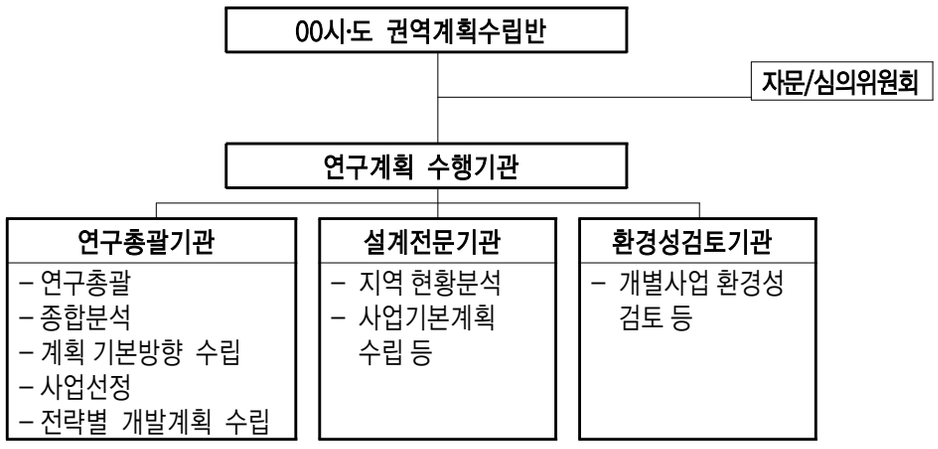

추진절차 및 경과

- 계획 수립 절차와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한 절차 등을 시간대 순으로 기술하되, 공청회, 정책토론회, 설문조사(관광객, 지역주민),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전체 수행과정을 계획과정도로 시술

〈 예시 : 계획 수립의 절차 〉

날 짜	주 요 행 사	주 요 내 용
0000년 0월 0일	00시 권역계획수립반 구성	공무원, 연구수행기관, 전문가 등
0000년 0월 0일	00권 관광개발계획 토론회	전문가, 권역계획수립반 등
0000년 0월 0일	00권 관광개발계획 설문조사	관광객, 지역주민 등
0000년 0월 0일	· · ·	
0000년 0월 0일	00권 관광개발계획 설명회 개최	지역주민 등에게 계획내용 설명
0000년 0월 0일	· · ·	

2 관광개발 여건 분석

2)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

○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은 권역 관광개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관광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영향요인, 권역관광자원 및 시설 현황, 관련계획·제도의 검토와 잠재력 등을 분석하는 것임

○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은 관광개발 환경 분석, 지역개발 여건 분석, 제4차 권역계획 평가, 관광수급 분석,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등의 목차로 구성함

(1) 관광개발 환경 분석

〈 제5차 권역계획 수립시 관광개발 환경 분석 필요성 〉

■ 권역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권역관광개발에 대한 기본방향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되므로, 기본계획 수립후 권역별 방향에 적합한 구체화된 개발방향을 제시해야 함

■ 제5차 권역계획의 경우 제3차 기본계획과 동기간에 수립되어 제5차 권역계획에서 권역에 대한 향후 10년의 개발방향을 구상하고, 권역계획에는 구체화된 5년의 개발방향 등을 제시하도록 함

■ 기존 권역계획에서 권역내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의 여건과 동향을 분석하였으나, 제5차 권역계획에서는 권역외의 거시적인 환경분석 및 전망 등이 필요함

일반환경 변화와 전망

- 동 지침에서 제시된 권역계획의 시대적 변화 전망을 토대로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내외 제반 환경을 중심으로 권역 관광개발과 관련된 현안문제 등을 파악
-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제반 환경의 분석은 단순한 현상적 나열보다는 현상 이면의 영향요인과 메카니즘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정리

관광환경 변화 및 전망

- 일반환경 변화와 전망의 부문별 제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문화관광부문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국내외 관광부문의 변화를 파악하여 잠재력 발굴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관광환경의 분석은 단순한 현상적 나열보다는 현상 이면의 영향요인과 메카니즘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정리

(2) 지역개발 여건 분석

지역현황 분석

- 해당 지역의 자연적 여건, 인문·사회적 특성, 지역 보유 관광자원 및 시설, 경제·문화·사회적 특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상을 나열하기 보다는 전국, 권역 등 계층적 분석단위를 설정하여 제시
- 권역의 자연지리적 입지, 인문사회적 여건, 경제적 특성,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공간구조적 특성 등 권역내 관광개발과 관련된 제약요인, 발전 잠재력을 파악
- 인접 권역의 비교우위요소 등 권역의 관광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 발굴을 중점으로 하며, 가능한 관련 지표나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리
- 각각의 분석항목은 권역내 행정단위로 분석하되, 전국대비, 권역내 지역간, 연도별 증감 추이 등을 분석하여 정리
- 지역현황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지역현황 및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을 사용하여 도면화하여 제시

〈 예시 : 지역현황 분석 (항목) 〉

구 분	세부 내용
입지적 여건	위치, 면적, 접근체계, 행정구역/면적 등
자연현황	지형 및 지세, 기후, 수문 및 수계, 댐, 산림, 하천, 해역 등
인문현황	인구규모, 인구구성, 인구구조, 인구증감 등
지역경제	지역총생산, 고용지표, 산업구조 등
환경현황	사전환경성 검토에 요구되는 지역·지구·구역 등의 현황 (자연환경보전 관련지역, 환경기준, 녹지자연도, 주요 보호대상지역 및 시설물 등)
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망, 생활권, 문화권 등

관광현황 분석

- 권역내의 관광자원 현황, 관광개발(관광시설, 관광상품 등) 현황, 관광시장(관광객, 관광행태 등) 현황 등을 분석하여 권역 관광개발의 제약요인 및 문제점, 발전 잠재력 등의 영향요인을 제시

- 관광개발은 관광시설(관광숙박시설, 컨벤션시설, 관광객이용시설, 관광편의시설 등)과 관광상품(여행상품, 축제·이벤트 등)을 중심으로 정리·분석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에 각 부처에서 개발·관리하여 관광객의 이용에 활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유형(유원지, 주제공원, 마을, 거리, 길, 공원, 어항, 산림휴양, 문화재 등) 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제시
- 각각의 분석은 가급적 권역내 시·군 단위로 집계하여 권역 단위로 파악하되, 필요시 전국 또는 인접 권역과의 비교 및 추세를 검토
- 관광현황에 대한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인터뷰조사,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고, 권역 관광현황 및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적을 사용하여 각종 자원분포도, 시설분포도 등을 도면화하여 제시

〈 예시 : 관광현황 분석 (항목) 〉

구 분	세부 내용
관광자원 현황	자연관광자원, 인문관광자원 등
관광개발 현황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광시설, 관광상품, 관광인력 등
관광시장 현황	관광객수, 관광행태(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등

집행현황 분석

- 관광개발과 관련된 계획(중앙/지방정부 등), 법규, 제도, 재원, 조직 등을 검토하여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집행현황은 관련계획 분석, 관련법규 분석, 관련제도 분석, 관련재원 분석, 관련조직 분석 등의 항목을 포함
- 관련계획은 전국, 광역, 시·군 등 계획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외에 타 부처의 주요 관련계획 등을 분석하여 제시
- 관련계획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광역권 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등과 당해 권역의 관광개발과 관련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수립 계획을 포함

- 관련법규는 관광개발진흥 관련법, 환경보전 관련법, 행·재정지원 관련법 등 법규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
- 관련제도는 지역관광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신정부 지역발전정책 등을 분석하여 관광개발의 절차와 수법, 기회 및 제약요인 등을 파악
- 관련재원은 관광개발에 투자되어온 각종 재원(국비, 지방비, 각종 기금, 민자)등에 대한 유형, 규모 및 추세 등을 분석하여 집행계획 수립의 실현성을 제고
- 관련조직은 권역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관광협회, 지방공사 등 관광개발과 관련된 상설, 비상설 조직의 현황과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집행계획 수립시 효율성을 제고

(3) 제4차 권역계획 평가

계획수립 평가

- 제4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상 수립절차에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 계획수립주체, 계획수립 기간, 계획수립 방법, 계획수립 체계 등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
- 계획수립 절차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 예산과 기간을 확보하고, 개방적인 연구체계가 확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내용 평가

- 제4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상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 부문, 관광수급 부문,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부문, 관광개발 방향 수립 부문, 공간체계 구상부문, 관광(단)지 개발계획 부문, 전략별 관광개발계획 부문, 투자계획 부문 등 부문별로 적절성과 실현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내용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적절하게 혼용하여 분석하되, 구체적 평가 지표 산정이 가능한 경우 제시

추진실적 평가

- 제4차 권역계획 기간내 관광객 증감 현황, 관광(단)지 조성 투자 및 집행 실적,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실적,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추진실적 평가는 제4차 권역계획상과 제5차 권역계획 수립연도까지의 정량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다른 평가방법을 통해 실시

종합평가 및 개선방향

- 제4차 권역계획의 계획수립과 계획내용, 추진실적 등을 요약·정리하여 계획상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분석 제시
- 종합평가 및 개선방향을 통해 제5차 권역계획 수립에의 시사점 및 기본방침 등을 제시

(4) 관광수급 분석

관광수요 예측

- 관광수요는 다양한 예측모형을 사용하여 적정 수요를 산정하되 수요예측의 결과가 과대 예측되지 않도록 하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수요를 제시
- 관광수요는 권역의 시·군별, 내국인과 외국인, 지역, 숙박과 당일, 관광행태 등 가능한 세부화 하여 예측하며, 제5차 권역계획 조사기준 시점인 2009년 수요와 계획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수요를 전년대비 증가율 등으로 연차별 제시
- 관광수요 예측은 추세수요, 보정수요, 목표수요 등의 단계별 절차를 통해 제시하며, 분석의 방법에 따라 다른 예측 절차의 적용도 가능

관광수급 분석

- 권역내 요구되는 관광개발의 유형과 적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권역의 미래 관광수요와 관광공급을 산정하여 분석
- 관광공급 산정은 관광수요의 대상이 되는 권역내 타부처 사업을 포괄하여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의 현황을 근거로 산정
- 관광객이 방문시기, 주요 활동 등 수요적인 측면과 관광자원 및 시설현황 등 공급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분석을 실시하되, 기본적으로 총량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

(5)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종합분석

- 권역 관광개발의 내부적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SWOT 분석 행렬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정리

- 종합분석은 관광개발 환경 분석, 지역개발 여건 분석, 제4차 권역계획 평가 그리고 관광수급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일반적 내용이 아닌 권역에 밀접한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제시
- 분석시 권역 관광개발의 비교우위요소의 상호보완을 통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정리하여 제시

〈 SWOT분석 〉

■ SWOT는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의 약자로서 강점은 내부적인 비교우위성 내지는 잠재력을 의미하며, 약점은 내부적인 취약성을 의미하고, 기회는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발전의 기회요인을 나타내고 위협은 외부적 환경변화에 의해 초래될 위협요인을 말함

■ 각 지역이 처한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SWOT 분석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기법임

〈 SWOT 분석 행렬표 〉

		내부환경요인분석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es)
외부환경 요인분석	기회요인 (Opportunities)	(Leverage)	(Constrains)
	위협요인 (Threats)	(Vulnerability)	(Problem)

계획과제

- 종합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권역이 갖는 강점을 살리면서 외부적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약점과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
- 계획과제는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계획 및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적 간명하게 제시

3 관광개발 사업 계획

3) 관광개발 기본 구상

○ 관광개발 기본구상은 지역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권역 관광개발의 발전을 위하여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을 토대로 해당 권역이 향후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정립하고, 실현가능한 목표와 최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전략을 수립함
○ 관광개발 기본구상은 개발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관광개발 공간체계 설정, 공간별 개발 방향 수립 등의 목차로 구성하여 제시함

(1) 개발비전 및 목표

- 개발비전 또는 최종목표(Vision or Goals) – 중간목표 (Objectives) – 추진전략(Strategies)의 체계로 계층화된 그림으로 표현하고, 체계간 논리와 관계에 대하여 해설
- 개발비전은 해당 권역관광개발에 있어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발전된 상을 종합·압축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상위관련계획과의 상관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필요한 경우 하나의 캐치 프레이즈로 표현
- 비전과 목표의 설정은 논리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권역 특성에 부합된 실현성이 전제된 내용으로 제시

〈 개발비전의 요건 〉

■ 관련계획의 개발 기본방향과의 정합성을 유지함
■ 현재 시점의 긍정적인 문체로 기술함
■ 해당 권역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함
■ 계획기간내에 개발 비전이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하며,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관광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 개발목표는 권역의 개발비전에 따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발전지표로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로 제시하고, 2009년과 목표연도인 2016년을 기준으로 관광객, 관광개발, 관광시설 지표 등을 제시
- 개발목표는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5년 이내 실현가능한 핵심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실현 전략을 핵심적으로 표현

〈 개발비전과 목표 〉

■ 개발비전 또는 최종목표는 한 개, 개발목표는 3~5개, 실현 전략은 개발목표별로 3~5개 정도로 제시토록 함

(2) 추진전략

-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정책 또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강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관광개발 사업과 관광진흥 사업 등 권역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세부사업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시하며, 권역에 따라 부문 조정은 가능

(3) 관광개발 공간체계

공간체계 구상

- 권역내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거나, 다양한 관광특성이 혼재하는 경우 계획의 편의를 위해 차별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여한 소권을 설정
- 권역 전체의 공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권을 설정할 경우 관광자원의 유사성 및 차별성, 관광 자원간 연계성, 접근성, 문화적 특이성 등을 분석기준으로 설정하여 구분
- 공간체계는 단순히 자원 또는 행정구역 단위에서 구분되어지기 보다는 복합화된 지역 공간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별 공간이론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

공간별 개발방향

- 구분된 소권별로 지역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타 소권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미래지향적인 개발방향을 제시
- 각 공간이 하나의 권역으로서 개발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등과 연계성을 갖도록 충분히 표현
- 소권의 범위와 개발방향, 소권내 거점 등 공간별 개발방향과 전략 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을 사용하여 도면화하여 제시

〈 작성시 고려사항 〉

■ 권역 전체가 하나의 도면으로 표현될 수 있는 축적을 사용
 - 시군 경계가 표현되고 권역전체로 파악될 수 있는 1:250,000 지도 사용
■ 권역내 소권의 개발방향과 주요 자원, 시설, 사업들의 위치를 표현

4) 관광개발 사업 계획

○ 관광개발 사업 계획은 권역의 관광개발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별 세부 내용을 제시하며, 권역내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제시함
○ 법정계획내용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광(단)지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관광개발 사업 계획은 권역내에서 추진가능한 단독사업과 인접 권역과 연계·협력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1) 기존 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

- 권역내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주체, 사업기간, 투자비, 사업내용 등이 포함된 총괄표를 작성
- 평가는 권역계획의 계획기간내 추진성과를 중점으로 평가하며, 권역 관광개발방향과의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유용성, 추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은 권역내 포함된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정후 사업추진여부를 제시
- 평가는 「권역계획수립반」에 의한 서면검토와 현장실사 등 다면평가를 실시

〈 예시 : 문화 및 녹색·생태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기준 〉

평가기준 (예시)	세부 평가항목 (예시)
목표의 부합성	- 상위계획 및 개발목표와의 일관성 등
지역 특화성	- 지역 특화성 및 차별성 등
자원의 고유성	- 문화자원의 고유성, 진정성, 신기성 등 - 생태적 가치 보존의 필요성 등
자원의 시장성	- 브랜드화 가능성, 콘텐츠 경쟁력 등
집행 실적	- 계획공정 일치성, 예산 집행 실적 등
투자 실적	- 국비, 지방비, 민간 투자실적 등
자원 및 시설관리	- 자원 및 시설의 지속적 관리 등
관광객 유치 효과	- 관광객 및 지역주민 이용수
기타	-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사회 영향, 지역환경영향 등

[자료] 문화관광부(2007.2),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

관광특구 평가

- 매년 시·도에서 평가하는 진흥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일면평가가 아닌 권역계획 기간중의 추진실적 및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는 「권역계획수립반」에 의한 서면검토와 현장실사 등 다면평가를 통해 실시

〈 예시 : 관광특구 평가기준 〉

평가기준 (예시)	세부 평가항목 (예시)
특구지정 적합성	– 부지상태 적정성 (관광활동 관련 토지비율 증가 등) – 특구내 시설의 편의성 (특구내 관광시설 평가 등) – 외국인 관광객수 충족 여부 등
특구사업 잠재성	– 관광마케팅 및 프로그램 다양성 등
특구사업 효율성	– 집행 실적, 방문 관광객수 증가 추이 등
특구사업 미래성	– 행정체계 및 지원 적정성, 시설관리 주기, 지역주민 참여도, 제도개선 실적 등

[자료] 문화관광부(2008.1), 관광특구 평가 및 개선방안

유사 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

- 유사 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사업 이외에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현황을 분석
- 사업방향 및 내용 등이 권역계획의 개발방향과의 부합성, 사업내용의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여부(통합 추진, 축소, 확대, 변경 등)를 유형화하여 제시
- 평가기준 및 항목, 평가방법은 권역내 포함된 유사 관광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설정

(2) 전략별 관광개발계획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분야

- 관광(단)지, 관광특구,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등을 포함하여 권역의 역사·예술, 생활자원 등을 소재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을 제시

-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사업,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사업,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권역의 특화관광자원 개발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제시
- 동 지침 4-3-4. 기존 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5년 동안의 권역계획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관광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을 선별하여 제시

관광지(자원) 연계·협력 분야

- 권역내 또는 인접 권역간 연계의 필요성이 높은 관광개발 대상지 및 관광자원에 대한 연계 또는 협력사업을 수립하여 제시
-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인접 권역와 연계·협력하여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로 사업계획을 작성
- 초광역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지역발전계획과 광역형 관광개발(서해안, 동해안, 지리산, 중부내륙권 등)의 기존 및 신규 사업 등과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
- 연계·협력 사업계획은 사업개요, 사업내용(위치, 여건, 사업내용), 사업집행(사업기간, 사업주체, 투자규모, 사업효과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단년 사업과 다년 사업을 명기하여 각 권역별 역할분담 등을 제시
- 관광지(자원) 연계·협력 분야의 경우 반드시 별도로 작성되어져야 하며, 수립과정에서 연계·협력사업과 관련된 인접 권역의 「권역계획수립반」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

환경보전 분야

-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 이용계획 수립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개발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관리방안을 제시
- 환경보전 분야는 별도로 작성되어 질 수도 있으며, 권역의 특성 및 계획내용에 따라 개별사업의 분야로 제시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의 「저탄소 녹색 관광자원개발 가이드라인(2009.03)」을 활용하여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보전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제시

(3) 관광(단)지 개발 계획

기존 관광(단)지 평가 및 정비·보완계획

가) 기존 관광(단)지 추진실적 평가

- 권역내 기존 관광(단)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과 권역시기별로 범례에 별도로 표기하고, 총괄표를 작성하며 총괄표에는 4-3-2. 관광개발 공간체계에 따라 구분된 소권별로 구분
- 총괄표에는 관광(단)지명, 관할 시·군, 위치, 지정 면적, 투자비, 최초 지정일, 최초 승인일, 조성사업 착수시기, 지정승인 착수기간, 사업기간 등을 포함
- 기존 관광(단)지의 사업전망도, 사업추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사업을 원안 추진, 계획 보완(확대, 축소, 통합 등), 추진 취소 등으로 유형화 하고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설정
- 원안 추진 사업의 경우는 사업추진도, 사업전망도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관광(단)지에 대해서 사업 추진 우선 순위를 설정
- 계획 보완 사업의 경우는 사업전망도는 우수하나 사업추진도가 미진한 관광(단)지에 대해서 재개발(remodeling) 등 기존 사업내용을 확대, 전환, 축소, 통합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

〈 예시 : 기존 관광(단)지 평가기준 〉

평가기준 (예시)		세부 평가항목 (예시)
사업 추진도	투자실적	- 계획대비 국비, 지방비, 민간 투자율 등
	집행실적	- 계획대비 공공, 민간 집행율 등
	부지확보 정도	- 토지매입율, 지장물 현황, 토지소유현황 등
	인허가추진 정도	- 조성계획 수립여부, 지정후 조성사업 착수기간, 조성사업후 경과기간, 추진상황 등
	기 타	- 권역 특성을 고려한 항목 설정
사업 전망도	전략적 역할 수행 정도	- 관광거점 기능·역할 수행, 자원의 매력, 차별성 ·특화성·상징성·연계가능성 등
	관광객 유치 실적	- 평균 연간 방문 관광객수, 연도별 증가율 등
	개발 추진 의지	- 지자체 개발 의지 등
	민자유치 가능성	- 민자유치를 위한 추진 실적 등
	기 타	- 권역 특성을 고려한 항목 설정

- 추진 취소 사업은 관광(단)지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에 지정 취소 및 조성계획 승인 실효 상실 등을 검토
- 평가결과 기존 관광(단)지의 면적 및 계획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할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으로 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
- 기존 관광(단)지 평가기준은 각 권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정하고, 평가과정에서 각 평가는 반드시 권역계획수립반의 서면검토와 현장실사 등 종합평가를 통해 결과를 도출

나) 기존 관광(단)지 정비·보완계획

- 기존 관광(단)지 평가결과를 4-3-2. 관광개발 공간체계에 따라 구분된 소권별로 구분하고, 관광(단)지명, 위치, 지정면적, 평가결과 등이 포함된 총괄표를 작성
- 기존 관광(단)지 정비·보완계획은 개별 관광(단)지별로 작성되어야 하며, 유형화된 평가결과 원안 추진, 계획 보완(확대, 축소, 통합 등), 추진 취소중 원안추진의 경우는 계획내용을 명료하게 요약·정리
- 계획 보완의 경우 변경된 계획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개발여건 분석,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개발방향 및 도입가능시설, 관광시설계획(기존 및 변경 토지이용계획표, 토지이용계획도, 시설면적표, 시설배치도 등) 등을 표현
- 각 도면은 관광(단)지의 지구계, 토지이용구분, 시설배치현황 등이 총괄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축척을 사용

신규 관광(단)지 개발계획

가) 신규 관광(단)지 선정

- 권역의 관광객 수 변화 추이 및 관광수요 예측 결과, 관광자원의 특성 및 권역계획의 개발 방향 등을 고려하여 권역내 신규 관광(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합리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신규 관광(단)지 지정여부를 결정
- 신규 관광(단)지 선정은 각 시·도가 개발계획의 자원성, 시장성, 환경성, 기대효과 등을 적정한 선정기준으로 설정한 후 추진가능한 사업을 평가과정을 거쳐 기준에 부합되는 적정 입지를 제시하고, 관광(단)지 지정의 계획내용을 제시

• 권역내 신규 관광(단)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과 4-3-2. 관광개발 공간체계에 따라 구분된 소권별로 구분된 총괄표에 관광(단)지명, 위치, 규모, 개발방향 등을 정리하여 제시

〈 예시 : 신규 관광(단)지 평가기준 〉

평가기준 (예시)	세부 평가항목 (예시)
개발방향	- 상위계획 및 개발목표와의 일관성 등 -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여부
차별성	- 관광(단)지의 주제 및 계획내용의 차별성 등
수급분석	- 수요 및 공급분석 예측결과의 적정성 등
경제성	- 개발타당성 분석 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등
자원 및 시설계획	- 관광(단)지 시설계획 및 자원관리 계획 내용 등
투자가능성	- 재원조달 가능성 및 민자유치 실현정도 등
토지확보율	- 토지확보 용이성 및 기확보 면적 등
기대효과	-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지역관광발전 기대효과 등

나) 신규 관광(단)지 개발계획

• 신규 관광(단)지 개발계획은 개별 관광(단)지별로 제시하며, 사업개요, 개발여건 분석, 개발기본구상, 사업추진계획 등으로 구성

• 개발기본구상은 개발 목표와 전략, 도입시설 및 규모, 공간 및 시설배분 구상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시설계획(안)을 포함시키며 신규 관광(단)지의 구상안을 별도 도면으로 제시

• 신규 관광(단)지 입지 선정 및 개발방향 수립시 사전환경성 검토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에 반영

• 관광지 등의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반드시 개발계획내용에 포함

〈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내용 〉

■ 대상지역안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 현황
■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자료]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2009.8), 사전환경성 검토 매뉴얼

〈 시행규칙 제58조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

①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 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4.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 · 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6. 관광지등의 지번 · 지목 · 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18의 관광지 · 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 · 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기존 관광개발 사업별 검토 결과 및 저감방안

- 기존 관광개발사업의 계획내용 변경 등으로 사전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검토내용을 적시하고 결과를 제시
- 기존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는 제4차 권역계획에 제시된 관광개발사업별로 적시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신규 관광개발 사업별 검토 결과 및 저감방안

- 신규 관광개발사업의 계획내용 변경 등으로 사전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검토내용을 적시하고 결과를 제시
- 신규 관광개발 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는 관광개발사업별로 검토 대상 사업의 경우 실시하고 검토 결과를 권역계획 수립 연구기관에 제출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 〉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의의
-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행정계획	개발사업
(1) 관광개발기본계획 (2) 권역별관광개발계획 (3) 관광지등의 지정 (4)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5)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6)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7)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 보존용도지역에서의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 -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보존용도지역에서의 5,000㎡ ~ 50,000㎡ 이상의 개발 사업

구 분	5,000㎡이상	7,500㎡이상	10,000㎡이상	50,000㎡이상
국토법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	⋮	⋮	⋮	

■ 사전환경성검토 작성내용
-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 현황
- 대상지역안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구역 등의 분포 현황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 규모, 특성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5) 관광진흥 사업 계획

○ 관광진흥 사업 계획은 기존의 하드웨어 개발 중심에서 소프트 웨어 중심의 개발을 지향하여 관광상품 및 코스, 관광축제 및 이벤트, 관광홍보 및 이벤트, 관광안내정보, 관광인력 양성 등 다양항 소프트웨어 전략 사업계획을 수립함

○ 관광진흥 사업 계획은 권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권역의 특화 진흥 사업이 있는 경우 아래 제시된 항목을 조정하여 계획을 수립함

(1) 관광상품 및 코스 계획

관광상품 계획

• 권역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분석하여 미래 관광행태 및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별하여 제시

- 관광상품은 기존의 시·도, 시·군의 관광상품의 특성, 인접 권역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관광루트 및 코스 계획

- 관광루트는 권역내에 국한되기 보다는 인접 또는 권역의 지리적 입지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권역을 상징할 수 있도록 제시
- 관광코스는 지역특화형의 관광코스로 현재 운영중인 관광코스와 향후 운영시 상품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

(2) 관광축제 및 이벤트 계획

- 권역내에서 개최되는 1년간의 관광축제, 지역축제, 문화축제 등을 검토하여 통합하거나, 동시개최시 상품성이 우수한 축제를 선별하여 제시
- 기존 축제이외에 권역에서 향후 5년간 중점으로 신규로 추진되어야 할 축제 아이템 등을 구체화하여 사업화 계획 제시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계획

- 관광홍보, 관광마케팅, 관광인력, 관광브랜드 등 관광홍보와 관련된 진흥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구체화하여 제시
- 기존의 단순 사항의 나열식 접근보다는 권역의 관광개발방향 등에 부합한 홍보 및 마케팅 계획 등을 제시

(4) 관광안내정보체계 구축 계획

- 관광안내정보체계 및 활용 계획은 기존 및 권역계획내 포함된 관광개발 및 진흥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진국형의 안내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
- 이외에 관광안내정보와 관련된 관광인력전문화 방안 등에 대한 권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4 관광사업 집행 계획

6) 사업 집행 계획

○ 기존 혹은 신규 관광개발사업을 권역에서 직접 수행 하기 위한 추진방식 설정, 일정, 관련기구 및 조직을 설치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것임
○ 사업 집행 계획은 사업 추진 체계, 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개발효과 분석 부분으로 구성함

(1) 사업 추진 체계

사업 추진 방식

- 권역내 기존 계속사업 또는 단독사업에 포함되는 경우 개발근거법 및 향후 사업 추진 방식을 제시
- 권역간 연계·협력사업의 경우 협력주체, 주체별 사업, 중앙정부 정책 연계 추진 등이 포함된 사업 추진 방식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주체들간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

사업 추진 일정

- 권역계획에서 제시된 기존 또는 신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5년간의 사업 추진일정을 구분하여 제시
- 신규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행정 절차, 토지수용, 사업추진 등 단계별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제시

지원 체계 정비

- 권역계획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인력 확보 및 전문화, 조직의 구성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민관간 협력을 통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신규 조직의 구성, 기존 조직의 강화, 민간 협력 촉진방안 등을 수립하여 제시
- 관광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관광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제시

(2)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계획

- 권역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존 또는 신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를 추정하여 제시
- 소요 투자비는 투자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총액을 먼저 제시한 후 연차별로 작성하고, 투자계획은 연차별·재원별로 백만 원 단위로 작성하여 제시

재원조달 방안

- 권역내 관광개발사업의 개별적 혹은 공동으로 기획한 기존 및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조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 재원조달은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고, 공공은 국비, 지방비(도비, 시군비) 등을 구분하고 활용 가능한 재원을 검토하여 방안을 수립
- 지방재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광개발부문에 조달가능한 재원의 규모를 분석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
- 재원조달계획은 신재원의 발굴 등 공공부문의 재원확충방안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

(3) 개발효과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 각종 관광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객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고용·부가가치·소득·조세 등 각 부문별로 계량적으로 추정함
-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분석 자료는 2007년 한국은행에서 작성된 전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당해 권역 및 관광산업에 적합하게 분석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

- 각종 관광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가능한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 예측
- 부정적 측면의 경우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Ⅵ 제5차 권역계획 조정 방안

제1절 조정의 개요

제2절 권역계획 조정 방안

제1절 조정의 개요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조정은 관광진흥법 제49조 제2항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내용을 대상으로 전국단위에서 계획 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해 조정의 근거, 목적, 범위를 제시함

1 조정 근거

관광진흥법 제51조 제2항

-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시·도지사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권역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 관광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가 권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제시함
  - 다만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수립함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권역계획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 ·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관광지, 관광단지 등 관광개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 계획 내용이 중복되므로 권역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관광진흥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수립한 권역계획을 조정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함
  - 시 · 도지사는 권역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필요시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정지원단,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 운영함

2 조정 목적

상위계획과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

- 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관광개발기본계획(기본계획)의 권역구분을 근거로 하여 수립되는 권역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관광개발의 상위계획을 구체화한 권역내 5년 단위의 중기적 실행계획임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각종 지표, 개발방향을 검토·반영하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발방향을 설정함
- 따라서, 권역계획은 관광진흥법상 장기계획인 동시에 상위계획인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하는 기본방향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책수립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권역간 계획내용의 충실성과 수준 제고

- 권역계획은 15개 계획수립주체가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발적 수립(self-making)으로 개별 단위 관광개발 및 진흥사업 등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권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종합계획임
- 계획수립의 공간적 범위가 시·도로 한정되어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중복으로 권역의 측면에서는 관광개발을 저해하고, 전국적 측면에서는 행정 및 예산 등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음
- 계획수립주체 및 수립절차 등의 상이로 인해 권역계획의 지위와 성격에 부합하는 수준과 계획내용의 도출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권역내의 5년 계획이 아닌 전국의 5년 단위 계획으로서 위상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권역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및 전략성 강화

- 권역계획은 권역내 5년 중기적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계획 수립기간중 발굴된 사업들이 실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별권역 계획내용의 타당성, 구체성 및 전략성이 확보되어야 함
- 권역계획은 각 권역의 관광 여건 및 관광 동향 분석,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립됨
- 권역계획 수립 기간중 타 권역계획과의 차별성 제고, 권역의 특성 반영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정 의견을 반영하여 실행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3 조정 범위

관광진흥법 제49조 제2항의 내용을 포함

- 관광진흥법 제49조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 · 개발 · 이용 ·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 · 정비 · 보완 등에 관한 사항

4의 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안)의 주요 계획내용

-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세부 내용은 원활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법정계획 내용을 일반적 계획내용에 따라 여건분석, 사업계획, 집행계획 등으로 구분함
- 여건분석은 향후 5년간 권역관광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제시하고 권역별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관광개발과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관광자원 검토와 잠재력 등 분석함
  - 여건분석은 계획의 개요, 관광여건 및 동향분석, 관광수급 분석으로 구분하여 권역내의 자원 및 현황분석이외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변화되는 미래 환경을 전망하여 분석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 사업계획은 지역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권역의 발전을 위하여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을 토대로 해당 권역이 향후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정립하고 실현가능한 내용을 제시함
  - 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관광개발사업, 관광진흥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라 분류후 가용재원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도록 함
  - 관광개발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권역내 추진 사업들에 대하여 신규 사업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의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가능한 현실성 높은 진흥사업 등을 수립함

• 집행계획은 기존·신규 관광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방식 설정, 5년간의 사업 추진 일정, 관광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관련기구 및 조직을 설치하고 재원을 마련함

- 권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존 또는 신규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인력 확보 및 전문화, 조직 구성, 조달가능한 재원 규모 분석, 재원확충방안 등에 대한 계획 내용을 수립하여 제시함
- 각종 관광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객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표 6.1〉 제5차 권역계획수립 지침 세부 계획내용

구 분		세부 계획내용
여건분석	계획의 개요	– 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수립 범위 – 계획 수립 추진체계 – 추진절차 및 경과 등
	관광여건 및 동향분석	– 일반환경 변화 및 전망 – 관광환경 변화 및 전망 – 지역현황 분석, 관광현황 분석, 집행현황 분석 –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평가 등
	관광수급 분석	– 관광수요 예측 – 관광수급 분석 등
사업계획	관광개발 기본구상	– 개발비전 및 목표 – 추진 전략 – 관광개발 공간체계 구상 – 공간별 개발 방향 등
	관광개발 사업계획	– 기존 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등 – 전략별 관광개발 계획 등 – 관광(단)지 평가 및 정비·보완계획 등 – 신규 관광(단)지 개발계획 등
	관광진흥 사업계획	– 관광상품 및 코스 계획 – 관광축제 및 이벤트 계획 – 관광홍보 및 마케팅 계획 – 관광안내정보체계 구축 계획 등
집행계획	사업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방식 – 사업 추진 일정 – 지원 체계 정비 등
	투자 및 재원조달방안	– 투자계획 – 재원조달 방안 등
	개발효과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 –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 등

권역계획의 특성을 고려한 항목별 계획내용 조정

- 권역계획은 권역내의 특성과 여건,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내용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특화시키는 전략적 종합계획임
- 권역계획의 조정 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계획내용이나 권역계획으로서의 성격과 지위에 적합한 필수적인 내용을 중점으로 조정하여, 권역계획의 일률화, 계획내용의 획일화 등을 최소화함
- 권역계획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법정 계획, 관광권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종합계획, 권역내 5년 단위의 중기적 실행계획, 권역내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등 계획의 성격과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함
- 계획의 세부내용은 계획의 지위 등을 고려한 관광자원·개발사업 계획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필수·선택 조정 항목을 분류하여 평가함

〈표 6.2〉 제5차 권역계획 필수·선택 조정 항목

구 분		세부 계획내용	서류 검토		현장 실사
			필수 조정	선택 조정	
여건분석	계획의 개요	– 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수립 범위 – 추진체계, 추진절차 및 경과 등	◎	–	–
	관광여건 및 동향분석	– 일반환경 변화 및 전망, 관광환경 변화 및 전망, 지역현황 분석, 관광현황 분석, 집행현황 분석 등	–	◎	–
		–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평가 등	◎	–	–
	관광수급 분석	– 관광수요 예측, 관광수급 분석 등	◎	–	–
사업계획	관광개발 기본구상	– 개발비전 및 목표, 추진 전략 등	◎	–	–
		– 관광개발 공간체계 구상, 공간별 개발 방향 등	◎	–	–
	관광개발 사업계획	– 기존 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전략별 관광개발 계획 – 관광(단)지 평가 및 정비·보완계획, 신규 관광(단)지 개발계획 등	◎	–	◎
	관광진흥 사업계획	– 관광상품 및 코스, 관광축제 및 이벤트, 관광홍보 및 마케팅, 관광안내 정보체계 구축 등	–	◎	◎
집행계획	사업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방식, 사업 추진 일정, 지원 체계 정비 등	◎	–	–
	투자 및 재원조달방안	– 투자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	◎	–	–
	개발효과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 등	–	◎	–
			–	◎	–

제2절 권역계획 조정 방안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조정이 합리적 ·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권역계획 조정지원단, 권역계획 조정위원회, 권역계획 수립반을 구성하여 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수립 완료시까지 서면검토, 현장실사, 총괄 검토 등 단계별 조정을 실시함

1 조정 방향과 전략

1) 조정 방향

상위 계획상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등을 조정

- 권역계획 수립과정중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권역의 관광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등 상위 계획 및 국가정책 목표 등의 부합성 등을 조정함
  - 제3차 기본계획과 제5차 권역계획의 수립 기간 동일성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내의 개발방향 설정시 권역계획과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조정함

계획수립 내용의 타당성, 구체성 및 실현성 등을 조정

- 권역계획내 관광개발 사업 및 관광진흥 사업 등에 대한 사업별 타당성을 확보하고, 구체성 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함
  - 권역계획내 사업에 대한 조정후 5년내 권역에서 실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실현성에 중점을 두고 객관적으로 조정함

계획 수립 과정상 부문·통합 조정을 통해 현실적인 조정 절차 수행

- 계획시안 작성 완료후 조정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계획수립 과정상 계획내용 조정을 통해 계획수립과 조정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는 조정절차를 확보함
  - 계획 수립과정상 계획수립 주체와 조정 주체간 의견 협의를 통해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 계획수립이후 발생되는 계획내용의 수정 등을 최소화함

계획수립 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수렴하여 협의 조정

- 조정시 계획 수립 기관(시 · 도 또는 권역계획 수립반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며, 객관적인 조정 체계를 확보하여 조정함

2) 조정 전략

항목별 내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종합 조정 지표 구성

- 조정 지표는 권역계획의 목적, 방향, 기준에 적합한 필수항목을 추출하여 조정위원회의 평가방향의 기준을 제시하고 권역계획의 질적·양적 수준을 향상시킴
- 권역계획의 성격 및 방법 등에 적합한 계획 내용, 체계, 수립과정 등 부문별 내용과 관광개발 사업, 집행계획 등 항목별 내용 등을 조정하는 지표를 구성함

서면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한 구체적인 조정 의견 제시

- 제5차 권역계획 조정은 타 권역계획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을 위하여 수립 절차, 일정 등을 고려한 서면검토 2회, 현장실사 등 다면평가를 수립기간 중 실시함
  - 조정위원회의 조정 의견은 기존의 일반적인 조정 사항보다는 각 전문분야별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권역의 관광개발사업에 반영될 수 는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계획수립 초기부터 완료까지 고려한 단계별 조정 실행

- 계획수립의 혼란 발생 및 효율성 저하를 위하여 권역계획 수립 단계 초기부터 계획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부문조정 및 총괄조정 등을 실시하여 조정 이후 계획의 순차적 수립을 유도함
  - 계획수립 초기부터 조정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환류(Feed-Back)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 완료시 조정에 대한 의견을 최소화함

대권별, 전문분야별 심층 조정을 통한 조정의견의 현실성 강화

- 각 전문가로 구성된 권역계획 조정위원회는 심층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기간 중 부문조정, 계획 수립 완료 후 총괄조정을 실시하며 현실성 있는 조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 부문조정, 총괄조정 등 심층 조정을 통해 제시된 권역계획 조정위원의 의견이 실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여 조정 의견의 현실성을 강화함

2 조정 체계와 운영

1) 조정 체계

제3차 기본계획 및 제5차 권역계획 수립 체계와 조정 체계

- 제3차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비전을 담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광개발기본계획연구단을 구성하여 연구단 내에 총괄팀과 부문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 관광개발과 관련된 부처의 정책담당자들과의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 정책담당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함
- 권역계획 수립의 실무를 총괄하는 제5차 권역계획 수립반은 각 시·도의 관계자, 계획수립 수행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권역계획(안) 협의·조정,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 조정의 모든 과정에 참여함
  - 제5차 권역계획 수립반은 제3차 기본계획 수립 협의체에 참여하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기본방향과의 연속성·일관성을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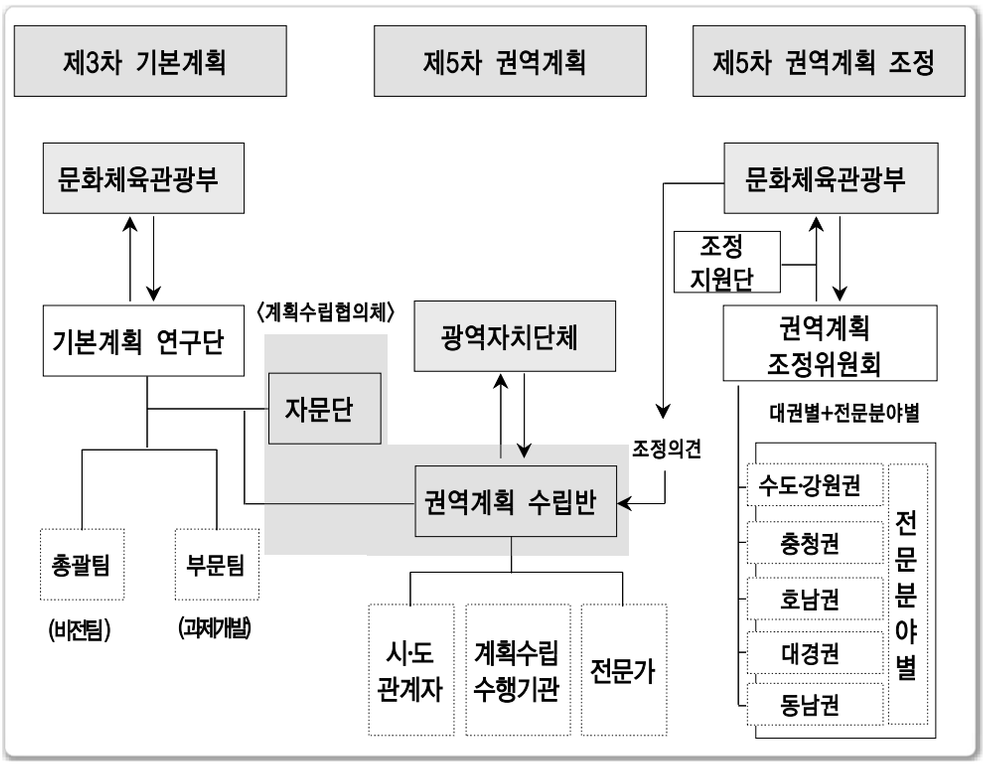

[그림 6.1] 제3차 기본계획, 제5차 권역계획 및 조정사업 추진 체계

제5차 권역계획 조정 체계

- 제5차 권역계획의 조정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는 권역계획을 직접 검토, 조정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요인들이 있으므로 조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권역계획 조정지원단과 조정위원회를 운영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권역계획 조정위원회'를 지원·운영하기보다는 '권역계획 조정지원단'을 운영하여 제5차 권역계획 시안정리, 자료 확보, 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함
- '권역계획 조정위원회'는 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광역경제권을 근간으로 5대권별 조정위원회로 구분하여 분석평가, 개발구상, 전략사업, 진흥사업, 투자유치 등 전문 분야별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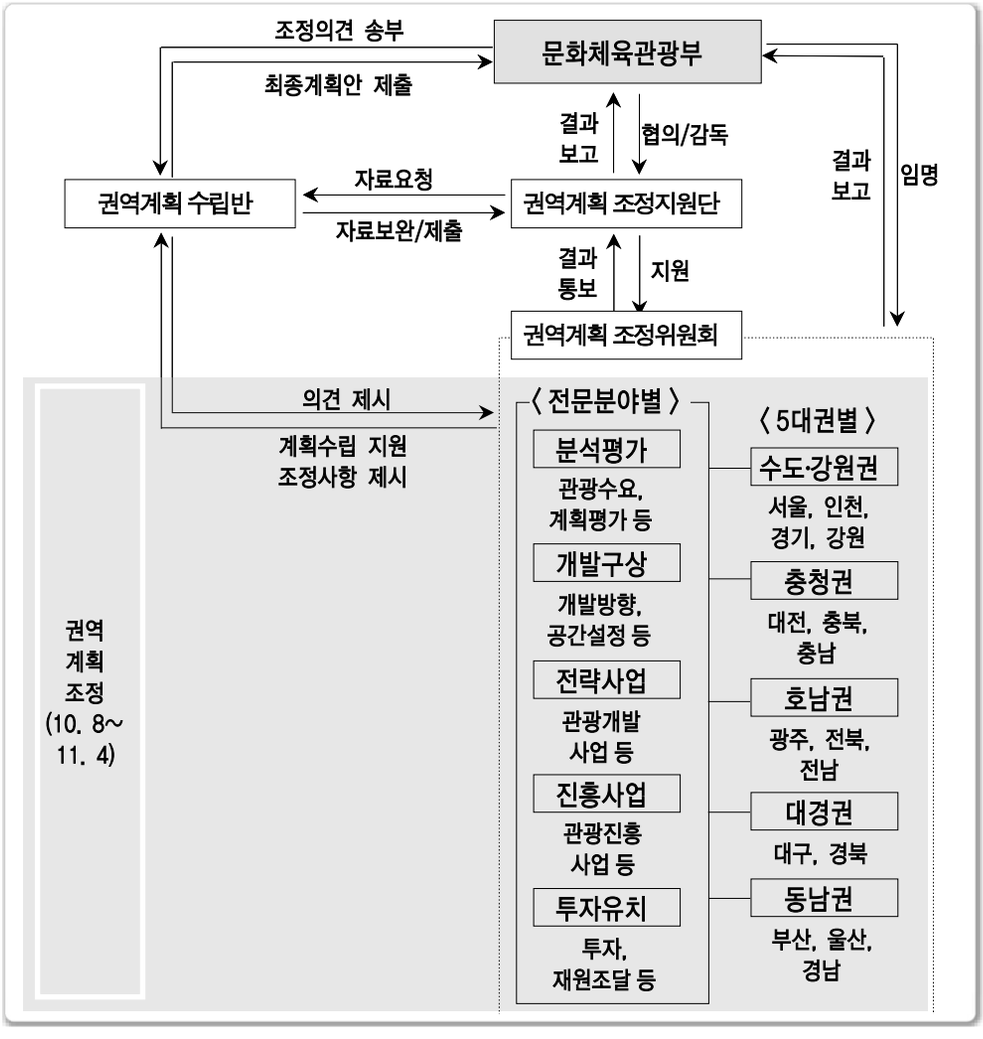

[그림 6.2] 제5차 권역계획 조정 체계

제5차 권역계획 조정 조직별 업무 분담

- 제5차 권역계획 조정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권역계획 조정지원단, 권역계획 조정위원회, 권역계획 수립반 등의 조직이 참여하며 각 조직별로 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하여 체계적인 조정을 이루도록 함
- 제5차 권역계획 조정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조정지원단 선정 및 조정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정위원회 구성 등 조정에 관한 업무를 감독함
  - 조정지원단, 조정위원회, 권역계획 수립반 등이 참여하는 권역계획 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수렴할 수 있도록 지원·운영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영하는 권역계획 조정지원단은 원활한 권역계획 조정을 위해 제5차 권역계획 시안 정리, 자료 확보, 조정위원회 운영 등 조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함
- 전문분야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권역계획 조정위원회는 서면검토,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제5차 권역계획 계획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함
- 권역계획 수립반은 시·도 및 시·군 관계자를 중심으로 계획수립 수행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권역계획 연구협의회 개최시 각 시·도의 의견 제시 및 조정위원회의 의견 반영 등 조정 과정에 참여함

〈표 6.3〉 제5차 권역계획 조정 조직별 업무 분담

구 분	주요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 권역계획 조정지원단 선정, 감독 및 조정 결과 협의 – 권역계획 조정위원회 구성 – 조정의견 각 시·도 송부
조정지원단	– 조정위원회 의견 취합 후 문화체육관광부 결과 보고 – 권역계획 조정위원회 지원 – 조정 관련 제반 업무
조정위원회	– 서면검토, 현장실사 실시 – 조정위원회 회의 실시 – 조정 결과 조정지원단 통보 – 계획수립 지원 및 조정 사항 제시 – 조정의견 문화체육관광부 결과 보고
권역계획 수립반	– 권역계획 최종안 제출 – 계획 수립 의견 제시 – 조정지원단 요청 시 협조 – 조정 의견에 대한 시·도 의견서 제출

2) 조정 운영

전문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권역계획 조정위원회 운영

- 권역계획 조정위원회는 5대권별(수도 ·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로 구분하여, 각 대권별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함
- 권역계획 조정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21명을 조정 위원 21명을 조정위원으로 임명하여 구성함
  - 조정위원은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계획수립에 대한 지원을 하며, 계획수립이후에 대한 총괄조정까지 업무를 수행함
  - 종합조정위원장과 5인의 대권별 조정위원장이 참여하는 종합조정회의를 통하여 각 대권별 조정의견을 논의한 후 총 15개 제5차 권역계획시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작성하여 총괄 조정함
  - 대권별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되, 권역에 대한 총괄 조정의 업무를 병행함
  - 대권별 조정회의는 조정위원 전원이 참석하며, 종합조정회의는 대권별 조정위원과 총괄 조정위원장 총 6명이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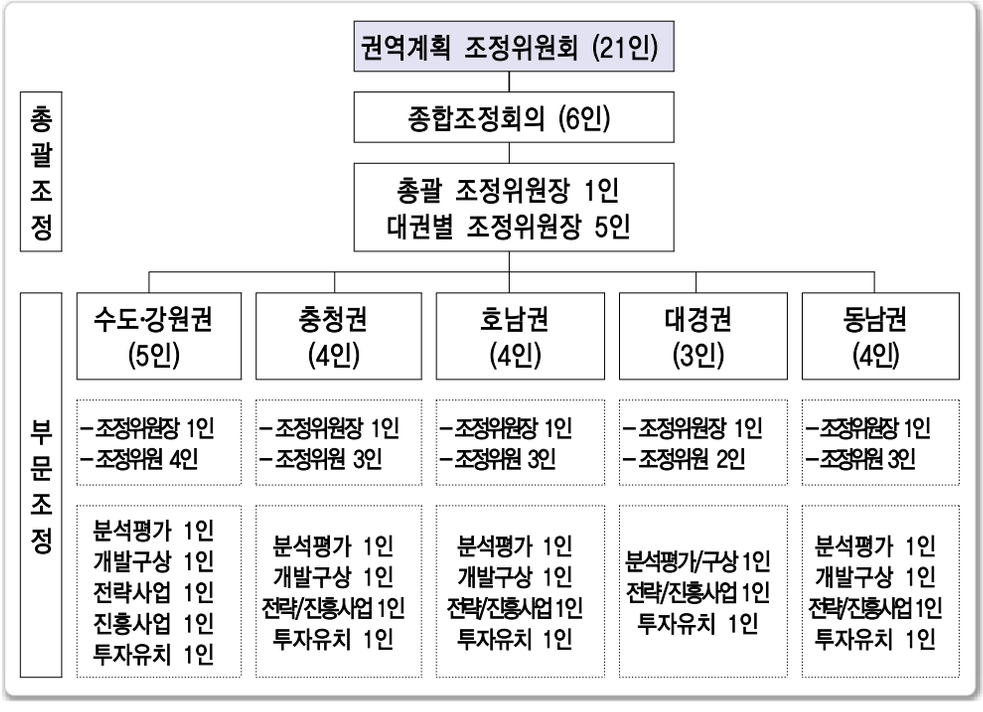

[그림 6.3] 제5차 권역계획 조정위원회 구성

- 총괄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을 대표하는 자로서,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총괄·관리 하며 조정위원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1인을 선정하여 임명함
- 대권별 조정위원장은 대권별 조정위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각종 평가 및 회의를 통하여 조정위원의 의견을 수렴·전달 할 수 있는 자로서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대권별로 1인을 임명함
  - 대권별 조정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정지원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권별 조정위원을 소집하여야 함
- 권역계획 조정위원의 조정 임기는 2010년 8월 ~ 2011년 4월까지로 하며 조정 임기 기간 중 회의, 평가, 권역계획 연구협의회 등 조정에 관한 일정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권역계획 조정위원의 자격 요건

- 권역계획 조정위원은 권역계획 조정이라는 특수성에 부합한 필수적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선택적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 필수적 자격 요건은 세부 자격 요건을 최소 2개 이상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당해 권역계획의 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자를 원칙으로 함
  - 또한, 조정대상 관광권역에 직접적인 연고가 있는 경우에 대권별 조정대상 타 관광권역의 조정위원으로 임명함

〈표 6.3〉 제5차 권역계획 조정위원 자격 요건

구 분	세부 자격 요건
필수적 자격 요건	– 이전 권역계획 조정사업에 최소 1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 이전 권역계획 수립에 직접적인 참여가 최소 1회 이상 있는 자 – 대학교·연구기관에서 관광개발과 관련된 강의·연구 또는 업무를 최소 3년 이상 수행하고 있는 자 – 조정대상 관광권역과 관련하여 관광개발 등의 연구용역 또는 사업 등을 수행하지 아니한 자
선택적 자격 요건	– 제5차 권역계획 조정의 조정위원회 임기기간중 회의, 평가, 협의회 등 참석에 지장이 없는 자 – 관광 관련 분야 학회 등에서 조정위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자

권역계획 조정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 권역계획 조정위원회는 5대권별 조정위원장이 각종 계획 내용의 조정 및 회의 등을 주도하면서, 조정위원과 함께 계획수립 기간 중 단계별로 서면검토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조정 의견을 도출함
  - 대권별 조정위원장 및 조정위원은 해당 권역계획의 추진 단계 및 계획 내용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조정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함
  - 권역계획 조정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조정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대권별 조정 회의를 거쳐 종합조정회의를 거친 의견은 권역계획 시안에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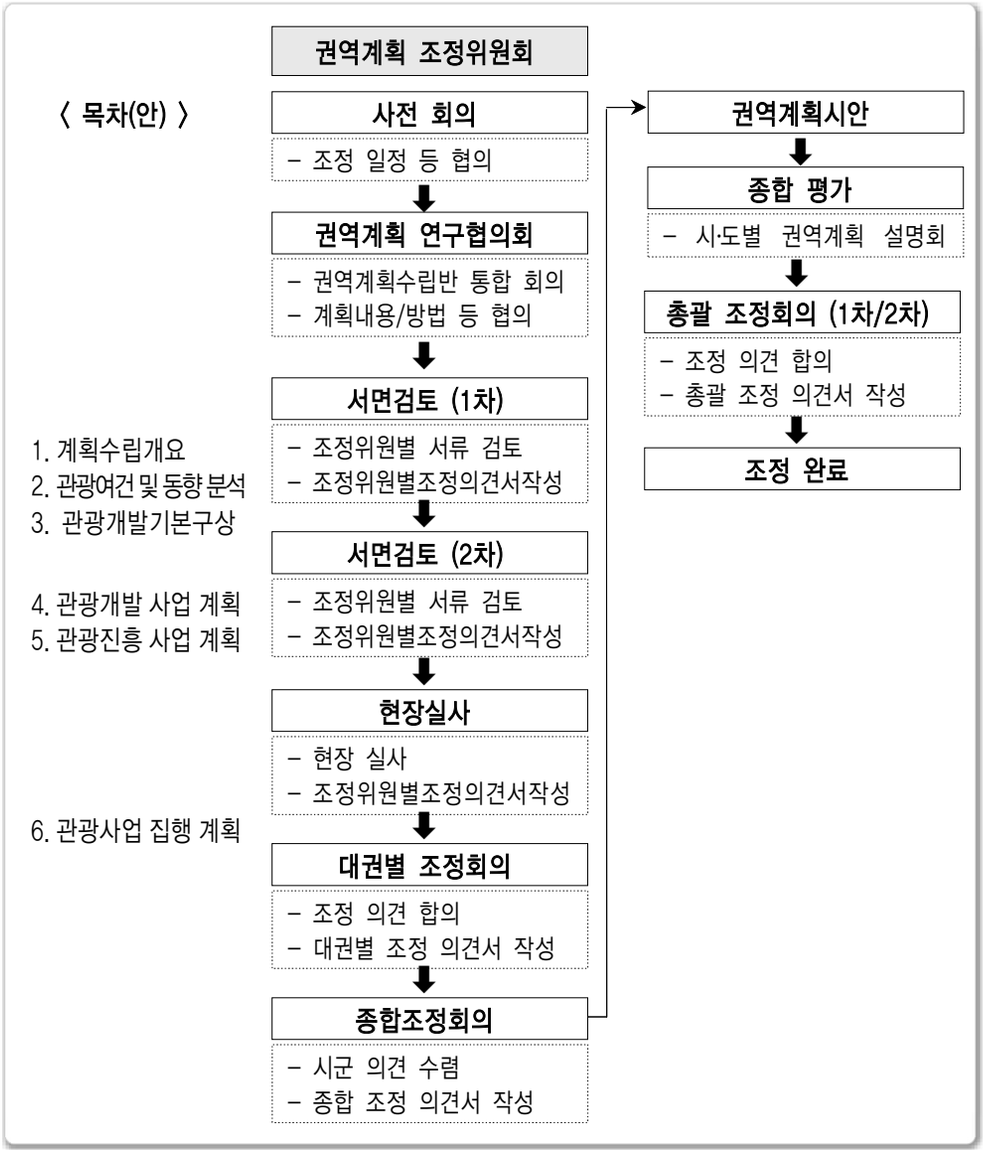

[그림 6.4] 제5차 권역계획 조정 운영 절차

3 조정 방법과 기준

1) 조정 방법

서면검토, 현장실사, 총괄검토 등 단계별 조정 방법 실시

- 계획수립기간 중 부문조정에서는 서면검토와 현장실사로 구분하고, 총괄 검토에서는 총괄 검토하여 조정함
  - 서면검토는 계획내용의 수립단계를 고려하여 2차에 걸친 계획내용의 전반적 적정성 등을 검토하며 서면 검토후 조정의견서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 검토함
  - 현장실사는 구체적인 개발입지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획내용의 전반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며 조정의견서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 검토함
  - 총괄검토는 계획내용의 전반적 적정성, 타당성, 타 권역과의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정성적인 방법으로 검토함

〈표 6.5〉 제5차 권역계획 조정 세부 방법

구 분		세부 방법
부문조정	서면검토	- 계획내용의 수립 단계를 고려하여 1차, 2차로 구분하여 검토 · 1차 검토는 기본계획과의 연속성, 수급분석 적정성, 개발방향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조정 · 2차 검토는 사업계획 내용의 적정성, 현실성,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조정 - 서면검토후 조정의견서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 조정
	현장실사	-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구체적인 개발입지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조정 - 현장실사후 조정의견서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 조정 · 단위사업별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원안 추진 · 단위사업별 평균 점수가 60점~70점 미만 계획 보완 · 단위사업별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 추진 취소
총괄조정	총괄검토	- 권역계획 시안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 수립과정부터 계획내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정성적으로 조정 - 타 권역계획과의 비교 검토를 통한 조정 · 계획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 검토를 통한 비교우위 경쟁력을 정성적 방법으로 조정

2) 조정 기준

제5차 권역계획 조정의 기본방향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달한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지침'을 근거로 하여 권역계획 수립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 기준을 도출함
- 권역계획 조정위원회, 권역계획 수립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조정 기준을 확정함
- 조정 기준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서면검토와 현장실사 등 계획의 성격 및 방법 등에 적합하도록 조정 기준을 설정하여 검토함

서면검토를 위한 조정 지표 구성

- 제5차 권역계획의 서면검토는 계획수립과정, 계획분석 · 평가, 기본구상, 사업계획, 집행계획 등 총 5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조정 지표의 내용에 따라 전반적인 계획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함
- 총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서면검토는 조정 지표를 중심으로 조정위원들의 종합적인 조정 의견을 정석적인 방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시함

〈표 6.6〉 서면검토 조정 지표

	항 목	조정 지표
서면검토 (1차/2차)	계획수립과정	- 수립과정의 충실성(계획수립지침상 수립과정 이행정도) - 계획수립 방향의 적절성 등
	계획분석 · 평가	- 여건분석의 타당성 - 수급분석의 적정성(수요예측 모형과 과정 등) - 이전 권역계획 평가 반영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
	기본구상	- 비전, 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성 - 공간구상의 적절성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사업계획	- 기존사업 평가결과의 환류 적정성 및 효과성 - 관광개발사업의 특화성 및 차별성 - 관광지(자원)간 연계성, 상호보와성, 통합성 - 권역간, 지역간 연계 · 협력사업의 적정성 - 개발사업과 진흥사업의 적정성 등
	집행계획	-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 민자유치 계획의 현실성 등

현장실사를 위한 조정 지표 구성

- 현장실사는 기존 사업의 사업추진 효율성, 신규 사업의 사업추진 적합성, 시업내용 타당성, 사업추진 효과성, 사업추진 실현성 등 총5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함
- 현장실사는 서류검토 후 현장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에 계획내용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함
- 현장실사의 총 5개 항목을 조정 지표에 따라 각 부분별 점수를 합산후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계획 추진, 60~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 내용 보완, 60점 미만인 경우 사업 계획을 취소함
  - 기존 사업은 관광특구, 관광(단)지 등을 포함하며 권역관광개발방향과의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유용성, 추진실적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함
  - 신규 사업은 관광수요, 예측결과, 관광자원 특성 및 권역관광개발방향 등을 고려하여 5년 동안 권역계획에서 추진되어야 할 관광개발 관련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별하여 조정함

〈표 6.7〉 현장실사 조정 지표

	항목		조정 지표	배점 (100)
현장실사	기존사업	사업추진 효율성	- 목표 달성 실적 - 예산대비 집행 실적 - 개발 추진율 등	25
	신규사업	사업추진 적합성	- 입지 타당성(개발사업)/ 시장 경쟁성(진흥사업) - 지역(권역) 특성과의 부합성 - 사업추진 방향의 합리성 -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중복성 등	
	사업내용 타당성		- 비전, 목표와의 부합성(상위계획과의 적합성 등) - 사업기간 및 주체 등의 적절성 - 시설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구체성 - 인접 자원과의 연계 방안 등의 현실성 - 투자대비 효과성 및 효율성	15
	사업추진효과성		- 관광객 유치 효과 - 지역사회 파급효과 정도 - 환경적 영향 정도 등	25
	사업추진실현성		- 개발가용지 확보 용이성(개발사업) - 사업추진 의지 -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 사업추진의 현실성 등	25

중점 검토 사항을 토대로 조정 실시

- 기존 사업의 사업 평가는 제4차 권역계획에서 제시한 기존 사업 의 평가 의무화를 통하여 정비 · 보완 ·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제4차 권역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근간으로 실적 달성 및 예산대비 실적
  - 제4차 권역계획 개발 사업에 따라 개발 추진 여부
- 신규 사업은 권역관광개발방향 등을 고려하여 5년 동안 권역계획에서 추진되어야 할 관광개발 관련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별하여 평가함
  - 신규 개발 사업의 입지 타당성 및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
  - 지역의 자연, 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계획 여부
  - 사업의 비전 및 목표와 도출된 전략 방향과의 합리성
  - 타 권역과의 개발 사업의 중복성 및 인접 관광자원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 제5차 권역계획에서 제시한 수요의 예측지를 검토하여 과다한 수요예측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요예측의 논리성을 제고함
  - 수요예측의 적절한 수치 추정
  - 통계자료의 신뢰성 및 수요예측 방법 사용
-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에 적절한 비전 및 목표, 개발체계, 공간 구상을 이룰수 있도록 평가함
  - 기본계획, 권역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비전과의 부합성
  - 시도별 목표 · 비전과 연계된 핵심사업 도출
  - 도입 시설 및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자원의 매력성
- 제5차 권역계획을 통하여 지역경제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한 개발 계획을 평가함
  - 역사 · 문화, 생태 · 녹색관광자원 및 사업 활성화로 인한 지역의 파급효과
  - 관광수요 창출 가능성 및 지역사회 소득 증대 효과
  - 관광자원의 매력성 및 주변문화, 자연여건, 자원간의 연계성
- 사업추진 실현성은 전체적인 개발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투자계획 수립을 제시하여 현실가능한 계획을 평가함
  - 총사업비와 재원별 투자계획의 일치 여부
  - 재원별 투자계획의 합리성 검토 및 사업추진의 실현성 및 효과성
  - 민자유치방안등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수립 여부

3) 조정시 주요 고려사항

권역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계획 수립 과정, 내용 등의 충실성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달한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지침'의 내용을 고려하여 상위계획과의 방향성 및 목표 등 일관성을 유지, 세부 계획 내용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여 조정함

정부 정책 및 미래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수립 제시

- 녹색성장, 기후변화, 환경지향적 계획 등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정부 정책 및 기조 등 미래 환경에 적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미래관광환경 변화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정함

적정한 수요 예측 방법론 선택 및 수급 분석 제시

- 지역별 관광수요는 단순한 수치 기록보다는 권역의 시·도별, 내국인·외국인별, 숙박 등 미래 관광수요를 파악하기 위함이므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연차별로 정확한 자료 제시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조정함

권역간 사업 연계성 등을 고려한 수립 제시

- 권역간, 지역간 연계 필요성이 높은 관광개발 자원에 대하여 연계 또는 협력형 사업 수립 여부 및 유사사업의 중복 추진 방지, 타 권역계획과의 차별성 있는 사업 등을 검토하여 조정함

권역의 중·장기적 개발 방향 제시

- 제5차 권역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과 동시에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권역의 5년간의 단기적 개발방향보다는 10년의 중·장기적 방향을 토대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함

국토 관광공간구조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제시

- 각 권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 사업 추진으로 관광국토 전반의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함

기존 관광자원 평가를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여부 제시

- 제4차 권역계획의 기존 관광자원 평가를 바탕으로 제5차 권역계획에 관광상품 및 코스, 축제, 이벤트 등 관광진흥 사업 계획 내용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 여부 내용을 조정함

4 조정 절차와 일정

1) 조정 절차

계획 수립 초기부터 조정완료시까지 합리적인 조정 절차 확립

- 제5차 권역계획조정은 계획수립 과정에 적합한 단계별 조정을 통해 최종계획시안에 대한 조정 및 수정 사항 등을 최소화함
- 권역계획 수립 주체(시 · 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 하고, 수립 초기부터 조정완료시까지 합리적인 조정 절차를 확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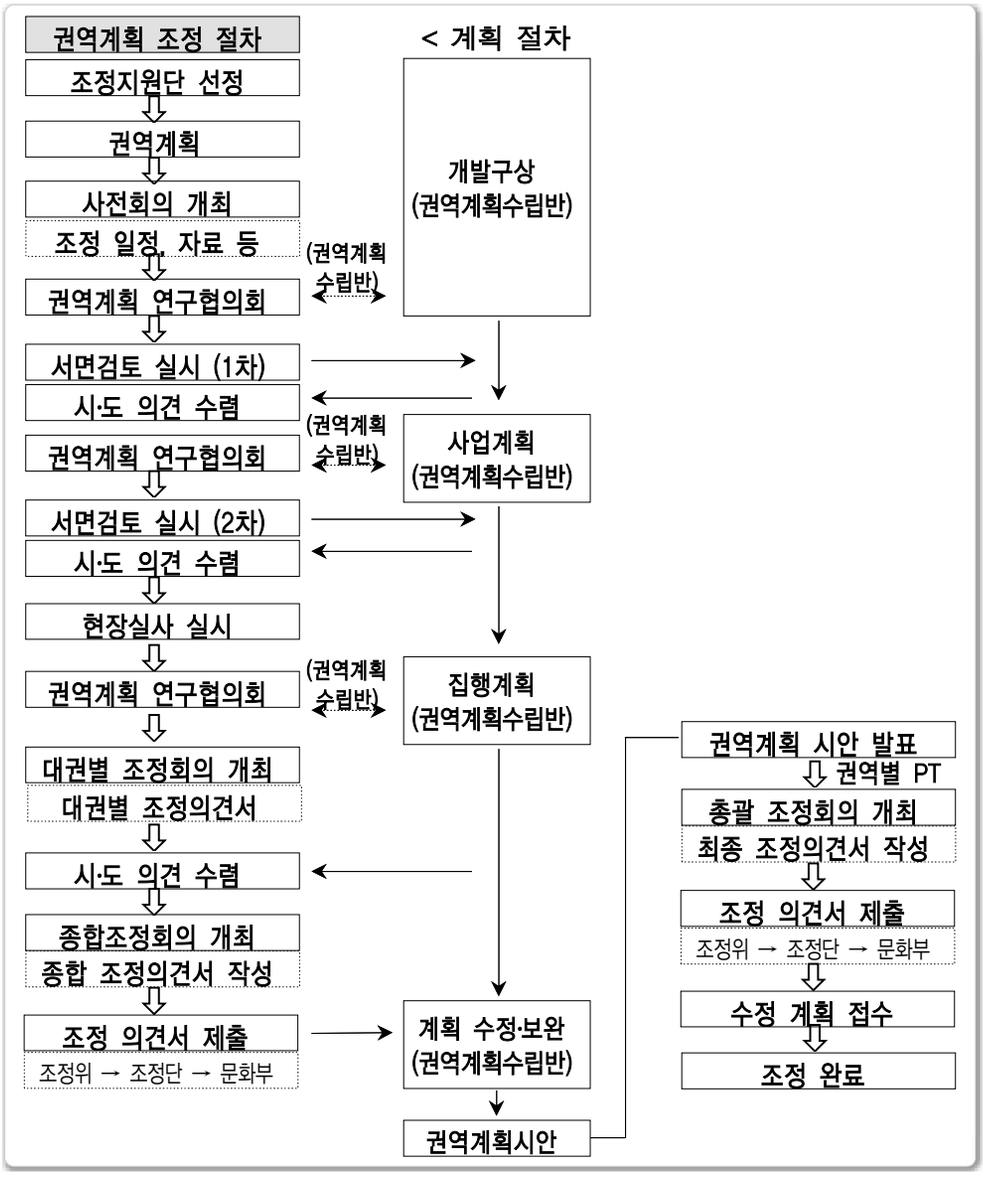

[그림 6.5] 제5차 권역계획 조정 절차

충분한 의견 조율을 위한 단계별 조정 절차 수립

- 조정기관과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충분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사전회의 개최, 권역계획 연구협의회 총 4차, 서면검토 2차, 대권별 조정회의, 종합 조정회의, 총괄 조정회의 등을 실시함
- 준비단계에서는 조정지원단 선정 및 권역계획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조정에 관한 사전 회의를 개최하며 권역계획 수립반과의 권역계획 연구협의회(1차/2차)를 실시함
- 1단계에서 조정 지표를 토대로 서면검토 총2회, 현장실사후 제시된 조정의견은 권역계획 수립반에게 송부하여 조정 의견을 권역계획 시안의 수정 · 보완 하도록 함
- 2단계에서는 대권별 조정위원회, 종합조정회의를 개최하며 서면검토 2회, 현장실사를 통하여 계획의 중복성 및 차별성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 의견을 제시함
- 3단계에서는 총괄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의 조정의견에 대한 수정 및 보완 내용을 확인 · 검토 후 최종 조정의견서를 작성함

〈표 6.8〉 제5차 권역계획 단계별 권역계획 수립반 주요 업무

구 분	조정 절차	권역계획 수립반 주요 업무
준비 단계	조정지원단 선정	–
	권역계획 조정위원회 구성	조정위원 선정 의견 제시
	사전회의 개최	–
	권역계획 연구협의회(1차/2차)	권역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 수렴
1단계	서면검토 실시(1차)	계획시안 자료 제출
	시 · 도 의견 수렴	시 · 도 의견서 제출
	권역계획 연구 협의회(3차)	권역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 수렴
	서면검토 실시(2차)	계획시안 자료 제출
	시 · 도 의견 수렴	시 · 도 의견서 제출
	현장실사 실시	현장실사 대상 사업 설명
	권역계획 연구협의회(4차)	권역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 수렴
2단계	대권별 조정회의 개최	–
	종합조정회의 개최	–
	종합 조정 의견서 제출	계획 수정 · 보완
	권역계획시안 발표	권역계획 설명
3단계	총괄 조정회의 개최	–
	조정 의견서 제출	–
	수정 계획 접수	계획 시안 제출
	조정 완료	–

2) 조정 일정

계획 수립 초기부터 조정완료시까지 합리적인 조정 일정 제시

- 권역계획 수립기간중 부문 조정을 위해 '10.09(서면검토 1차)와 '10.11(서면검토 2차)에 각각 계획내용을 제출하고, 총괄 조정을 위해 계획시안은 '11.02내에 완료함

〈표 6.9〉 제5차 권역계획 조정 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권역계획(안) 수립(11~12개월)																					
권역계획 조정 (9개월)																					
관계부처 협의 (3개월)																					
최종안 확정 (3개월)																					
권역계획 공고 (2개월)																					
부문조정	조정지원단 선정																				
	조정준비자료 작성																				
	조정위원회 구성																				
	권역계획 연구협의회 (1차)*																				
	사전회의 개최																				
	권역계획 연구협의회 (2차)*																				
	서면검토 제출 (1차)*																				
	서류검토 실시 (1차)																				
	시·도 의견수렴*																				
	권역계획 연구협의회 (3차)*																				
	서면검토 제출 (2차)*																				
	서류검토 실시 (2차)																				
	시·도 의견수렴*																				
	현장실사 실시																				
	대권별 조정회의 개최																				
	권역계획 연구협의회 (4차)*																				
	시·도 의견수렴*																				
	종합조정회의 개최																				
	대권별 조정의견서 제출																				
	권역계획시안 작성/제출*																				
총괄조정	권역계획시안 발표*																				
	총괄 조정회의 (1차)																				
	최종 조정의견서 제출																				
	계획수정·보완*																				
	수정계획 제출*/접수																				
	총괄 조정회의 (2차)																				
	조정 완료																				

※ 조정일정은 권역별로 서류검토, 현장실사 등의 진행과정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는 시·도 또는 권역계획 수립반에서 해당되는 사항

- 권역계획 수립기간 중 2차에 걸친 서면검토, 현장실사를 통해 계획 내용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고, 15개 시·도의 권역계획 작성 및 제출 이후 총괄 조정을 통해 조정을 완료함
- 1차 서면검토('10.09)에서의 주요 제출 내용은 계획의 개요,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의 적시성 등을 조정함
  - 검토 방법은 기본계획과의 연속성, 수급분석 적정성, 개발방향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조정함
  - 특히, 수급분석 중 권역 관광수요예측은 과대예측으로 인한 관광개발 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며, 공급분석의 경우 권역내 기존 관광개발사업의 누락으로 인한 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함
- 2차 서면검토('10.11)에서의 주요 제출내용은 관광개발 사업 계획, 관광진흥 사업 계획,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을 조정함
  - 사업 계획 내용을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현실성 등을 주로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토대로 향후 현장실사가 필요한 사업과 구체적인 개발입지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조정함
  - 특히, 관광개발 및 진흥사업의 경우 계속 사업 이외에 신규 사업중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권역의 개발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권역계획의 현실성을 높이 수 있도록 조정함
- 1차 서면검토('10.09)와 2차 서면검토('10.11)의 조정 의견을 권역계획 수립반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며, 입지가 있는 사업의 경우 현장실사를 통하여 사업에 대한 조정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현장실사는 대권별로 지역별 개발계획 입지 위치, 이동 거리, 사업 계획 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도·강원권 6일, 충청권 4일, 호남권 4일, 대경권 3일, 동남권 5일로 실시함
- 총 4차례에 걸친 권역계획 연구협의회는 권역계획 조정위원회와 권역계획 수립반 등이 계획수립 과정의 단계를 고려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협의함
  - 특히, 대권별 조정위원은 권역계획 시안 내용에 대한 조정 뿐 아니라, 권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과 현실적인 조정 의견을 통해 조정과 지원이 상호 이루어지도록 함
  - 계획 내용 결과에 대한 조정보다는 계획 수립과정상의 조정을 통해 전반적인 권역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부 록] *제5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지침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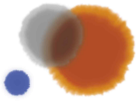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이 지침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기준을 제시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권역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광개발 여건 분석(관광여건 및 동향, 관광수급 등), 사업 계획(관광개발 사업 계획, 관광진흥 사업 계획 등), 집행계획 등 관련사항은 지역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산어촌개발, 환경정비, 도시, 경관 등 관광개발과 관련된 **분야별 별도지침**이 있을 경우 이에 따릅니다.

당해 권역의 특화된 관광개발을 위한 권역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본 지침의 내용은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에서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제5차 권역계획 수립의 개요 ····· 165
1. 계획 수립의 배경과 필요성 ····· 165
2. 권역계획의 시대적 변화 전망 ····· 166
3. 제5차 권역계획 수립의 대응과제 ····· 168
4. 제5차 권역계획 수립의 특징 ····· 169

Ⅱ. 제5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 ····· 171

제1장 총 칙 ····· 171
제1절 지침의 목적 및 의의 ····· 171
제2절 권역계획의 지위와 성격 ····· 171
제3절 법적 근거 ····· 173
제4절 지침의 구성 ····· 175

제2장 권역계획의 수립 범위 ····· 176
제1절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수립권자 ····· 176
제2절 계획 수립 목표 연도 ····· 176
제3절 권역계획의 수립 내용 ····· 177
제4절 계획수립의 기본 원칙 ····· 176
제5절 계획작성시 유의 사항 ····· 180

제3장 권역계획 수립 체계 ····· 183
제1절 권역계획의 수립 절차 ····· 183
제2절 권역계획의 수립 일정 ····· 185
제3절 권역계획의 수립 방법 ····· 187

제4장 부문별 세부 작성 요령 ····· 191
제1절 계획의 개요 ····· 191
제2절 관광개발 여건 분석 ····· 193
제3절 관광개발 사업 계획 ····· 200
제4절 관광사업 집행 계획 ····· 212

제5장 부 칙 ····· 214

Ⅰ. 제5차 권역계획 수립의 개요

1. 계획 수립의 배경과 필요성

□ 창의성 기반의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도모

○ 국가단위 중심 경쟁 패러다임이 지역, 도시 단위로 전환되고 있으며, 광역권역 단위의 경쟁력 강화, 지역별 특성화, 지역주도 발전의 중요성이 증가

○ 새 정부 지역발전전략은 광역경제권 단위의 규모의 경제 추구, 비교우위에 따른 특성화·차별화, 실질적 자율성 증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 따라서, 지식경제 기반에서 창의성 기반으로의 초변화(Hyper Change) 시대에 적합한 글로벌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도모 필요

□ 국토관광공간 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관광개발 정책수법의 연속성 확보

○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12~2021) 신규 수립,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07~2011) 사업기간 완료 등 국토관광공간과 관련된 계획 체계의 변화 수용

○ '관광개발 기본계획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 관광(단)지 조성계획 - 각종 관광자원개발계획'의 연계를 위한 입체적 계획 내용 및 정책수단 확보 마련

○ 지역관광개발 계획을 단편적으로 수립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특성화와 차별화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구체화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발전 잠재력 극대화 필요

□ 당해 권역의 5년간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필요

○ 권역내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지역관광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역중심의 장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단 마련

○ 계획기간동안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관광의 질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해야 할 종합적 시책들을 계획적으로 제시

○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목표를 설정하고, 부합하는 권역내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계획적 추진전략 제시 필요

※ 제5차 권역계획에서는 권역 관광개발 방향 등은 10년을 구상하고, 실행을 위한 5년 구상 반영

2. 권역계획의 시대적 변화 전망

□ (국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간 연계구조 변화 예상

○ 도시와 지역이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하고 광역단위의 경쟁력 강화가 글로벌 시각에서 핵심적인 지역발전정책으로 대두

○ 개별 공간단위로서 지역이 아닌 지역간 연계구조(Interregional Structure of Network)를 통한 다중심 지역 체계, 지역간 연계·협력 체계로 변화

-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적합한 국토구조 변화를 위해 3차원적(초광역개발권~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으로 신지역발전체계를 수립하고, 규모별 입체적 추진 전략 마련

□ (시장) 팍스 아시아나(Pax Asiana), 넥스트 아시아(Next Asia) 시대의 도래

○ 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 21세기 중반 중국·아시아시대로 역사적 전환이 재편되고 있으며, 중국·일본·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대의 발전 지속 전망

○ 아시아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는 패러다임 시프트(shift)를 의미하는 '아시아나이제이션(Asianization, 아시아가 주도하는 세계화)' 현상이 주도

- '08년 현재 ASEAN+6은 전세계 인구의 49.6%, GDP의 23.3%, 교역량의 25.2%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2030년 전 세계 GDP 비중이 24.0%, 아시아 비중은 53.4%로 전망

□ (환경) 글로벌 아젠다(Global Agenda)에 대한 중요성 심화와 수용 요구 증대

○ 환경오염, 기후변화, 금융위기, 그린뉴딜, 건강, 웰빙 등 21세기 국제사회의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심화

○ 특히, 기후변화, 그린뉴딜, 안전, 건강 등에 대한 핵심 이슈들은 국가 및 지역발전 정책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최우선 키워드로 부상

- '95년 탄소배출 축소와 관련된 논의 이후 '97년 교통의정서(Kyoto Protocol) 서명, '05년 발효이후 '09년 개발도상국 탄소배출 감축 등 저탄소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 강화

□ (산업) 그리노믹스(Greenomics)산업이 새로운 국제질서와 헤게머니로 등장

○ 정보기술(IT)과 환경, 에너지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그리노믹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

○ 전 세계는 그린뉴딜을 통해 글로벌 신성장엔진을 확보하고 제3의 산업혁명을 통해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증가

-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제시하고, '09년 관광산업 녹색성장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중장기 전략들을 제시

□ (사회) 인구 고령화 가속, 신소비계층 등장과 소비주체의 다각화 전망

○ 2020년 전후로 절대인구수는 감소할 전망이며, 출산율 저하 및 평균 수면연장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 다민족 사회의 도래로 문화 다양성 수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트라이슈머(Trysumer), 트랜슈머(Transumer), 그린슈머(Greensumer) 등 새로운 소비층 등장

- '09 UN 세계 인구 전망에서 '05~'10년, '10~'15년 평균 한국 출산율은 각각 1.22, 1.26으로 인구유지수준 2.08보다 낮은 전망치로 인력 수요가 많은 산업의 경우 심각한 문제 발생 가능을 예측

□ (기술) 초고속 네트워크 시대 전개와 소셜 인플루언스 마케팅 관심 증대

○ 고속철도 등으로 생활권·여가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초고속 정보망을 통해 시·공간적 제약요소가 해소

○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가 급성장 하면서 이를 활용한 소셜 인플루언스 마케팅(SIM, Social Influence Marketing)이 각광

- SNS(Social Network Service,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넷 친목 사이트 제공 서비스)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전망

3. 제5차 권역계획 수립의 대응과제

▶ **국토공간구조 변화 영향을 고려한 권역계획 수립**

○ 권역내의 국한된 분석 시각에서 벗어나 국토 전체 틀의 변화, 지역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변화, 대규모 국책사업의 영향 등을 고려한 비교우위의 통로(전략)를 수립

▶ **세계 경제, 사회, 문화 중심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권역계획 수립**

○ 팍스 아시아나(Pax Asiana), 넥스트 아시아(Next Asia) 시대의 도래, 인구 고령화와 소비주체의 다각화 등 글로벌 시장 및 인구변화요소를 고려

▶ **대외 관광개발 환경변화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한 권역계획 수립**

○ 초국경적 지역간 경쟁, 동북아 경제협력, 월경적 소지역간 협력구조, 글로벌 아젠다(Global Agenda)에 대한 중요성 심화 등을 고려

▶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을 반영한 권역계획 수립**

○ 저탄소 녹색성장, 관광산업 녹색성장의 이념을 구현하는 지역공간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 **경쟁력 있는 지역관광발전 창조를 위한 권역계획 수립**

○ 그리노믹스(Greenomics), 그린뉴딜, 지방분권·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적 발전체제 전환, 지역간 협력 및 상생 등이 반영된 전략 수립

▶ **환경, 삶의 질 등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 권역계획 수립**

○ 요소중심의 양적 수요를 넘어 문화적 질적 수요의 고조,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의식 증대, 녹색환경에 대한 국민 요구 등을 투영

▶ **다양한 관광자원개발 여건 기반을 제공하는 권역계획 수립**

○ 산, 강, 바다, 마을, 문화, 역사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고부가가치화하는 지역관광발전을 유도

4. 제5차 권역계획 수립의 특징

○ 제5차 권역계획은 제4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 조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하되, 권역계획의 지위와 성격 등에 적합한 계획내용을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계획방법 모색

	제4차 권역계획	제5차 권역계획
계획내용	**기존 계획의 평가체계 강화**	**계획 및 사업성과 평가 중심**
	- 제3차 권역계획 평가 - 기존 관광(단)지 사업 평가	**- 기존 계획 및 사업 평가체계 강화** · 제4차 권역계획 평가 · 기존 관광(단)지, 관광특구, 문화·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 평가 · 유사 타 부처 사업 평가
	계획 집행 실현성 제고	**사업 조정을 통한 실현가능성 제고**
	- 관광(단)지 추진 불가능 사업 배제 - 지자체 가용예산 분석	**- 기존 사업 평가를 통한 조정** · 권역내 유사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강화** · 신규 사업의 사전타당성 분석
	관광개발 수단 다각화	**지역관광 종합계획 성격 강조**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 중기적 관광종합계획 성격** · 관광개발사업(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광자원개발 등) · 관광진흥사업
	지역관광혁신체계 구축 방안 제시	**연계·협력형 사업 추진 강조**
	- 지역 관광개발주체 역량 강화 - 지역 관광개발 네트워크 방안	**- 연계·협력형 사업 발굴 제시 강조** · 권역(시·도)간 연계·협력형 사업 · 시·군간 연계·협력형 사업 **- 연계·협력형 사업추진 체계 방안**
계획 수립체계	**계획 사전검토체계 확립**	**계획수립 및 조정 동시 체계**
	- 문화부 조정전 최종시안 전문기관 검토	**- 문화부 조정전 최종시안 조정 검토** · 계획수립 기간중 단계 조정 · 계획수립 완료후 총괄 조정
	개방적 연구수립체계 확립	**계획수립지원 체계 확보**
	- 다양한 전문가 참여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계획수립지원을 위한 수립체계 확보** · 전문가 참여(조정 및 지원 기능) · 계획 수립주체간 계획내용 협의
	적정 연구수행체계 확보	**좌 동**
	- 합리적 연구예산 및 기간 확보	좌 동

□ **계획 및 사업성과의 평가체계 강화**

○ 제4차 권역계획 사업 기간 중 투입을 기준으로 한 평가(output-oriented)는 지양하고,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outcome-oriented)하여 수립방향을 설정

-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 문화·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각종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 우선순위 등을 제시

□ **사업조정을 통한 실현가능성 제고**

○ 기존 사업은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의 유형별 분석에 따른 조정과 사업추진 및 성과에 따른 분석을 근거로 자가 모니터링(self-monitoring)후 자발적 수립

○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별 세부계획이외에 개략적인 사전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 추진여부 결정

□ **중기적 지역관광종합계획 제시**

○ 관광진흥법상 권역계획내용중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확대·적용하여 관광개발사업과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연계·협력형 사업 발굴 및 활성화 권장**

○ 권역간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권역계획내 분야별로 지역간(시·도간, 시·군간) 연계·협력형 사업 계획 수립

- 초광역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의 국토공간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권역내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이외에 권역간 사업 발굴 추진

□ **계획수립과 조정 동시 추진 체계 제시**

○ 기존 선계획 수립 후조정 절차를 지양하고,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을 운영하여 계획수립 지원과 조정 의견을 반영

- 시·도의 제5차 권역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계획시안 수립 지원과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권역계획 수립반 (가칭)"을 운영하여 계획수립 기간중 계획내용에 대한 수립과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제시

Ⅱ. 제5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및 의의

1-1-1.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 및 제51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권역계획 수립시 해당 지침을 참조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1-1-2. 권역계획은 권역내 관광여건과 동향분석, 관광수요와 공급분석,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관광(단)지 조성・정비・보완 및 실적평가, 관광지 연계, 관광사업 추진, 환경보전, 기타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 등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다.

1-1-3. 권역계획은 권역의 관광개발 기본방향과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관광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 증대,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관광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발전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권역계획의 지위와 성격

1-2-1. 권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권역(시・도)이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권역내 관광개발방향 등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다.

1-2-2. 권역계획은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2-3. 권역계획은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도시, 농산어촌 등 관광자원개발 및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관광(단)지 조성계획, 관광특구 활성화 계획,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계획 등과 유사 다른 법률에 의한 관광개발계획 수립의 전략계획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 권역계획의 성격 >

▪ **기본계획이 선언적이고 국토관광개발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권역계획은 보다 실천적이며 구체화된 계획**

- 권역계획은 권역내 관광개발 대상을 표현하는 수법으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획일적·형식적 계획 수립을 지양

▪ **권역내 다차원적으로 추진되는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자가 모니터링(Self monitoring)으로 중복사업, 비현실적 사업 등에 대한 규제와 다양한 관광개발단위를 설정하는 계획**

- 권역계획의 주요 실행수단은 계획 실현을 위한 규제 수단(중복사업, 비현실 사업 등), 관광 개발을 위한 유도 수단(관광(단)지 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임

▪ **권역내 하드웨어적 관광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휴먼웨어적 관광진흥사업을 총괄하는 중기적 종합계획**

- 권역계획은 하드웨어적 관광개발사업 발굴을 포괄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한 관광진흥사업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포괄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법정 계획

- 기본계획을 권역차원에서 구체화 계획으로 기본계획의 개발방향을 수렴하면서, 권역내 여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수립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

② 관광권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종합 계획

- 권역계획은 관광(단)지, 관광특구 및 생태·문화·녹색 관광자원 등 개발 등 관광개발사업과 관광상품 및 코스, 관광축제 및 이벤트, 관광홍보 및 마케팅 관광진흥사업을 포괄하여 지역관광발전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종합 계획

③ 권역내 5년 단위의 중기적 실행 계획

- 권역의 관광여건과 관광잠재력을 최대한 반영하여 권역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서 관광권역 단위에서는 당해 지역의 5년간 관광개발에 대한 중기적 실행 계획

④ 권역내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계획

- 권역내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 진흥사업,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유사 타 부처 관광개발사업 등 통합적 측면에서 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평가 계획

< 권역계획의 위계 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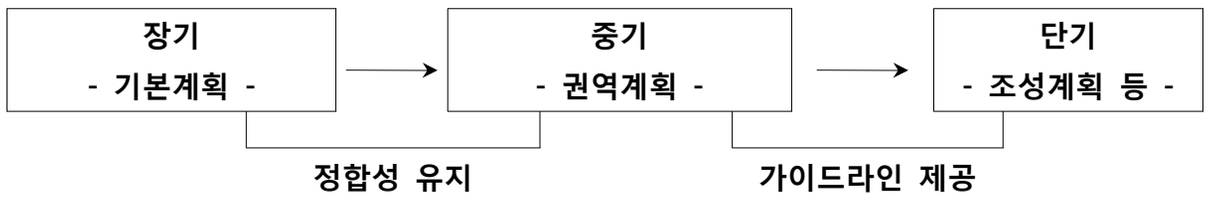

< 유사계획과의 관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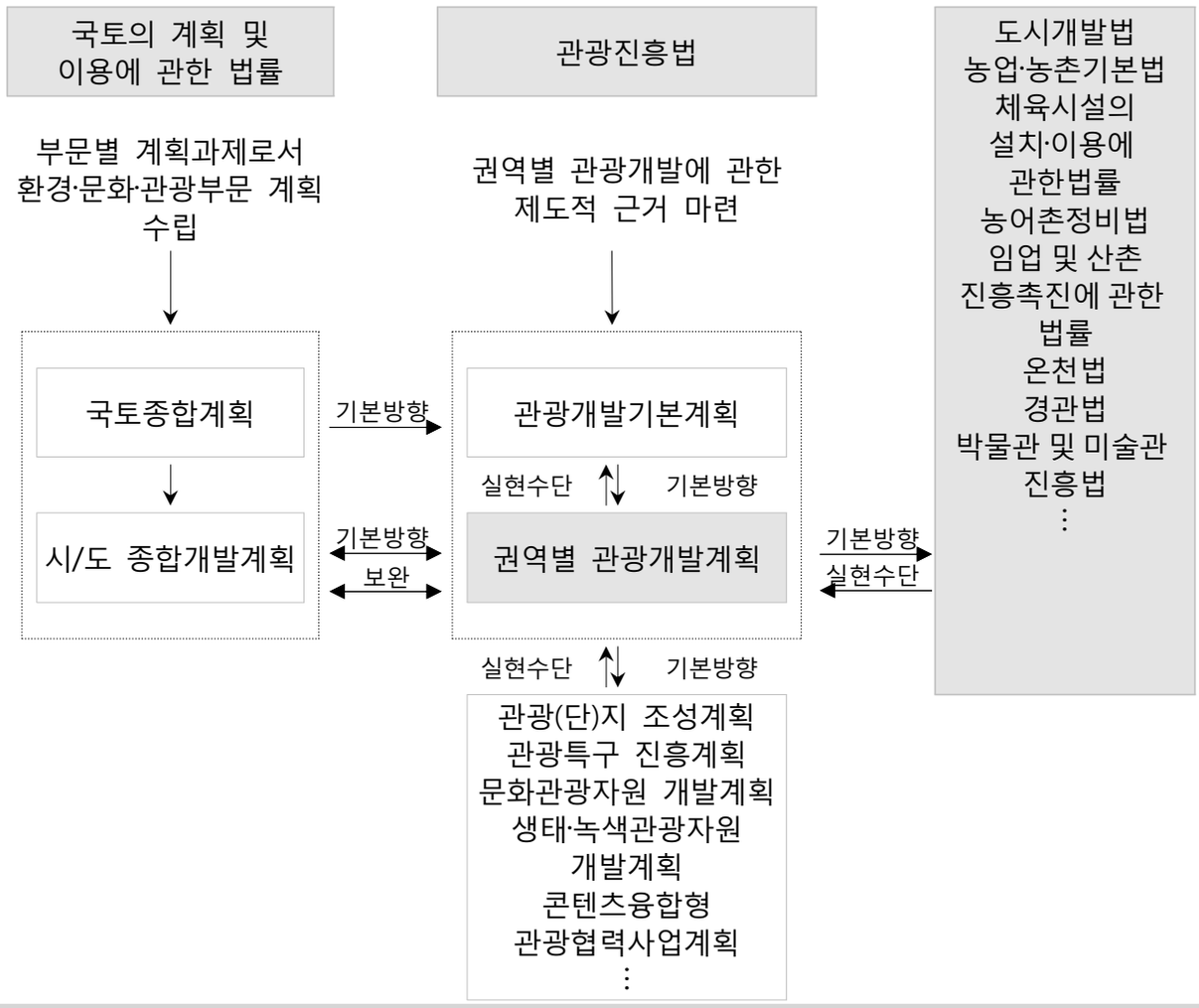

제3절 법적 근거

1-3-1. 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2. 법 제51조 (권역계획) ① 권역계획(권역계획)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갈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영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제4절 지침의 구성

1-4-1. 본 지침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본 지침의 목적 및 의의, 지위와 성격, 법적 근거, 구성내용 등을 제시한다.

1-4-2. 제2장에서는 권역계획의 수립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고, 계획 수립 목표 연도와 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계획 작성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계획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한다.

1-4-3. 제3장에서는 권역계획 수립시 효율적인 수립 체계와 수립 절차, 권역계획 수립 일정과 작성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4-4. 제4장에서는 권역계획의 기본방향과 부문별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을 제기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다.

1-4-5. 제5장에서는 본 지침의 시행일 등을 제시한다.

제2장 권역계획의 수립 범위

제1절 계획 수립대상지역 및 수립권자

2-1-1. 권역계획의 수립대상지역은 법 제49조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관광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권역간 관광자원에 대한 공동 또는 협력 사업의 있는 경우 인접 권역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 관광권역의 설정 >

- **제2차 기본계획(2002~2011)에서의 관광권역은 16개 광역시·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 **제5차 권역계획의 관광권역은 제3차 기본계획 수립전으로 구체적인 관광권역의 설정이 수립되기 전까지 이전 계획을 근간으로 15개 광역시·도별(제주도 제외) 권역계획을 수립함**

2-1-2. 권역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관계되는 시·도지사와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2-1-3. 권역계획의 수립주체는 법 제49조에 의거 관광권역을 관할하는 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이다.

2-1-4. 관광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2절 계획 수립 목표 연도

2-2-1.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한다.

< 제5차 권역계획의 목표연도 >

- **제5차 권역계획의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기간으로 하며, 계획수립의 기준연도는 2009년, 계획의 목표연도는 2016년으로 함**

2-2-2. 5개년 계획 기간내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당해 기간에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도 포함한다.

< 권역계획내 5년 이상 또는 일부 기간 포함 사업 >

- **권역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의 경우 또는 계획 기간내 일부 기간만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는 제5차 권역계획의 계획 기간내 사업내용 등을 별도로 제시함**

제3절 권역계획의 수립 내용

2-3-1. 권역계획의 수립 내용은 법 제49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광개발 여건 분석, 관광개발 사업 계획, 관광진흥 사업 계획, 관광사업 집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개발 여건 분석

①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

② 관광수급 분석

③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2) 관광개발 사업 계획

① 관광개발 목표 및 전략

② 관광개발 공간체계 구상

③ 전략별 관광개발계획

④ 관광(단)지 개발계획

(3) 관광진흥 사업 계획

① 관광상품 및 코스 계획

② 관광축제 및 이벤트 계획

③ 관광홍보 및 마케팅 계획

④ 관광안내 정보 체계 구축 계획

(4) 관광사업 집행 계획

① 사업 추진 체계

②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③ 개발효과 분석

2-3-2. 권역계획내 사업범위는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광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업외에 도시 또는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정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절 계획수립의 기본 원칙

2-4-1. 계획내용의 종합성 제고로 총체적 계획을 수립한다.

(1)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권역의 대내외 관광개발환경 변화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2) 계획내용은 관광개발 여건 분석을 토대로 권역에 적합한 강점·약점·기회·위협요인 등 종합분석을 통해 관광개발 목표 및 전략을 현실에 기반을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수립한다.

(3) 개발사업 계획은 권역내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문화·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 타 부처 관광개발사업 등 권역내 관광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4) 진흥사업 계획은 관광개발 사업 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진흥사업, 권역의 관광진흥을 위한 전략사업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5) 사업집행 계획은 중앙정부간, 지방정부간, 민관 등 개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하여 주체와 기관을 열거하고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한다.

2-4-2. 계획의 자율적 수립을 통한 독창성과 다양성, 유연성을 제고한다.

(1) '사전자율 사후책임'의 원칙하에 정해진 하나의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독창성이 확보되고, 계획내용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2) 권역계획은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2-4-3. 계획의 실행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권역계획은 계획의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권역내 관광개발 사업 계획 및 관광(단)지 지정 등과의 연계,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 조직 및 절차, 예산확보 및 재원조달, 주민참여계획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2) 권역계획내 개별 사업들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과 연동하여 실제 집행될 수 있는 실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4. 계획내용의 단계별 추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1) 계획내용의 수준과 상세정도는 단계별로 차등화 할 수 있다.

(2) 계획기간내 사업추진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계획에 반영한다.

2-4-5. 기존 계획 및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행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1) 기존 계획의 평가를 위해 계획 수립 절차(방법)의 적정성, 계획내용의 적합성 및 적절성, 추진실적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2) 기존 사업의 평가를 위해 사업별(관광(단)지, 관광특구, 문화·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 등)로 분류하여 추진 실적(예산 확보, 집행 실적 등), 관광객수 추이, 지역경제 효과 등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원안추진, 계획 보완(확대, 축소, 통합 등), 추진 취소 등 사업추진여부를 유형화하도록 한다.

(3) 사업별 평가를 통해 유형화된 사업추진여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한다.

(4) 신규 사업은 유사 중복성, 실현가능성 등 사업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객관적 평가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2-4-6. 이해관계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1) 권역계획의 개발방향과 전략, 관광개발 사업 계획, 관광진흥 사업 계획, 관광사업 집행 계획 등 계획의 전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관계행정기관,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이를 위해 계획 수립 절차상 공청회, 정책토론회, 설문조사(관광객, 지역주민),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5절 계획작성시 유의 사항

2-5-1. 권역계획의 작성은 다음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3-1에 따른 관광개발 여건 분석, 관광개발 사업 계획, 관광진흥 사업 계획, 관광사업 집행 계획의 누락이 없을 것

(2) 기본계획의 권역의 관광개발에 대한 기본방향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미 수립된 국가·지역계획과 일관성·정합성을 유지할 것

(3)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것

① 자료출처의 명시

② 통계자료는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며, 추세분석에 있어서는 적절한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

(4) 적절한 계획기법을 적용하고, 추진전략이나 근거 및 계획내용을 설명하는 각종 현황도, 기본계획도를 필요시는 작성하여 첨부할 것

(5) 계획의 논리와 합리성이 확보되고, 계획내용이 양적으로 적정할 것

2-5-2. 관광개발 여건 분석

(1) 권역내의 자원 및 현황분석 이외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변화되는 미래 환경을 전망하여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분석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2) 분석내용은 타 권역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권역 관광개발방향 및 목표 등을 설정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일반적 분석이외에 지역 관광경쟁력 분석 등 구체적 분석요소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3) 관광수급분석은 권역내의 관광개발의 적정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수요예측에 따른 공급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 계획에서 제시되도록 한다.

(4) 종합분석은 다양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분석도구를 사용하며, 계획과제는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의 내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계획의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2-5-3. 관광개발 사업 계획

(1) 권역계획의 목표와 전략은 관광사업계획과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하고, 사업계획은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환류(feedback)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해당 권역의 관광공간 구조를 설정하고 소권역 설정시 기준 및 고려요소를 객관적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공간간 차별화 및 연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총체적 관광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2-5-4. 관광진흥 사업 계획

(1) 관광개발 사업 계획이 향후 5년 동안 추진시 필요한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2) 관광진흥 사업의 범위는 권역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하도록 설정하며, 권역의 특성에 따라 특정분야를 세분화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2-5-5. 관광사업 집행 계획

(1) 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실행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관광개발사업, 관광진흥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라 분류후 가용재원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2) 관광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권역내 추진 사업들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계획기간중 추진가능한 현실성 높은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2-5-6. 성과물의 작성

(1) 권역계획 작성시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에 혼란이 없도록 계획내용과 용어는 관련법에 근거한 정의를 기반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명료하여야 한다.

(2) 권역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어야 하므로 계획내용이 포함된 계획서와 자료집을 구분하고, 자료집에는 의견수렴절차와 반영정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권역계획의 수립 체계

제1절 권역계획의 수립 절차

3-1-1. 권역계획은 법 제51조(권역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작성, 조정한 후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3-1-2. 권역계획의 법적 수립 절차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권역계획시안을 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공고한다.

3-1-3. 확정된 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장과의 협의를 갈음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 영 제43조에 따라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1-3-1에 따른 권역계획의 1. 관광 여건과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1-3-1에 따른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4의 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변경 사항

가. 관광자원의 보호·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권역계획상의 관광지, 관광단지 면적의 축소

다. 권역계획상의 관광지, 관광단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확대

라. 지형여건 등에 따른 관광, 관광단지 등의 구역 조정(그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이나 명칭 변경

3-1-5. 권역계획의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립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지침을 시달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권역별 계획을 취합하며, 조정방법 및 절차는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는 권역계획(안)의 계획체계 및 내용 등을 심사하여 시·도와 협의·조정하고, 시·도지사는 협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작성한다.

(4) 시·도지사는 협의·조정결과가 반영된 최종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권역계획을 확정하고 공고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는 권역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지원단 또는 원활한 계획 조정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립절차	주체	내용
계획수립 지침의 작성·송부	문화체육관광부	•권역계획 수립연도의 여건을 고려한 계획수립 지침 작성
⇩ ➡		- 광역자치단체 지침 시달, 설명회 개최
권역계획(안) 작성	시·도지사	•권역계획(안) 수립
권역계획(안) 부문 조정	문화체육관광부	•권역계획(안) 부문 조정
⇩		- 문화체육관광부 단계별 조정
권역별 계획 취합 및 통합 조정	문화체육관광부	•권역계획(안)의 통합 조정
⇩ ➡		- 문화체육관광부 총괄 조정
최종계획안 작성	시·도지사	•조정결과를 종합하여 권역계획 작성
⇩ ➡		- 문화체육관광부 (경유)
관계부처 협의	관계부처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부) 등
⇩		- 의견제시 (30일 이내)
최종안 확정/공고	시·도지사	•권역계획 확정, 공고

제2절 권역계획의 수립 일정

3-2-1. 문화체육관광부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권역계획 수립기간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및 조정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도록 한다.

3-2-2. 권역계획 수립기간은 권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연도를 계획기간 2년 전으로 설정하며 계획 수립 및 조정,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한다.

< 제5차 권역계획의 수립연도 >

- **제2차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로 제3차 권역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4차 권역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임**
- **권역계획 수립지침은 제4차의 경우 2005년에 시달되었으며, 제5차의 경우 2010년에 시달하여 2011년 내에 계획(안)을 확정함**

3-2-3. 권역계획을 수립하는 시·도는 권역계획의 지위와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 규모를 계획 수립연도 이전에 확정·반영하여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5차 권역계획의 수립 예산 >

- **제5차 권역계획은 2009년에 예산을 확정하여, 계획 수립연도인 2010년에 집행하고, 제6차 권역계획은 2014년에 적정한 예산 규모를 확보하여 2015년 집행토록 함**
- **권역계획의 수립 예산은 권역계획의 위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권역 관광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내용이 되도록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

3-2-4. 시·도는 권역계획 수립연도 이전에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및 계획체계 등의 구성을 완료하도록 한다.

3-2-5.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에서 수립한 권역계획을 취합하여 계획수립연도 익년도까지 협의·조정하고, 시·도는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기간 이전에 확정·공고하도록 한다.

< 제5차 권역계획의 수립 절차 및 일정 (예정) >

- 제5차 권역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과 동기간에 계획이 수립되어, 기본계획에서 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과 권역계획에서 관광개발의 목표와 방향간의 상호보완(Feedback) 과정을 위한 기본계획-권역계획 계획수립 관계자간 협의체 등이 필요함
- 권역계획(안) 수립 완료시점에서 계획 조정에 대한 내용을 시·도에 전달되어 계획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효율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수립 과정상 계획내용에 대한 부문·조정으로 계획 완료후 계획 내용 수정을 최소화 함

구 분	추진 일정	계획 일정	추진 사항
권역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추진	2009. 3월 ~5월	-	<문화부> - 계획수립 예산반영 및 행정추진 지침 송부 <시·도> - 예산 반영 추진
계획수립 지침의 작성·송부	2010. 2~3	·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지침 및 조정 방안 연구	<문화부> - 계획수립 지침 송부 <시·도> -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비
계획(안) 수립	2010. 3/4 ~ 2011. 2 (12개월)	· 권역계획(안) 작성완료 (약 11~12개월)	<시·도> - 계획(안) 수립
계획(안) 부문 조정	2010. 8 ~ 2011. 2 (7개월)	· 권역계획(안) 부문조정 (약 7개월)	<문화부> - 계획(안) 조정 (부문)
계획(안) 총괄 조정	2011. 2 ~ 2011. 4 (2개월)	· 권역계획(안) 총괄조정 (약 2개월) · 권역계획(안) 조정완료	<문화부> - 계획(안) 조정 (총괄) <시·도> - 협의·조정의견 반영 (수정·보완)
관계부처 협의	2011. 6 ~ 8 (3개월)	· 관계행정기관 협의 (환경부 등)	<관계행정기관> - 계획(안) 의견 제시 <시·도> - 의견 반영
최종안 확정·공고	2011. 9 ~ 10 (2개월)	· 최종안 확정·공고	<시·도> - 최종안 공고
권역계획 발효	2012. 1	· 제5차 권역계획 발효	

제3절 권역계획의 수립 방법

3-3-1. 권역별로 계획수립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 T/F로서 「권역계획수립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T/F는 시·도 및 시·군 관계자를 중심으로 계획수립수행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3-3-2. 「권역계획수립반」은 권역계획 최종안 공고전까지 운영하며, 구성된 인원은 권역계획(안) 수립, 권역계획(안) 협의·조정, 관계행정기관 협의, 최종안 확정·공고의 수립 절차상 일련의 과정에 모두 참여하여 계획수립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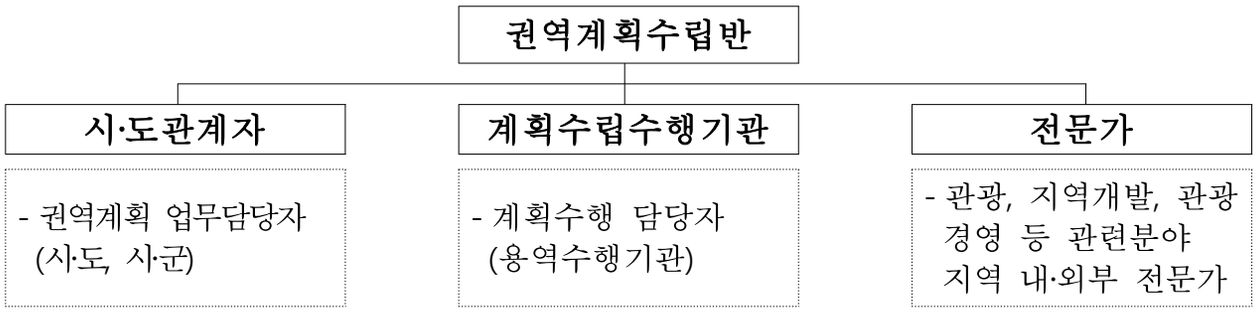

3-3-3. 관광개발 목표 및 전략, 관광개발 기본 구상, 관광개발 사업 계획, 관광진흥 사업 계획, 관광사업 집행 계획 등 계획과정의 전 단계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지역구성원과 지역 내·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3-4. 권역계획 수립기간중 공청회, 간담회, 자문회의, 정책토론회, 설문조사(관광객, 지역주민, 투자자 등)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3-3-5. 권역계획은 지역여건 및 특성,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발굴하며, 권역간 협력사업 선정 및 사업별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재원별 투자계획을 시·도가 계획수립 주체가 되어 수립하도록 한다.

3-3-6. 권역계획의 수립은 법정 계획내용을 일반적 계획내용에 따라 제시하여 원활한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제5차 권역계획의 주요 내용 >

법정 계획 내용	제5차 권역계획 내용
-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 - 관광수급 분석 -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관광개발 목표 및 전략 - 관광개발 사업 계획중 관광개발 공간체계 구상 / 전략별 관광개발계획 - 관광진흥 사업 계획
-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관광개발 사업 계획 중 관광(단)지 개발계획
-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사업추진체계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개발 효과 분석

< 제5차 권역계획의 작성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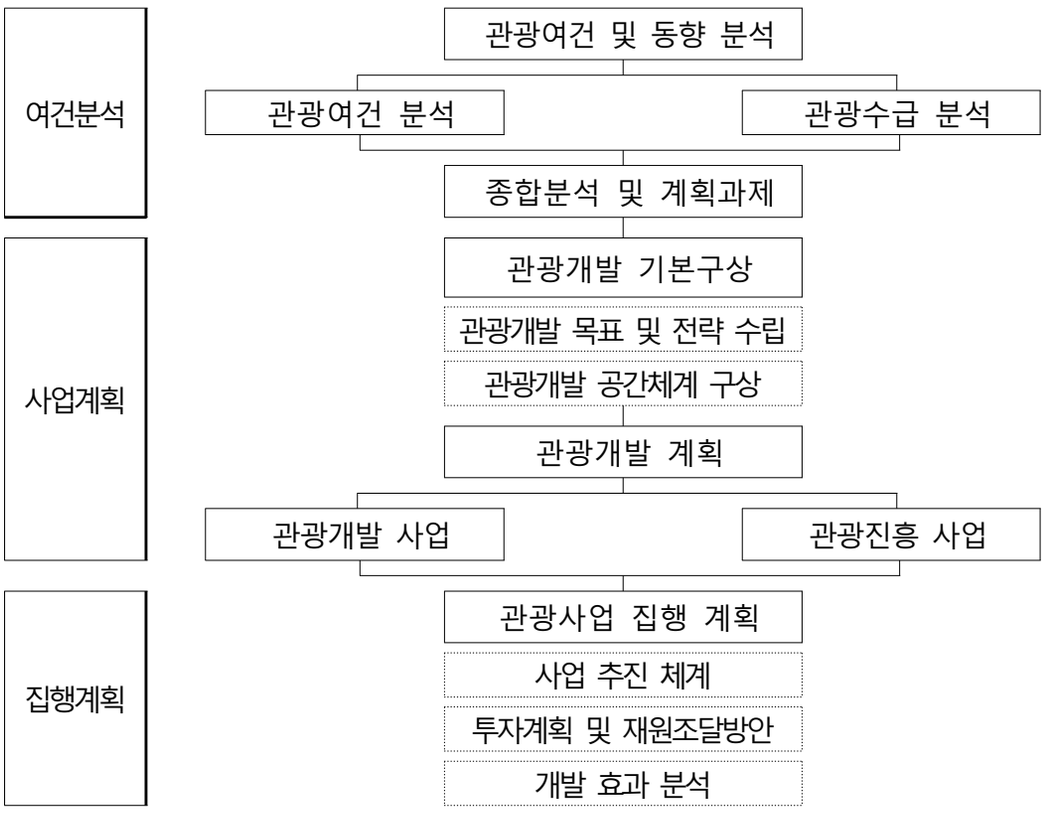

< 제5차 권역계획의 목차(안) >

제1절 계획의 개요

1. 계획 수립의 개요

1) 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1) 배경과 목적

(2) 수립 범위

2) 계획 수립의 추진체계와 절차

(1) 계획 수립 추진체계

(2) 추진절차 및 경과

제2절 관광개발 여건 분석

2.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

1) 관광개발 환경 분석

(1) 일반환경 변화 및 전망

(2) 관광환경 변화 및 전망

2) 지역개발 여건 분석

(1) 지역현황 분석

(2) 관광현황 분석

(3) 집행현황 분석

3) 제4차 권역계획 평가

(1) 계획수립 평가

(2) 계획내용 평가

(3) 추진실적 평가

(4) 종합평가 및 개선방향

4) 관광수급 분석

(1) 관광수요 예측

(2) 관광수급 분석

5)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1) 종합분석

(2) 계획과제 및 잠재력 분석

제3절 관광개발 사업 계획

3. 관광개발 기본구상

1) 개발비전 및 목표

2) 추진 전략

3) 관광개발 공간체계

(1) 공간체계 구상

(2) 공간별 개발 방향

4. 관광개발 사업 계획

1) 기존 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1)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

(2) 관광특구 평가
(3) 유사 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

2) 전략별 관광개발 계획**
(1)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분야
(2) 관광지 연계·협력 분야
(3) 환경보전 분야

3) 관광(단)지 개발 계획*
(1) 기존 관광(단)지 평가 및 정비·보완계획
가. 기존 관광(단)지 추진실적 평가
나. 기존 관광(단)지 정비·보완 계획
(2) 신규 관광(단)지 개발계획
가. 신규 관광(단)지 선정
나. 신규 관광(단)지 개발계획

4)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1) 기존 관광개발사업별 검토 결과 및 저감방안
(2) 신규 관광개발사업별 검토 결과 및 저감방안

5. 관광진흥 사업 계획**
1) 관광상품 및 코스 계획 분야
2) 관광축제 및 이벤트 계획 분야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계획 분야
4) 관광안내정보체계 구축 계획 분야

제4절 관광사업 집행 계획

6. 관광사업 집행 계획
1)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 추진 방식
(2) 사업 추진 일정
(3) 지원 체계 정비

2)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1) 투자계획
(2) 재원조달 방안

3) 개발효과 분석
(1) 경제적 파급효과
(2)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

주1) *표시된 항목은 권역내 해당되는 자원 또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하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주2) **표시된 항목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권역의 특성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주체가 자율적으로 항목을 추가/수정/삭제 등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주3) 표시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제시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포함시키되, 계획수립주체가 필요시 자율적으로 항목을 추가/수정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제4장 부문별 세부 작성 요령

< 제5차 권역계획의 기본 작성 요령 >

- **부문별 세부 작성 요령은 권역계획의 주요 계획요소와 고려사항을 권역별 계획수립주체의 상이로 발생할 수 있는 계획내용의 충실성과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예시적 사항이므로, 권역의 상황 및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체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제5차 권역계획의 목차(안)에 따라 세부 목차의 순서별로 설명하고 필요에 따라 예시적 내용을 포함함**

제1절 계획의 개요

1. 계획 수립의 개요

ㅇ 계획 수립의 개요는 권역별로 계획 수립에 대한 대강을 제시하는 도입부분으로서 계획 수립의 기초적인 작업에 해당한다.
ㅇ 계획 수립의 개요는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계획의 범위, 계획의 수립체계와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4-1-1. 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1) 배경과 목적

① 수립배경은 계획수립의 상황적 맥락과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되, 기본계획의 권역차원에서의 구체화, 권역특성에 부합하는 관광개발방향 및 전략 수립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② 수립배경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향후 5년간 권역관광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제시

< 예시 : 계획 수립의 배경 >

- **00권은 풍부한 문화, 역사,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역 관광발전을 도모하지 못하여 왔음**
- **권역단위의 체계적인 관광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추진기반을 계획하여 지역관광경쟁력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2) 수립 범위

① 계획 수립의 범위는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기술

< 예시 : 계획 수립의 범위 >

- **시간적 범위 : 2012년 ~ 2016년 (5년)**
- **공간적 범위 : 00시/도 (2010년 현재 해당 광역시·도의 행정구역)**
- **내용적 범위 : 관광진흥법 제49조의 사항을 포함하여 동지침 2-3-1에 따라 보완·조정하여 작성**

4-1-2. 계획 수립의 추진체계와 절차

(1) 계획 수립 추진체계

① 계획 수립 추진체계는 권역계획 수립에 참여한 주체와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는 것으로 동지침 3-3-1에 따라 권역계획수립반을 포함한 계획 수립의 추진체계와 역할분담을 모식도를 통해 제시

< 예시 : 계획 수립의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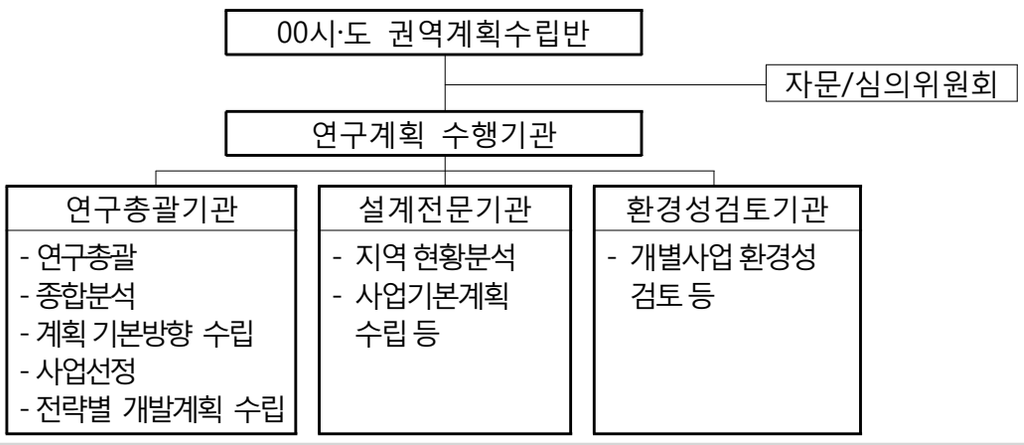

(2) 추진절차 및 경과

② 계획 수립 절차와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한 절차 등을 시간대 순으로 기술하되, 공청회, 정책토론회, 설문조사(관광객, 지역주민),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전체 수행과정을 계획과정도로 시술

< 예시 : 계획 수립의 절차 >

날 짜	주 요 행 사	주 요 내 용
0000년 0월 0일	00시 권역계획수립반 구성	공무원, 연구수행기관, 전문가 등
0000년 0월 0일	00권 관광개발계획 토론회	전문가, 권역계획수립반 등
0000년 0월 0일	00권 관광개발계획 설문조사	관광객, 지역주민 등
0000년 0월 0일	. . .	
0000년 0월 0일	00권 관광개발계획 설명회 개최	지역주민 등에게 계획내용 설명
0000년 0월 0일	. . .	

제2절 관광개발 여건 분석

2.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

○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은 권역 관광개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관광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영향요인, 권역관광자원 및 시설현황, 관련계획·제도의 검토와 잠재력 등을 분석하는 것임

○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은 관광개발 환경 분석, 지역개발 여건 분석, 제4차 권역계획 평가, 관광수급 분석,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등의 목차로 구성함

4-2-1. 관광개발 환경 분석

< 제5차 권역계획 수립시 관광개발 환경 분석 필요성 >

- **권역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권역관광개발에 대한 기본방향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되므로, 기본계획 수립후 권역별 방향에 적합한 구체화된 개발방향을 제시해야 함**
- **제5차 권역계획의 경우 제3차 기본계획과 동기간에 수립되어 제5차 권역계획에서 권역에 대한 향후 10년의 개발방향을 구상하고, 권역계획에는 구체화된 5년의 개발방향 등을 제시하도록 함**
- **기존 권역계획에서 권역내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의 여건과 동향을 분석하였으나, 제5차 권역계획에서는 권역외의 거시적인 환경분석 및 전망 등이 필요함**

(1) 일반환경 변화 및 전망

① 동 지침에서 제시된 권역계획의 시대적 변화 전망을 토대로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내외 제반 환경을 중심으로 권역 관광개발과 관련된 현안문제 등을 파악

②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제반 환경의 분석은 단순한 현상적 나열보다는 현상 이면의 영향요인과 메카니즘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정리

(2) 관광환경 변화 및 전망

① 일반환경 변화와 전망의 부문별 제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문화관광부문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국내외 관광부문의 변화를 파악하여 잠재력 발굴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②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관광환경의 분석은 단순한 현상적 나열보다는 현상 이면의 영향요인과 메카니즘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정리

4-2-2. 지역개발 여건 분석

(1) 지역현황 분석

① 해당 지역의 자연적 여건, 인문·사회적 특성, 지역 보유 관광자원 및 시설, 경제·문화·사회적 특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상을 나열하기보다는 전국, 권역 등 계층적 분석단위를 설정하여 제시

② 권역의 자연지리적 입지, 인문사회적 여건, 경제적 특성,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공간구조적 특성 등 권역내 관광개발과 관련된 제약요인, 발전 잠재력을 파악

③ 인접 권역의 비교우위요소 등 권역의 관광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 발굴을 중점으로 하며, 가능한 관련 지표나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리

④ 각각의 분석항목은 권역내 행정단위로 분석하되, 전국대비, 권역내 지역간, 연도별 증감 추이 등을 분석하여 정리

⑤ 지역현황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지역현황 및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을 사용하여 도면화하여 제시

< 예시 : 지역현황 분석 (항목) >

구 분	세부 내용
입지적 여건	위치, 면적, 접근체계, 행정구역/면적 등
자연현황	지형 및 지세, 기후, 수문 및 수계, 댐, 산림, 하천, 해역 등
인문현황	인구규모, 인구구성, 인구구조, 인구증감 등
지역경제	지역총생산, 고용지표, 산업구조 등
환경현황	사전환경성 검토에 요구되는 지역·지구·구역 등의 현황 (자연환경보전 관련지역, 환경기준, 녹지자연도, 주요 보호대상지역 및 시설물 등)
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망, 생활권, 문화권 등

(2) 관광현황 분석

① 권역내의 관광자원 현황, 관광개발(관광시설, 관광상품 등) 현황, 관광시장(관광객, 관광행태 등) 현황 등을 분석하여 권역 관광개발의 제약요인 및 문제점, 발전 잠재력 등의 영향요인을 제시

② 관광개발은 관광시설(관광숙박시설, 컨벤션시설, 관광객이용시설, 관광편의시설 등)과 관광상품(여행상품, 축제·이벤트 등)을 중심으로 정리·분석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에 각 부처에서 개발·관리하여 관광객의 이용에 활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유형(유원지, 주제공원, 마을, 거리, 길, 공원, 어항, 산림휴양, 문화재 등) 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제시

③ 각각의 분석은 가급적 권역내 시·군 단위로 집계하여 권역 단위로 파악하되, 필요시 전국 또는 인접 권역과의 비교 및 추세를 검토

④ 관광현황에 대한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인터뷰조사,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고, 권역 관광현황 및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적을 사용하여 각종 자원분포도, 시설분포도 등을 도면화하여 제시

< 예시 : 관광현황 분석 (항목) >

구 분	세부 내용
관광자원 현황	자연관광자원, 인문관광자원 등
관광개발 현황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광시설, 관광상품, 관광인력 등
관광시장 현황	관광객수, 관광행태(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등

(3) 집행현황 분석

① 관광개발과 관련된 계획(중앙/지방정부 등), 법규, 제도, 재원, 조직 등을 검토하여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② 집행현황은 관련계획 분석, 관련법규 분석, 관련제도 분석, 관련재원 분석, 관련조직 분석 등의 항목을 포함

③ 관련계획은 전국, 광역, 시·군 등 계획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외에 타 부처의 주요 관련계획 등을 분석하여 제시

④ 관련계획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광역권 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등과 당해 권역의 관광개발과 관련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수립 계획을 포함

⑤ 관련법규는 관광개발진흥 관련법, 환경보전 관련법, 행·재정지원 관련법 등 법규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

⑥ 관련제도는 지역관광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신정부 지역발전정책 등을 분석하여 관광개발의 절차와 수법, 기회 및 제약요인 등을 파악

⑦ 관련재원은 관광개발에 투자되어온 각종 재원(국비, 지방비, 각종 기금, 민자)등에 대한 유형, 규모 및 추세 등을 분석하여 집행계획 수립의 실현성을 제고

⑧ 관련조직은 권역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관광협회, 지방공사 등 관광개발과 관련된 상설, 비상설 조직의 현황과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집행계획 수립시 효율성을 제고

4-2-3. 제4차 권역계획 평가

(1) 계획수립 평가

① 제4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상 수립절차에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 계획수립주체, 계획수립 기간, 계획수립 방법, 계획수립 체계 등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

② 계획수립 절차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 예산과 기간을 확보하고, 개방적인 연구체계가 확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자체 평가

(2) 계획내용 평가

① 제4차 권역계획 수립 지침상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 부문, 관광수급 부문,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부문, 관광개발 방향 수립 부문, 공간체계 구상부문, 관광(단)지 개발계획 부문, 전략별 관광개발계획 부문, 투자계획 부문 등 부문별로 적절성과 실현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② 내용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적절하게 혼용하여 분석하되, 구체적 평가 지표 산정이 가능한 경우 제시

(3) 추진실적 평가

① 제4차 권역계획 기간내 관광객 증감 현황, 관광(단)지 조성 투자 및 집행 실적,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실적,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

② 추진실적 평가는 제4차 권역계획상과 제5차 권역계획 수립연도까지의 정량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다른 평가방법을 통해 실시

(4) 종합평가 및 개선방향

① 제4차 권역계획의 계획수립과 계획내용, 추진실적 등을 요약·정리하여 계획상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분석 제시

② 종합평가 및 개선방향을 통해 제5차 권역계획 수립에의 시사점 및 기본방침 등을 제시

4-2-4. 관광수급 분석

(1) 관광수요 예측

① 관광수요는 다양한 예측모형을 사용하여 적정 수요를 산정하되 수요예측의 결과가 과대 예측되지 않도록 하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수요를 제시

② 관광수요는 권역의 시·군별, 내국인과 외국인, 지역, 숙박과 당일, 관광행태 등 가능한 세부화 하여 예측하며, 제5차 권역계획 조사기준 시점인 2009년 수요와 계획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수요를 전년대비 증가율 등으로 연차별 제시

③ 관광수요 예측은 추세수요, 보정수요, 목표수요 등의 단계별 절차를 통해 제시하며, 분석의 방법에 따라 다른 예측 절차의 적용도 가능

(2) 관광수급 분석

① 권역내 요구되는 관광개발의 유형과 적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권역의 미래 관광수요와 관광공급을 산정하여 분석

② 관광공급 산정은 관광수요의 대상이 되는 권역내 타부처 사업을 포괄하여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의 현황을 근거로 산정

③ 관광객이 방문시기, 주요 활동 등 수요적인 측면과 관광자원 및 시설현황 등 공급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분석을 실시하되, 기본적으로 총량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

4-2-5.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1) 종합분석

① 권역 관광개발의 내부적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SWOT 분석 행렬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정리

② 종합분석은 관광개발 환경 분석, 지역개발 여건 분석, 제4차 권역계획 평가 그리고 관광수급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일반적 내용이 아닌 권역에 밀접한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제시

③ 분석시 권역 관광개발의 비교우위요소의 상호보완을 통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정리하여 제시

< SWOT분석 >

- SWOT는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의 약자로서 강점은 내부적인 비교우위성 내지는 잠재력을 의미하며, 약점은 내부적인 취약성을 의미하고, 기회는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발전의 기회요인을 나타내고 위협은 외부적 환경변화에 의해 초래될 위협요인을 말함
- 각 지역이 처한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SWOT 분석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기법임

< SWOT 분석 행렬표 >

		내부환경요인분석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es)
외부환경 요인분석	기회요인 (Opportunities)	(Leverage)	(Constrains)
	위협요인 (Threats)	(Vulnerability)	(Problem)

(2) 계획과제

① 종합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권역이 갖는 강점을 살리면서 외부적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약점과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

② 계획과제는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계획 및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적 간명하게 제시

제3절 관광개발 사업 계획

3. 관광개발 기본구상

ㅇ **관광개발 기본구상은 지역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권역 관광개발의 발전을 위하여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을 토대로 해당 권역이 향후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정립하고, 실현가능한 목표와 최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전략을 수립함**

ㅇ **관광개발 기본구상은 개발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관광개발 공간체계 설정, 공간별 개발 방향 수립 등의 목차로 구성하여 제시함**

4-3-1. 개발비전 및 목표

① 개발비전 또는 최종목표(Vision or Goals) - 중간목표 (Objectives) - 추진전략(Strategies)의 체계로 계층화된 그림으로 표현하고, 체계간 논리와 관계에 대하여 해설

② 개발비전은 해당 권역관광개발에 있어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발전된 상을 종합·압축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상위관련계획과의 상관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필요한 경우 하나의 캐치 프레이즈로 표현

③ 비전과 목표의 설정은 논리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권역 특성에 부합된 실현성이 전제된 내용으로 제시

< 개발비전의 요건 >

- 관련계획의 개발 기본방향과의 정합성을 유지함
- 현재 시점의 긍정적인 문체로 기술함
- 해당 권역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함
- 계획기간내에 개발 비전이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하며,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관광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④ 개발목표는 권역의 개발비전에 따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발전지표로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로 제시하고, 2009년과 목표연도인 2016년을 기준으로 관광객, 관광개발, 관광시설 지표 등을 제시

⑤ 개발목표는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5년 이내 실현가능한 핵심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실현 전략을 핵심적으로 표현

< 예시 : 개발비전과 목표 >

▪ 개발비전 또는 최종목표는 한 개, 개발목표는 3~5개, 실현 전략은 개발목표별로 3~5개 정도로 제시토록 함

4-3-2. 추진전략

①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정책 또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강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② 관광개발 사업과 관광진흥 사업 등 권역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세부사업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시하며, 권역에 따라 부문 조정은 가능

4-3-3. 관광개발 공간체계

(1) 공간체계 구상

① 권역내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거나, 다양한 관광특성이 혼재하는 경우 계획의 편의를 위해 차별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여한 소권을 설정

② 권역 전체의 공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권을 설정할 경우 관광자원의 유사성 및 차별성, 관광 자원간 연계성, 접근성, 문화적 특이성 등을 분석기준으로 설정하여 구분

③ 공간체계는 단순히 자원 또는 행정구역 단위에서 구분되어지기 보다는 복합화된 지역 공간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별 공간이론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

(2) 공간별 개발방향

① 구분된 소권별로 지역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타 소권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미래지향적인 개발방향을 제시

② 각 공간이 하나의 권역으로서 개발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등과 연계성을 갖도록 충분히 표현

③ 소권의 범위와 개발방향, 소권내 거점 등 공간별 개발방향과 전략 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을 사용하여 도면화하여 제시

< 작성시 고려사항 >

▪ 권역 전체가 하나의 도면으로 표현될 수 있는 축적을 사용
  - 시군 경계가 표현되고 권역전체로 파악될 수 있는 1:250,000 지도 사용
▪ 권역내 소권의 개발방향과 주요 자원, 시설, 사업들의 위치를 표현

4. 관광개발 사업 계획

ㅇ 관광개발 사업 계획은 권역의 관광개발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별 세부 내용을 제시하며, 권역내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제시함
ㅇ 법정계획내용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광(단)지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ㅇ 관광개발 사업 계획은 권역내에서 추진가능한 단독사업과 인접 권역과 연계·협력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4-3-4. 기존 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1)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

① 권역내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주체, 사업기간, 투자비, 사업내용 등이 포함된 총괄표를 작성

② 평가는 권역계획의 계획기간내 추진성과를 중점으로 평가하며, 권역 관광개발방향과의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유용성, 추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③ 평가항목 및 기준은 권역내 포함된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정후 사업추진여부를 제시

④ 평가는 「권역계획수립반」에 의한 서면검토와 현장실사 등 다면평가를 실시

< 예시 : 문화 및 녹색·생태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기준 >

평가기준 (예시)	세부 평가항목 (예시)
목표의 부합성	- 상위계획 및 개발목표와의 일관성 등
지역 특화성	- 지역 특화성 및 차별성 등
자원의 고유성	- 문화자원의 고유성, 진정성, 신기성 등 - 생태적 가치 보존의 필요성 등
자원의 시장성	- 브랜드화 가능성, 콘텐츠 경쟁력 등
집행 실적	- 계획공정 일치성, 예산 집행 실적 등
투자 실적	- 국비, 지방비, 민간 투자실적 등
자원 및 시설관리	- 자원 및 시설의 지속적 관리 등
관광객 유치 효과	- 관광객 및 지역주민 이용수
기타	-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사회 영향, 지역환경영향 등

[자료] 문화관광부(2007.2),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

(2) 관광특구 평가

① 매년 시·도에서 평가하는 진흥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일면평가가 아닌 권역계획 기간중의 추진실적 및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② 평가는 「권역계획수립반」에 의한 서면검토와 현장실사 등 다면평가를 통해 실시

< 예시 : 관광특구 평가기준 >

평가기준 (예시)	세부 평가항목 (예시)
특구지정 적합성	- 부지상태 적정성 (관광활동 관련 토지비율 증가 등) - 특구내 시설의 편의성 (특구내 관광시설 평가 등) - 외국인 관광객수 충족 여부 등
특구사업 잠재성	- 관광마케팅 및 프로그램 다양성 등
특구사업 효율성	- 집행 실적, 방문 관광객수 증가 추이 등
특구사업 미래성	- 행정체계 및 지원 적정성, 시설관리 주기, 지역주민 참여도, 제도개선 실적 등

[자료] 문화관광부(2008.1), 관광특구 평가 및 개선방안

(3) 유사 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

① 유사 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사업 이외에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현황을 분석

② 사업방향 및 내용 등이 권역계획의 개발방향과의 부합성, 사업내용의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여부(통합 추진, 축소, 확대, 변경 등)를 유형화하여 제시

③ 평가기준 및 항목, 평가방법은 권역내 포함된 유사 관광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설정

4-3-5. 전략별 관광개발계획

(1)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분야

① 관광(단)지, 관광특구,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등을 포함하여 권역의 역사·예술, 생활자원 등을 소재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을 제시

②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사업,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사업,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권역의 특화관광자원 개발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제시

③ 동 지침 4-3-4. 기존 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5년 동안의 권역계획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관광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을 선별하여 제시

(2) 관광지(자원) 연계·협력 분야

① 권역내 또는 인접 권역간 연계의 필요성이 높은 관광개발 대상지 및 관광자원에 대한 연계 또는 협력사업을 수립하여 제시

②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인접 권역와 연계·협력하여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로 사업계획을 작성

③ 초광역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지역발전계획과 광역형 관광개발(서해안, 동해안, 지리산, 중부내륙권 등)의 기존 및 신규 사업 등과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

④ 연계·협력 사업계획은 사업개요, 사업내용(위치, 여건, 사업내용), 사업집행(사업기간, 사업주체, 투자규모, 사업효과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단년 사업과 다년 사업을 명기하여 각 권역별 역할분담 등을 제시

⑤ 관광지(자원) 연계·협력 분야의 경우 반드시 별도로 작성되어져야 하며, 수립과정에서 연계·협력사업과 관련된 인접 권역의 「권역계획수립반」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

(3) 환경보전 분야

①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 이용계획 수립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개발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관리방안을 제시

② 환경보전 분야는 별도로 작성되어 질 수도 있으며, 권역의 특성 및 계획내용에 따라 개별사업의 분야로 제시 가능

③ 문화체육관광부의 「저탄소 녹색 관광자원개발 가이드라인(2009.03)」을 활용하여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보전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제시

4-3-6. 관광(단)지 개발 계획

(1) 기존 관광(단)지 평가 및 정비·보완계획

가. 기존 관광(단)지 추진실적 평가

① 권역내 기존 관광(단)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과 권역시기별로 범례에 별도로 표기하고, 총괄표를 작성하며 총괄표에는 4-3-2. 관광개발 공간체계에 따라 구분된 소권별로 구분

② 총괄표에는 관광(단)지명, 관할 시·군, 위치, 지정 면적, 투자비, 최초 지정일, 최초 승인일, 조성사업 착수시기, 지정승인 착수기간, 사업기간 등을 포함

③ 기존 관광(단)지의 사업전망도, 사업추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사업을 원안 추진, 계획 보완(확대, 축소, 통합 등), 추진 취소 등으로 유형화 하고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설정

④ 원안 추진 사업의 경우는 사업추진도, 사업전망도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관광(단)지에 대해서 사업 추진 우선 순위를 설정

⑤ 계획 보완 사업의 경우는 사업전망도는 우수하나 사업추진도가 미진한 관광(단)지에 대해서 재개발(remodeling) 등 기존 사업내용을 확대, 전환, 축소, 통합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

⑥ 추진 취소 사업은 관광(단)지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에 지정 취소 및 조성계획 승인 실효 상실 등을 검토

⑦ 평가결과 기존 관광(단)지의 면적 및 계획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으로 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

< 예시 : 기존 관광(단)지 평가기준 >

평가기준 (예시)		세부 평가항목 (예시)
사업 추진도	투자실적	- 계획대비 국비, 지방비, 민간 투자율 등
	집행실적	- 계획대비 공공, 민간 집행율 등
	부지확보 정도	- 토지매입율, 지장물 현황, 토지소유현황 등
	인허가추진 정도	- 조성계획 수립여부, 지정후 조성사업 착수기간, 조성사업후 경과기간, 추진상황 등
	기 타	- 권역 특성을 고려한 항목 설정
사업 전망도	전략적 역할 수행 정도	- 관광거점 기능·역할 수행, 자원의 매력, 차별성·특화성·상징성·연계가능성 등
	관광객 유치 실적	- 평균 연간 방문 관광객수, 연도별 증가율 등
	개발 추진 의지	- 지자체 개발 의지 등
	민자유치 가능성	- 민자유치를 위한 추진 실적 등
	기 타	- 권역 특성을 고려한 항목 설정

⑧ 기존 관광(단)지 평가기준은 각 권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정하고, 평가과정에서 각 평가는 반드시 권역계획수립반의 서면검토와 현장실사 등 종합평가를 통해 결과를 도출

나. 기존 관광(단)지 정비・보완계획

① 기존 관광(단)지 평가결과를 4-3-2. 관광개발 공간체계에 따라 구분된 소권별로 구분하고, 관광(단)지명, 위치, 지정면적, 평가결과 등이 포함된 총괄표를 작성

② 기존 관광(단)지 정비・보완계획은 개별 관광(단)지별로 작성되어야 하며, 유형화된 평가결과 원안 추진, 계획 보완(확대, 축소, 통합 등), 추진 취소중 원안추진의 경우는 계획내용을 명료하게 요약・정리

③ 계획 보완의 경우 변경된 계획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개발여건 분석,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개발방향 및 도입가능시설, 관광시설계획(기존 및 변경 토지이용계획표, 토지이용계획도, 시설면적표, 시설배치도 등) 등을 표현

④ 각 도면은 관광(단)지의 지구계, 토지이용구분, 시설배치현황 등이 총괄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축척을 사용

(2) 신규 관광(단)지 개발계획

가. 신규 관광(단)지 선정

① 권역의 관광객 수 변화 추이 및 관광수요 예측 결과, 관광자원의 특성 및 권역계획의 개발 방향 등을 고려하여 권역내 신규 관광(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합리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신규 관광(단)지 지정여부를 결정

② 신규 관광(단)지 선정은 각 시·도가 개발계획의 자원성, 시장성, 환경성, 기대효과 등을 적정한 선정기준으로 설정한 후 추진가능한 사업을 평가과정을 거쳐 기준에 부합되는 적정 입지를 제시하고, 관광(단)지 지정의 계획내용을 제시

③ 권역내 신규 관광(단)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과 4-3-2. 관광개발 공간체계에 따라 구분된 소권별로 구분된 총괄표에 관광(단)지명, 위치, 규모, 개발방향 등을 정리하여 제시

< 예시 : 신규 관광(단)지 평가기준 >

평가기준 (예시)	세부 평가항목 (예시)
개발방향	- 상위계획 및 개발목표와의 일관성 등 -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여부
차별성	- 관광(단)지의 주제 및 계획내용의 차별성 등
수급분석	- 수요 및 공급분석 예측결과의 적정성 등
경제성	- 개발타당성 분석 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등
자원 및 시설계획	- 관광(단)지 시설계획 및 자원관리 계획 내용 등
투자가능성	- 재원조달 가능성 및 민자유치 실현정도 등
토지확보율	- 토지확보 용이성 및 기확보 면적 등
기대효과	-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지역관광발전 기대효과 등

나. 신규 관광(단)지 개발계획

① 신규 관광(단)지 개발계획은 개별 관광(단)지별로 제시하며, 사업개요, 개발여건 분석, 개발기본구상, 사업추진계획 등으로 구성

② 개발기본구상은 개발 목표와 전략, 도입시설 및 규모, 공간 및 시설배분 구상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시설계획(안)을 포함시키며 신규 관광(단)지의 구상안을 별도 도면으로 제시

③ 신규 관광(단)지 입지 선정 및 개발방향 수립시 사전환경성 검토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에 반영

<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내용 >

- 대상지역안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 현황
-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자료]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2009.8), 사전환경성 검토 매뉴얼

④ 관광지 등의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반드시 개발계획내용에 포함

< 시행규칙 제58조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

①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 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4.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6.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18의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3-7.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1) 기존 관광개발 사업별 검토 결과 및 저감방안

① 기존 관광개발사업의 계획내용 변경 등으로 사전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검토내용을 적시하고 결과를 제시

② 기존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는 제4차 권역계획에 제시된 관광개발사업별로 적시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2) 신규 관광개발 사업별 검토 결과 및 저감방안

① 신규 관광개발사업의 계획내용 변경 등으로 사전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검토내용을 적시하고 결과를 제시

② 신규 관광개발 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는 관광개발사업별로 검토 대상 사업의 경우 실시하고 검토 결과를 권역계획 수립 연구기관에 제출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 >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의의

-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table>
<tr><th>행정계획</th><th>개발사업</th></tr>
<tr><td>(1) 관광개발기본계획
(2) 권역별관광개발계획
(3) 관광지등의 지정
(4)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5)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6)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7) 군립공원계획의 결정</td><td>- 보존용도지역에서의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
-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보존용도지역에서의 5,000㎡ ~ 50,000㎡ 이상의 개발 사업
<table>
<tr><th>구 분</th><th>5,000㎡이상</th><th>7,500㎡이상</th><th>10,000㎡이상</th><th>50,000㎡이상</th></tr>
<tr><td>국토법</td><td>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td><td>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td><td>계획관리지역</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r>
</table>

▪ 사전환경성검토 작성내용

-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 현황
- 대상지역안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구역 등의 분포 현황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 규모, 특성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5. 관광진흥 사업 계획

○ 관광진흥 사업 계획은 기존의 하드웨어 개발 중심에서 소프트 웨어 중심의 개발을 지향하여 관광상품 및 코스, 관광축제 및 이벤트, 관광홍보 및 이벤트, 관광안내정보, 관광인력 양성 등 다양항 소프트웨어 전략 사업계획을 수립함

○ 관광진흥 사업 계획은 권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권역의 특화 진흥 사업이 있는 경우 아래 제시된 항목을 조정하여 계획을 수립함

4-3-8. 관광상품 및 코스 계획

(1) 관광상품 계획

① 권역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분석하여 미래 관광행태 및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별하여 제시

② 관광상품은 기존의 시·도, 시·군의 관광상품의 특성, 인접 권역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2) 관광루트 및 코스 계획

① 관광루트는 권역내에 국한되기 보다는 인접 또는 권역의 지리적 입지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권역을 상징할 수 있도록 제시

② 관광코스는 지역특화형의 관광코스로 현재 운영중인 관광코스와 향후 운영시 상품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

4-3-9. 관광축제 및 이벤트 계획

① 권역내에서 개최되는 1년간의 관광축제, 지역축제, 문화축제 등을 검토하여 통합하거나, 동시개최시 상품성이 우수한 축제를 선별하여 제시

② 기존 축제이외에 권역에서 향후 5년간 중점으로 신규로 추진되어야 할 축제 아이템 등을 구체화하여 사업화 계획 제시

4-3-10. 관광홍보 및 마케팅 계획

① 관광홍보, 관광마케팅, 관광인력, 관광브랜드 등 관광홍보와 관련된 진흥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구체화하여 제시

② 기존의 단순 사항의 나열식 접근보다는 권역의 관광개발방향 등에 부합한 홍보 및 마케팅 계획 등을 제시

4-3-11. 관광안내정보체계 구축 계획

① 관광안내정보체계 및 활용 계획은 기존 및 권역계획내 포함된 관광개발 및 진흥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진국형의 안내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

② 이외에 관광안내정보와 관련된 관광인력전문화 방안 등에 대한 권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제4절 관광사업 집행 계획

6. 사업 집행 계획

○ **기존 혹은 신규 관광개발사업을 권역에서 직접 수행 하기 위한 추진방식 설정, 일정, 관련기구 및 조직을 설치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것임**
○ **사업 집행 계획은 사업 추진 체계, 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개발효과 분석 부분으로 구성함**

4-4-1.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 추진 방식

① 권역내 기존 계속사업 또는 단독사업에 포함되는 경우 개발근거법 및 향후 사업 추진 방식을 제시

② 권역간 연계·협력사업의 경우 협력주체, 주체별 사업, 중앙정부 정책연계 추진 등이 포함된 사업 추진 방식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주체들간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

(2) 사업 추진 일정

① 권역계획에서 제시된 기존 또는 신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5년간의 사업 추진일정을 구분하여 제시

② 신규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행정 절차, 토지수용, 사업추진 등 단계별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제시

(3) 지원 체계 정비

① 권역계획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인력 확보 및 전문화, 조직의 구성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② 민관간 협력을 통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신규 조직의 구성, 기존 조직의 강화, 민간 협력 촉진방안 등을 수립하여 제시

③ 관광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관광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제시

4-4-2.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1) 투자계획

① 권역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존 또는 신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를 추정하여 제시

② 소요 투자비는 투자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총액을 먼저 제시한 후 연차별로 작성하고, 투자계획은 연차별·재원별로 백만 원 단위로 작성하여 제시

(2) 재원조달 방안

① 권역내 관광개발사업의 개별적 혹은 공동으로 기획한 기존 및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조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② 재원조달은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고, 공공은 국비, 지방비(도비, 시군비) 등을 구분하고 활용 가능한 재원을 검토하여 방안을 수립

③ 지방재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광개발부문에 조달가능한 재원의 규모를 분석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

④ 재원조달계획은 신재원의 발굴 등 공공부문의 재원확충방안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

4-4-3. 개발효과 분석

(1) 경제적 파급효과

① 각종 관광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객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고용·부가가치·소득·조세 등 각 부문별로 계량적으로 추정함

②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분석 자료는 2007년 한국은행에서 작성된 전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당해 권역 및 관광산업에 적합하게 분석

(2)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

① 각종 관광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가능한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 예측

② 부정적 측면의 경우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제5장 부 칙

5-1.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2. (적용범위) 이 치침은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용되며,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확정·공고되어 발효되는 2012년 1월까지 적용된다.

5-3. (계획 착수 시기)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계획 수립 착수 시기는 제3차 기본계획 및 권역별 조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10년 3~4월에 광역자치단체별로 동시 착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4. (계획 수립 기간)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권역계획(안)에 대한 부문 및 총괄 조정 등 계획 수립 기간중 조정 및 보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5-5. (권역계획수립반 협의)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계획수립반은 권역간 연계·협력 부문(사업)을 광역경제권별로 총괄될 수 있도록 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광역권 관광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5-6. (계획 수립 예산) 제5차 권역계획의 성격, 위상 등과 권역의 관광경쟁력 제고 및 관광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계획임을 고려하여 충분한 예산을 통해 계획내용의 양적·질적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조정 방안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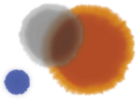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Ⅰ. 조정의 개요

1. 조정 근거

□ 관광진흥법 제51조 제2항

○ 시·도지사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권역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 관광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

▪ ① 권역계획(권역계획)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정 목적

□ 상위계획과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

○ 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관광개발기본계획(기본계획)의 권역구분을 근거로 하여 수립되는 권역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내용 등 상위계획을 구체화한 권역내 5년 단위의 중기적 실행계획임

○ 따라서, 권역계획은 관광진흥법상 장기계획인 동시에 상위계획인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하는 기본방향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책수립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권역간 계획내용의 충실성과 수준 제고

○ 권역계획은 15개 계획수립주체가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발적 수립(self-making)으로 개별 단위 관광개발 및 진흥사업 등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권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종합계획임

○ 계획수립의 공간적 범위가 시·도로 한정되어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중복으로 인해 권역의 측면에서는 관광개발을 저해하고, 전국적 측면에서는 행정 및 예산 등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음

○ 계획수립주체 및 수립절차 등의 상이로 인해 권역계획의 지위와 성격에 부합하는 수준과 계획내용의 도출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권역내의 5년 계획이 아닌 전국의 5년 단위 계획으로서 위상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권역계획의 현실성과 구체성 강화

○ 권역계획은 권역내 5년 중기적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계획수립기간중 발굴된 사업들이 실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별 권역 계획내용의 타당성, 구체성 및 전략성이 확보되어야 함

○ 권역계획 수립기간중 타 권역계획과의 차별성 제고, 권역의 특성 반영 등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정의견을 반영하여 실행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3. 조정 범위

□ 15개 시·도의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안)의 주요 계획내용

구 분		세부 계획내용
여건분석	계획의 개요	- 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범위, 추진 체계, 절차 및 경과 등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	- 일반환경 변화 및 전망, 관광환경 변화 및 전망, 지역현황, 관광현황, 집행현황 등 -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평가 등
	관광수급 분석	- 관광수요 예측, 관광공급 산정, 수급 분석 등
사업계획	관광개발 기본구상	- 개발비전 및 목표, 추진 전략 등 - 관광개발 공간체계 구상, 공간별 개발 방향 등
	관광개발 사업 계획	- 기존 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전략별 관광개발계획 등 - 기존 관광(단)지 평가 및 정비·보완계획, 신규 관광(단)지 개발계획 등
	관광진흥 사업 계획	- 관광상품 및 코스, 관광축제 및 이벤트, 관광홍보 및 마케팅, 관광안내정보체계 등
집행계획	사업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방식, 사업 추진 일정, 지원 체계 정비 등
	투자 및 재원조달방안	- 투자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
	개발효과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 등

□ 권역계획의 특성을 고려한 항목별 계획내용의 조정

○ 권역계획은 권역내의 특성과 여건,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내용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특화시키는 전략적 종합계획임

○ 권역계획의 조정 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계획내용이나 권역계획으로서의 성격과 지위에 적합한 필수적인 내용을 중점으로 조정하여, 권역계획의 일률화, 계획내용의 획일화 등을 최소화함

○ 권역계획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법정 계획, 관광권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종합계획, 권역내 5년 단위의 중기적 실행계획, 권역내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등 계획의 성격과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며,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계획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필수조정 항목을 분류함

구 분		세부 계획내용	서면검토		현장
			필수	선택	실사
여건분석	계획의 개요	- 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범위, 추진 체계, 절차 및 경과 등	◎	-	-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	- 일반환경 변화 및 전망, 관광환경 변화 및 전망, 지역현황, 관광현황, 집행현황 등	-	◎	-
		-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평가 등	◎	-	-
	관광수급 분석	- 관광수요 예측, 관광공급 산정, 수급 분석 등	◎	-	-
사업계획	관광개발 기본구상	- 개발비전 및 목표, 추진 전략 등	◎	-	-
		- 관광개발 공간체계 구상, 공간별 개발 방향 등	◎	-	-
	관광개발 사업 계획	- 기존 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전략별 관광개발계획 등 - 기존 관광(단)지 평가 및 정비·보완계획, 신규 관광(단)지 개발계획 등	◎	-	◎
	관광진흥 사업 계획	- 관광상품 및 코스, 관광축제 및 이벤트, 관광홍보 및 마케팅, 관광안내정보체계 등	-	◎	◎
집행계획	사업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방식, 사업 추진 일정, 지원 체계 정비 등	◎	-	-
	투자 및 재원조달방안	- 투자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	◎	-	-
	개발효과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 등	-	◎	-

Ⅱ. 제5차 권역계획 조정 방안

1. 조정 방향

□ 상위 계획상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등을 조정

○ 권역계획의 수립과정중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권역의 관광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등 상위 계획 및 국가정책 목표 등과의 부합성 등을 조정함

- 제3차 기본계획과 제5차 권역계획의 수립 기간 동일성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내의 개발방향에 대한 설정시 권역계획과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조정함

□ 계획수립 내용의 타당성, 구체성 및 실현성 등을 조정

○ 권역계획내 관광개발 사업 및 관광진흥 사업 등에 대한 사업별 타당성을 확보하고, 구체성 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함

- 권역계획내 사업에 대한 조정후 5년내 권역에서 실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실현성에 중점을 두고 객관적으로 조정함

□ 계획수립 과정상 부문 조정, 통합 조정 등을 통해 현실적인 조정 절차 수행

○ 계획시안 작성 완료후 계획내용 등에 대한 조정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계획수립 과정상 계획내용에 대한 조정을 통해 계획수립과 조정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는 조정 절차를 확보함

- 계획 수립과정상 계획수립 주체와 조정 주체간 의견 협의를 통해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하고, 계획수립이후 발생되는 계획내용의 수정 등을 최소화함

□ 계획수립 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수렴하여 조정

○ 조정시 계획 수립 기관(시·도 또는 권역계획 수립반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며, 객관적인 조정 체계 확보하여 조정함

- 일방적인 조정으로 인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조정 방법(서류검토 또는 현장실사 등) 등을 통해 조정 의견을 제시함

2. 조정 전략

□ 권역계획에 대한 항목별 내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종합 조정 지표 구성

○ 조정 지표는 권역계획의 질적·양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권역계획에 적합한 필수 항목을 추출하여 조정위원회 평가방향의 기준을 제시함

○ 권역계획의 성격 및 방법 등에 적합한 계획의 내용, 체계, 예산, 수립과정 등 부문별 내용과 관광개발 여건 분석, 관광개발 사업 계획, 관광개발 집행 계획 등 항목별 내용 등을 조정하는 지표를 구성함

□ 서면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한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조정의견 제시

○ 권역계획 조정은 제5차 권역계획 수립기간 중 수립 절차와 일정 등을 고려한 서면검토와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현실성 있는 의견을 제시, 일반적인 조정사항보다는 조정위원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함

○ 계획 수립 전 계획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서면검토를 2회 실시하며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획내용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함

□ 계획수립 초기부터 완료시까지 계획 프로세스를 고려한 단계별 조정 실행

○ 계획수립의 혼란 발생 및 효율성 저하를 위하여 권역계획 수립 단계 초기부터 계획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단계별 조정을 실시하므로 단계별 조정 이후 계획의 순차적 수립을 유도함

○ 계획수립초기부터 조정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환류(Feed-Back)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 완료시 조정에 대한 의견을 최소화 함

□ 권역별, 분야별 심층 조정을 통한 조정의견의 현실성 강화

○ 조정위원회는 권역별 조정과 전문분야별 조정을 실시하며 심층적인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현실성을 강화한 각 전문가의 조정 의견을 제시함

3. 조정 체계 및 운영

1) 조정 체계

□ 제3차 기본계획 및 제5차 권역계획 수립 체계와 조정 체계

○ 제5차 권역계획 수립반은 제3차 기본계획의 계획수립 협의체에 참여하며, 권역계획 조정위원회는 권역계획 수립기간중 계획내용에 대한 조정의견을 제시함

○ 권역별로 계획수립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 제5차 권역계획 수립반은 각 시·도의 관계자, 계획수립 수행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권역계획(안) 협의·조정,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 조정의 모든 과정에 참여함

○ 권역계획 조정위원회는 권역별·전문분야별 전문가로 구분하여 권역계획의 효율적 평가 및 조정을 위하여 권역계획 수립기간 중 조정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수시로 의견을 제시함

○ 제5차 권역계획 수립반은 제3차 기본계획 계획수립 협의체에 참여하여 기본 계획에서 제시하는 기본방향의 연속성과 정책 수립의 일관성을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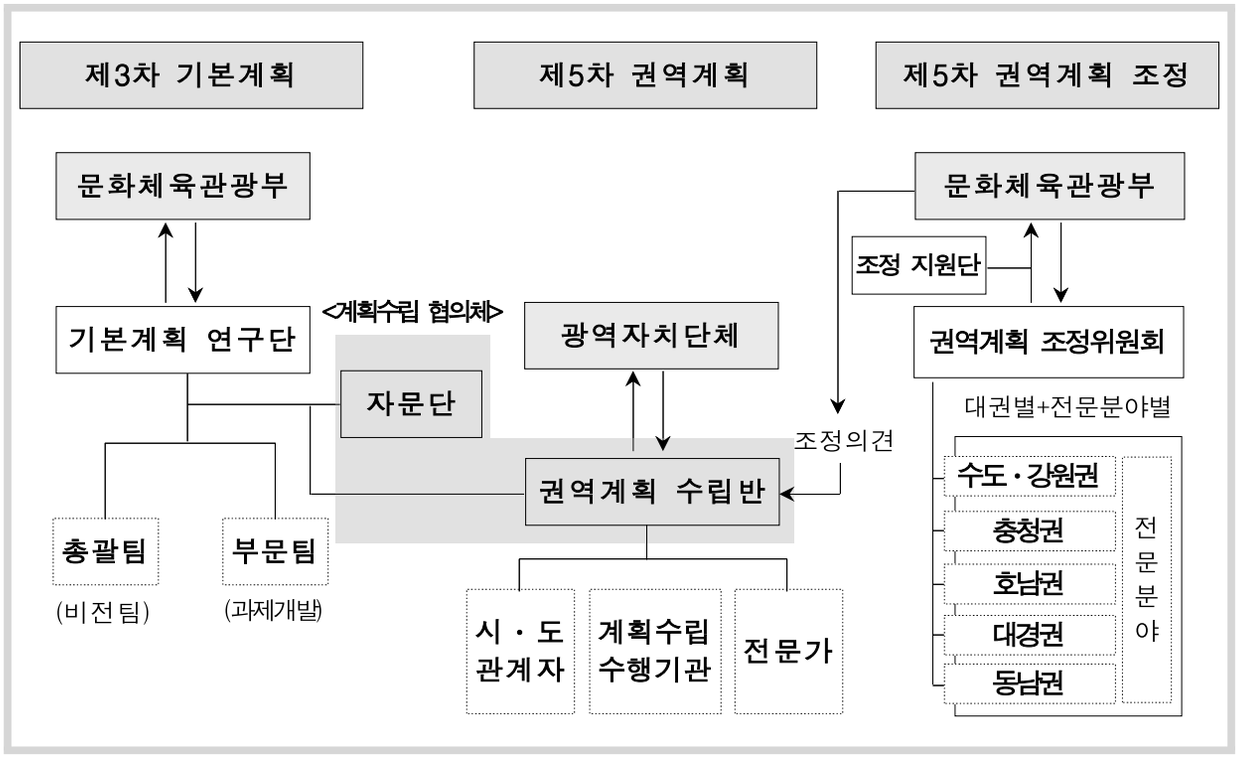

□ 제5차 권역계획 조정 체계

○ 조정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권역계획을 직접 검토 후 조정의견을 제시하는데는 현실적인 제약요인들이 있으므로, 조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권역계획 평가기구(권역계획 조정위원회)'를 운영함

○ '권역계획 평가기구(권역계획 조정위원회)'는 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광역경제권을 근간으로 5대 권역계획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되, 분석평가, 개발구상, 전략사업, 투자유치 등 전문 분야별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함

- 권역계획 조정위원회는 '권역계획 수립반'에 의한 계획수립 기간 및 계획시안 완료후 조정을 위해 운영함

○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적으로 '권역계획 조정위원회'를 지원·운영하기 보다는 별도의 '권역계획 조정지원단'을 선정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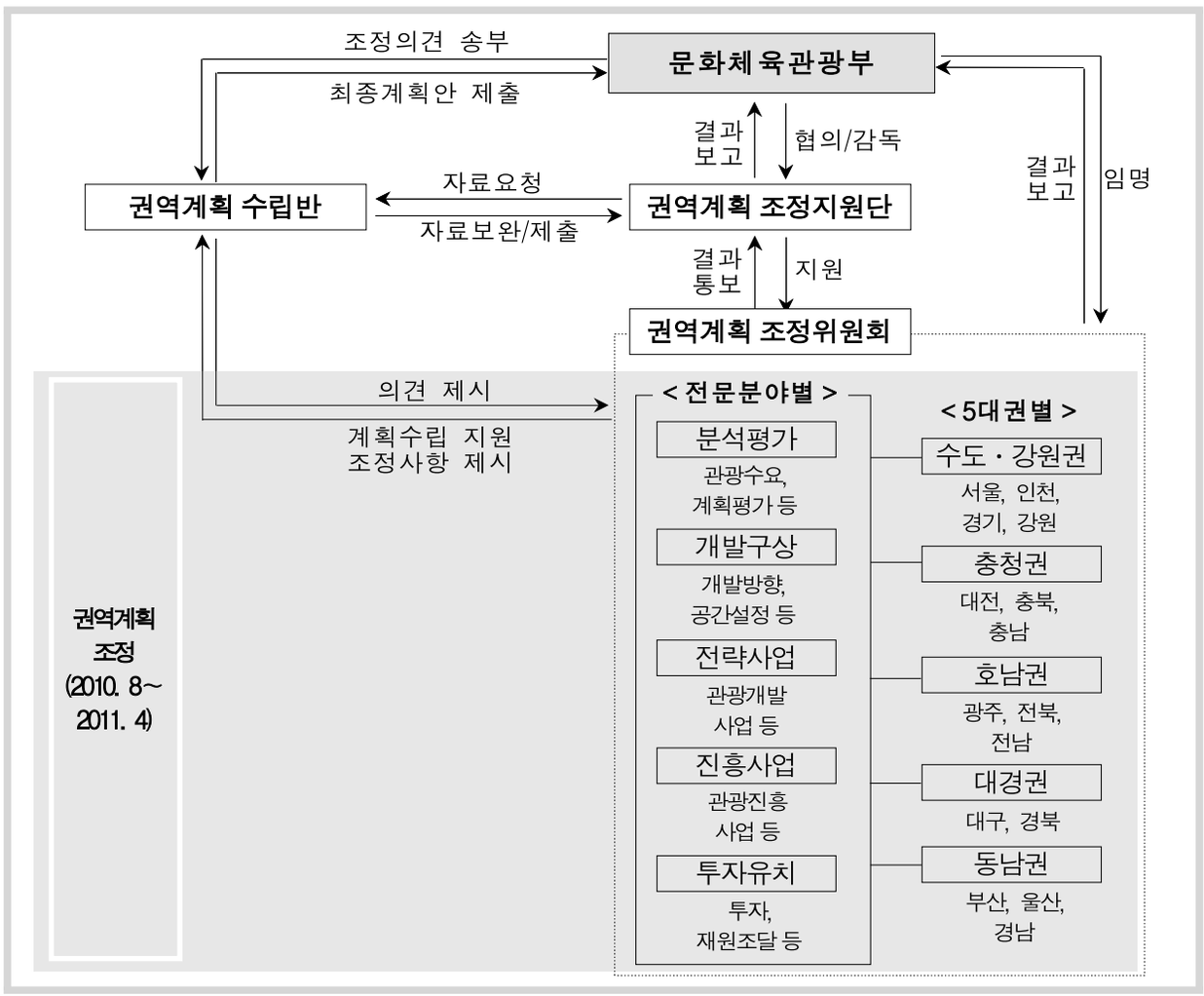

□ 주체별 역할 분담

○ 제5차 권역계획 조정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정지원단 선정 및 조정의 객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며 조정위원회의 조정의견을 각 시·도에 송부함

○ 조정지원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정위원회, 권역계획 수립반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제5차 권역계획 시안 정리, 자료 확보, 조정 일정 등 조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함

○ 권역조정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조정위원회는 서면검토, 현장실사를 담당하며,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개발 및 진흥사업 등을 평가하여 각 권역계획별 차별성·특화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평가함

○ 권역계획 수립반은 계획수립 주체를 중심으로 계획수립 수행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권역계획 수립반은 조정단계인 권역계획 연구협의회에 참여하여 각 시·도의 의견 제시 및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한 권역계획 최종(안)을 수립함

구 분	주 요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 조정지원단 선정 후 감독 및 조정 결과 협의 - 권역계획 조정위원회 임명 - 조정의견 각 시·도 송부
조정지원단	- 조정위원회 의견 취합 후 문화체육관광부 결과 보고 - 권역계획 조정위원회 지원 - 조정에 관한 자료 확보
조정위원회	- 서면검토, 현장실사 실시 - 평가 실시 후 조정회의 개최 - 조정지원단을 통한 조정 결과 통보 - 권역계획 수립반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조정사항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 조정의견 결과 보고
권역계획 수립반	- 권역계획 최종계획안 제출 - 각 시·도의 계획 수립 의견 제시 - 조정지원단의 자료요청시 자료보완 및 자료 제출

2) 권역계획 조정위원회 구성

○ 권역계획 조정위원회는 5대권별(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구분하며, 각 대권별로는 권역계획 내용과 관련된 단계별 조정이 가능하도록, 분석평가, 개발구상, 전략사업, 진흥사업, 투자유치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함

○ 대권별 조정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21명을 조정위원으로 임명하여 구성함

- 대권별로는 수도·강원권 5인,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각각 4인, 대경권 3인을 임명하고, 각 권역계획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장 1명을 선출함
- 각 전문분야별 조정위원은 당해 전문분야에 대한 조정을 중심으로 하되, 전반적인 계획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권역별 조정위원장과 함께 수행함
- 조정위원은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계획수립에 대한 지원을 하며, 계획수립이후에 대한 총괄조정까지 업무를 수행함
- 종합조정회의는 총괄 조정위원장과 대권별 조정위원장이 15개 시·도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시안에 대해 조정을 수행함
- 대권별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되, 권역에 대한 총괄 조정의 업무를 병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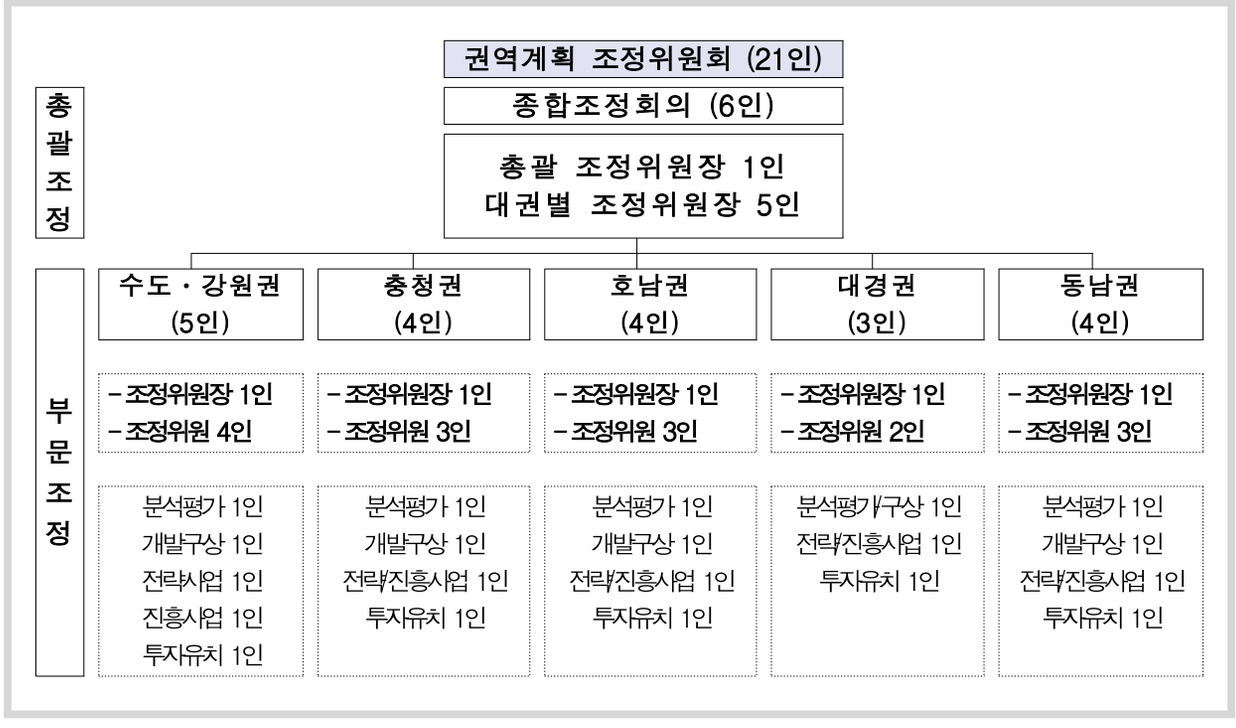

3) 조정 운영

○ 권역계획 조정위원회는 5대권별 조정위원장이 각종 계획내용의 조정 및 회의 등을 주도하면서, 조정위원과 함께 계획수립기간중 단계별로 서면검토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조정의견을 도출함

- 5대권별 조정위원장 및 조정위원은 해당 권역의 권역계획의 추진 단계 및 계획내용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조정내용을 검토하고 조정 의견서를 제출함
- 권역계획 조정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는 조정위원별로 조정 의견서를 작성하고, 대권별 조정회의를 거쳐 대권별 조정 의견서를 작성한 후 종합조정회의에서 종합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권역계획시안에 반영토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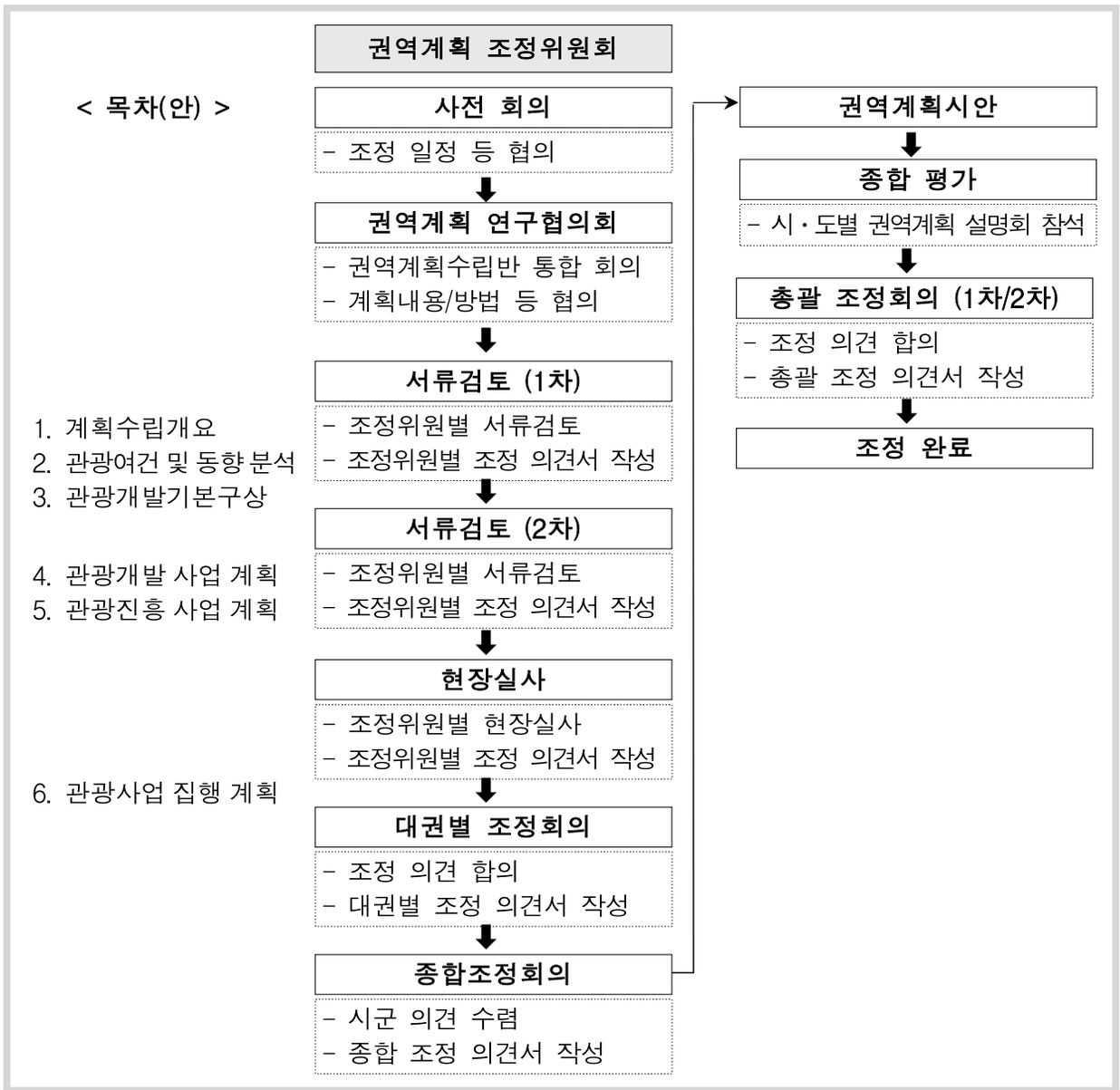

4. 조정 방법 및 기준

1) 조정 방법

○ 제5차 권역계획 수립기간중 조정을 위해 권역별 '권역계획수립반'과 협의하여, 계획내용 수립 지원 및 조정 의견을 제시함

○ 권역계획 수립 절차와 일정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계획수립 내용을 대상으로 서면검토와 현장실사로 구분하여 부분조정을 실시함

- 서면검토는 단계별 계획내용에 대한 2차에 걸친 부문조정으로 이루어지며 조정위원별로 계획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의견서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작성함
- 현장실사는 제5차 권역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계획, 관광진흥 사업계획 등 기타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함
- 총괄조정은 각 시·도의 권역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 검토로 수립과정부터 계획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 검토 등 종합적인 조정을 통하여 타 권역계획과의 적절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계획내용을 비교 검토함

구 분		세부 방법
부문조정	서면검토	**- 단계별(1차/2차) 계획 내용에 대한 전반적 적정성을 조정** · 1차 검토는 상위계획 연속성, 수급분석 적정성 등을 주로 조정 · 2차 검토는 사업계획 내용 적정성, 현실성 등을 주로 조정 **- 서면검토후 조정 의견서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 조정**
	현장실사	**- 서면검토후 계획 내용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조정** **- 현장실사대상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개발 입지가 있는 경우 조정** ·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 현장실사후 조정 의견서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 조정** · 조정위원 평균 점수 70점 이상 원안 추진, 60~70점 미만 경우 계획 보완, 60점 미만은 추진 취소로 조정
총괄조정	총괄검토	**- 권역계획시안에 대한 전반적 적정성 조정** · 수립과정부터 계획내용 등 종합적 조정 **- 타 권역계획과의 비교 검토** · 계획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 검토

2) 조정 기준

□ 기본방향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달한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지침'을 근거로 권역계획 수립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도출함

○ 권역계획 조정위원회, 각 시·도 권역계획 수립반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조정 기준을 확정함

○ 조정 기준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서면검토와 현장실사 등 성격 및 방법 등에 적합하도록 제시함

□ 조정 기준

(1) 서면검토

○ 제5차 권역계획의 서면 검토는 계획수립과정, 계획분석·평가, 기본구상, 사업계획, 집행계획 등 총 5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조정 지표의 내용에 따라 검토하여 전반적인 계획내용의 적정성을 조정함

○ 총2회에 걸친 서면검토의 결과는 조정 지표에 따라 조정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견을 반영함

항목	조정 지표
계획수립과정	- 수립과정상의 충실성 - 계획수립 방향의 적절성 등
계획분석·평가	- 여건분석의 타당성 - 수급분석의 적정성 (수요예측 모형 및 과정 등) - 계획평가 환류계획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
기본구상	- 비전, 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성 - 공간구상의 적절성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등
사업계획	- 기존사업 평가결과의 환류 적정성 및 효과성 - 관광개발사업의 특화성 및 차별성 - 관광지(자원)간 연계성, 상호보완성, 통합성 - 권역간,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적정성 - 개발사업과 진흥사업의 적정성 등
집행계획	- 전략적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 민자유치 계획의 현실성 등

(2) 현장실사

○ 현장실사는 기존사업의 사업추진 효율성, 신규사업의 사업추진 적합성, 사업내용 타당성, 사업추진 효과성, 사업추진 실현성 등 총5개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함

○ 현장실사는 서류검토 후 구체적인 개발 입지가 있는 경우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경우에 계획내용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평가를 실시함

○ 현장실사의 5개 항목을 조정 지표에 따라 실시하여 각 부분별 점수를 합산후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계획을 추진, 60~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 내용을 보완, 60점 미만인 경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취소함

- 기존 사업은 관광특구, 관광(단)지등을 포함하며 평가 기간내 권역관광개발방향과의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유용성, 추진실적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 신규 사업은 관광수요, 예측결과, 관광자원의 특성 및 권역계획의 관광개발방향 등을 고려하여 5년 동안 권역계획에서 추진되어야 할 관광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별하여 평가함

항목		조정 지표	배점
기존 사업	사업추진 효율성	- 목표 달성 실적 - 예산대비 집행실적 - 개발 추진율 등	25
신규 사업	사업추진 적합성	- 입지 타당성(개발사업) / 시장 경쟁성(진흥사업) - 지역(권역) 특성과의 부합성 - 사업 방향의 합리성 -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중복성 등	
사업내용 타당성		- 목표와의 부합성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등) - 사업기간 및 주체 등의 적절성 - 시설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구체성 - 인접 자원과의 연계방안 등의 현실성 - 투자대비 효과성 및 효율성 등	35
사업추진 효과성		- 관광객 유치효과 - 지역사회 파급효과 정도 - 환경적 영향 정도	15
사업추진 실현성		- 개발가용지 확보 용이성 - 사업추진의지 -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 사업추진의 현실성	25

3) 조정시 주요 고려사항

□ **권역계획 수립 지침에 적정한 계획 수립 검토 조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달한 수립 지침(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상위계획과의 방향성 및 목표 등 일관성을 유지하며 세부계획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정함

□ **정부정책 및 미래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계획 조정**

○ 관광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방향을 정부정책 및 환경에 적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녹색성장, 기후변화, 환경지향적 계획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조정함

□ **정확한 수급분석 자료 제시 검토 조정**

○ 지역별 관광수요는 단순한 수치 기록보다는 권역의 시·군별, 내국인과 외국인, 숙박 등 미래 관광수요와 관광공급을 파악하기 위함이므로 지역별로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연차별로 정확한 자료를 제시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조정함

□ **권역간 사업 연계성을 고려한 계획 조정**

○ 권역내 또는 인접 권역간 연계의 필요성이 높은 관광개발 대상지 및 경관·환경 등 권역간의 특색을 가진 관광자원에 대한 연계 또는 협력 사업을 평가하여 유사특성사업의 중복 추진 방지 등을 조정함

□ **권역의 중·장기적 개발방향을 고려한 계획 조정**

○ 제5차 권역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과 동시에 수립되는 되므로 5년단위의 중기적 개발계획보다는 향후 10년의 중·장기적인 권역별 관광개발방향을 고려한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조정함

□ **국토공간구조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평가 조정**

○ 수도권 지역에 개발사업이 집중될 경우 국가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별로 서로 다른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조정함

5. 조정 절차 및 일정

1) 조정 절차

○ 조정은 계획수립 과정에 적합한 단계별 조정을 통해 최종계획시안에 대한 조정 및 수정 사항 등을 최소화함

○ 기존 권역계획 수립 주체(시·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하고,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계획 조정 완료시까지의 합리적 조정 절차를 확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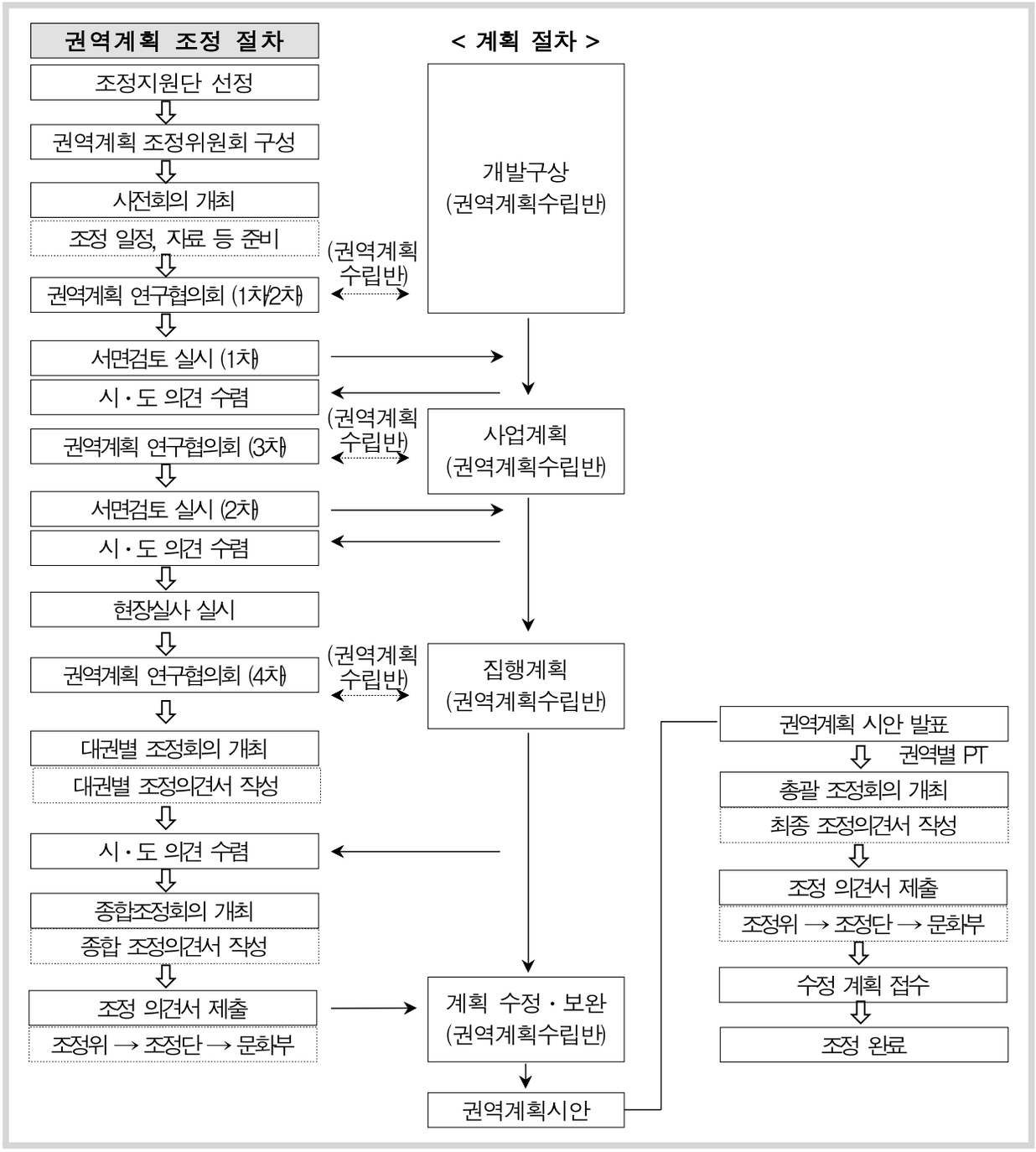

2) 조정 일정

○ 권역계획 수립기간중 부문 조정을 위해 '10.09(서면검토 1차) 과 '10.11(서면검토 2차)에 각각 계획내용을 제출하고, 총괄 조정을 위해 계획시안은 '11.02내에 완료함

구 분		2010년										2011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권역계획(안) 수립 (11~12개월)		■	■	■	■	■	■	■	■	■	■	■	■								
권역계획 조정 (9개월)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3개월)																■	■	■			
최종안 확정 (3개월)																			■	■	■
권역계획 공고 (2개월)																					
부문조정	조정지원단 선정						■														
	조정준비자료 작성						■	■													
	조정위원회 구성						■														
	권역계획 연구협의회(1차)*						◆														
	사전회의 개최						■														
	권역계획 연구협의회(2차)*							◆													
	서면검토서 제출(1차)*							■													
	서류검토 실시(1차)							■	■												
	시·도 의견수렴*								■												
	권역계획 연구협의회(3차)*								◆												
	서면검토서 제출 (2차)*									■											
	서류검토 실시 (2차)									■	■										
	시·도 의견수렴*										■										
	현장실사 실시										■	■									
	대권별 조정회의 개최											■									
	권역계획 연구협의회(4차)*											◆									
	시·도 의견수렴*											■									
	종합조정회의 개최												■								
	대권별 조정의견서 제출												■	■							
	권역계획시안 작성/제출*													■							
총괄조정	권역계획시안 발표*													■	■						
	총괄 조정회의 (1차)													■							
	최종 조정의견서 제출													■	■						
	계획수정·보완*														■	■					
	수정계획 제출/접수															■					
	총괄 조정회의 (2차)															■					
	조정 완료															■					

※ 조정일정은 권역별로 서류검토, 현장실사 등의 진행과정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는 시·도 또는 권역계획수립반에서 해당되는 사항임

○ 권역계획 수립기간중 2차에 걸친 부문 조정을 통해 계획내용에 대한 조정을 완료하고, 15개 시도의 권역계획시안 작성 및 제출 이후 총괄 조정을 통해 조정을 완료함

○ 1차 서면검토('10.09)에서의 주요 제출내용은 계획의 개요, 관광여건 및 동향 분석, 관광수급 분석, 관광개발기본 구상 부문임

- 1차 서면검토 방법은 상위계획과의 연속성, 수급분석의 적정성, 여건 및 동향 분석의 적시성 등을 평가함
- 특히, 수급분석중 권역 관광수요예측은 과대예측으로 인한 관광개발의 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며, 공급분석의 경우 권역내 기존 관광개발사업의 누락으로 인한 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함

○ 2차 조정('10.11)에서의 주요 제출내용은 관광개발 사업 계획, 관광진흥사업 계획, 투자 및 재원조달방안임

- 2차 서면검토 방법은 사업계획 내용의 적정성, 현실성 등을 주로 조정하며, 조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현장실사가 필요한 사업 등을 선정함
- 특히, 관광개발 및 진흥사업의 경우 계속사업 이외에 신규 사업중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권역의 개발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권역계획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함

○ 1차 조정('10.9)과 2차 조정('10.11)의 계획내용을 권역계획수립반에서는 반드시 피드백하여 반영하도록 하며, 입지가 있는 사업의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에 대한 조정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4차에 걸친 권역계획 연구협의회는 대권별 조정위원과 권역계획 수립반 등이 계획수립 과정의 단계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 특히, 대권별 조정위원은 권역계획수립반에서 수립한 권역계획내용에 대한 조정뿐 아니라, 권역계획 내용 수립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정과 지원이 상호이루어지도록 함
- 계획 내용 결과에 대한 조정보다는 계획 수립과정상의 조정을 통해 전반적인 권역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별 첨] 제3차 기본계획, 제5차 권역계획 및 권역계획 조정 추진 과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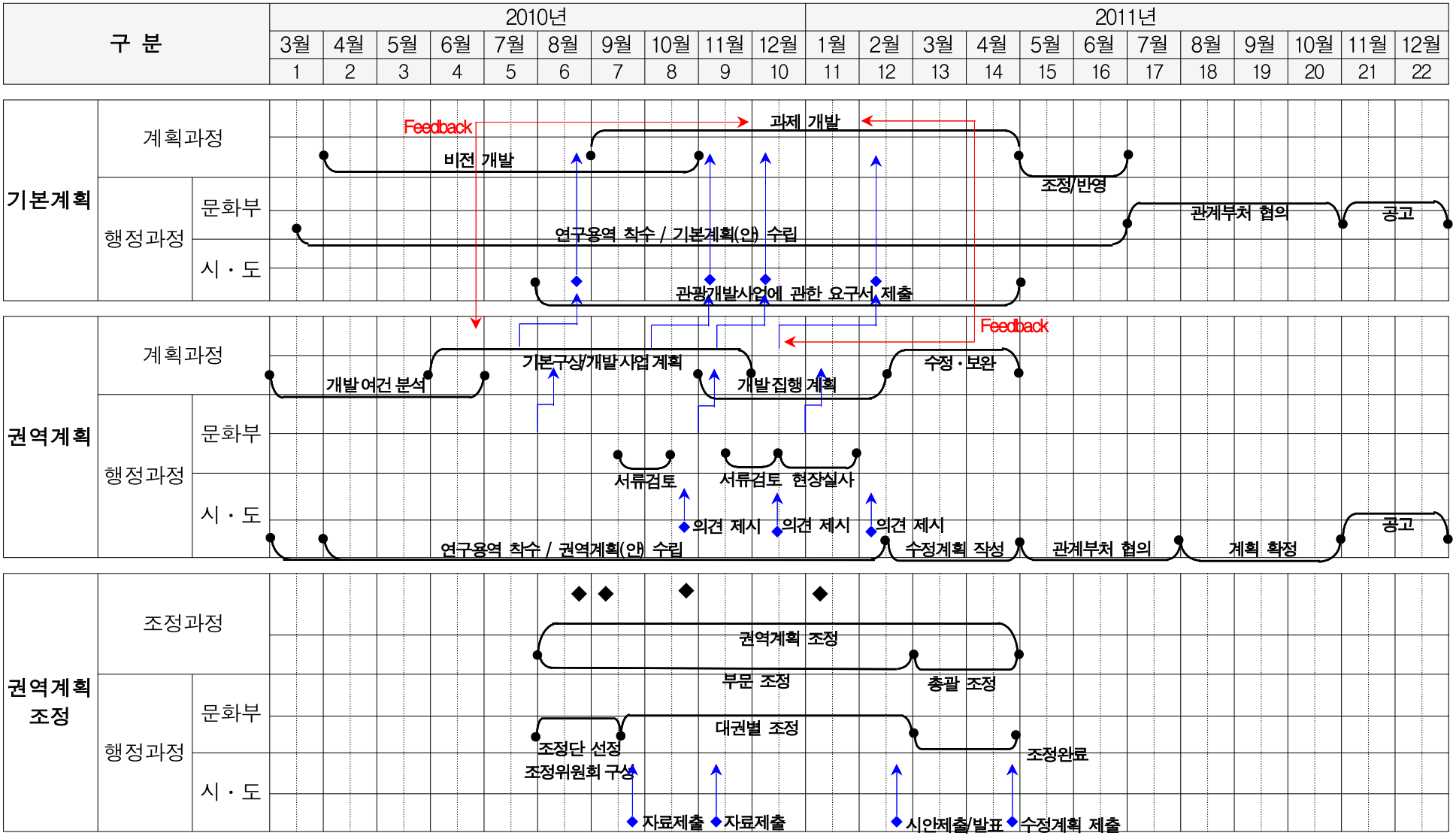

※ 기본계획, 권역계획 등 수립 일정 등이 변경시 계획 조정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연 구 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	박경열	연구기획조정실 통계정보센터 연구원
연구진	신진옥	위촉연구원
	이현주	위촉연구원
	하동원	위촉연구원

자문위원

최승담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김남조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고동완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이석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이원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오은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지침 및 조정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